

최종보고서

# 한·중 FTA 관련 수산부문의 국내보완 대책 추진방향 연구

2012. 11.

연구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 제 출 문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한·중 FTA 관련 수산부문의 국내보완 대책 추진방향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연구책임자 : 정 명 생

연 구 진 : 임 경 희

김 봉 태

정 명 화

이 상 건

기 해 경

이 승 진

연구감리 : 신 영 태

---

---

# ■ ■ ■ 목 차 ■ ■ ■

요 약	ix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7
제2장 중국의 수산업 현황	9
제1절 어업구조	11
1. 어업종사자	11
2. 어선세력	13
3. 양식규모	14
4. 수산물 가공	15
제2절 수산물 생산	18
1. 지역별 생산	19
2. 어종별 생산	23
제3절 수산물 교역	34
1. 대세계 수산물 교역	34
2. 대한민국 수산물 교역	36
제4절 수산물 소비	39
1. 총 공급량	39
2. 1인당 공급량	40
제5절 수산정책	42
1.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	42
2. 주요 부문별 정책 동향	43
3. 12·5계획	47

제6절 중국 수산업의 특징	50
1. 수산물 생산강국	50
2. 수산물 가공업의 선진성	52
3. 수산물 소비 확대 및 다양화	55
4. 기타	56
<b>제3장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한·중 FTA 관련 기존 연구 분석</b>	<b>57</b>
제1절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59
1. 중국의 FTA 체결 전략 및 동향	59
2.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63
제2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전망	78
1. 수협 수산경제연구원(2008)	78
2. 한·중 FTA 수산부문 피해 전망	79
<b>제4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b>	<b>81</b>
제1절 FTA 체결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검토·평가	83
1. 수산부문의 기존 FTA 체결 내용	83
2. 기체결 FTA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분석	89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FTA 대응 지원사례	97
1. 개요	97
2. 미국	98
3. EU	107
4. 호주	115
5. 시사점	120
<b>제5장 FTA 체결에 따른 타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b>	<b>123</b>
제1절 FTA 국내지원 대책 개요	125
1. FTA 국내지원 대책 현황	125
2. FTA 국내보완대책 기본 구조	126
제2절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127
1. 농업부문 지원대책 개요	127

2. 농업부문 지원 대책 .....	129
3. 2012년 농업부문 대책 사업 .....	134
제3절 여타 산업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	135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	135
2. 제약업 .....	137
제4절 시사점 .....	141
<b>제6장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b> .....	<b>143</b>
제1절 수산정책 현황 .....	145
1.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	145
2.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	151
제2절 FTA 관련 수산업 종사자 의견 조사 .....	155
1. 업종별 의견 .....	155
2. 품목별 의견 .....	156
3. 기타 .....	158
4. 소결 .....	159
제3절 한·중 FTA 대비 수산분야 정책대응 기본 방향 .....	160
1. 한·중 FTA와 수산업 .....	160
2.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국내대책 추진방향 .....	162
제4절 한·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	165
1. 중국 수산업의 심층 조사·분석 .....	165
2. 국내 수산부문의 실태 조사 및 사전 영향 평가 .....	166
3. 한·중 FTA 대응, 주요 업종별/품종별 대책 수립 .....	167
4.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 .....	168
<b>참고문헌</b> .....	<b>171</b>

## 표 목 차

[표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4
[표 2-1]	중국의 어업종사자수 추이	11
[표 2-2]	중국의 해면어업 종사자수 추이	12
[표 2-3]	중국의 어선세력 추이	13
[표 2-4]	중국의 양식어장 면적 및 생산성 추이	14
[표 2-5]	중국의 수산물 가공업체수 및 가공능력 추이	16
[표 2-6]	중국의 수산물 생산 추이	19
[표 2-7]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20
[표 2-8]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21
[표 2-9]	중국 해면양식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22
[표 2-10]	중국 내수면양식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22
[표 2-11]	중국 류별 생산 추이	23
[표 2-12]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	24
[표 2-13]	중국 해면양식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	25
[표 2-14]	중국 내수면양식어업 주요 생산 어종	27
[표 2-15]	전세계 갈치 생산 추이	28
[표 2-16]	전세계 고등어 생산 추이	30
[표 2-17]	전세계 조기·민어 생산 추이	31
[표 2-18]	전세계 오징어 생산 추이	32
[표 2-19]	중국의 수산물 교역 추이	34
[표 2-20]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	35
[표 2-21]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36
[표 2-22]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 동향	37
[표 2-23]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38
[표 2-24]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38
[표 2-25]	중국의 류별 수산물 소비량	40
[표 2-26]	중국의 1인 1년당 류별 소비량	41
[표 2-27]	중국 수산정책 동향	42
[표 3-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61
[표 3-2]	중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63

[표 3-3]	중국-아세안 FTA 추진 현황(I)	64
[표 3-4]	중국-아세안 FTA 추진 현황(II)	65
[표 3-5]	중국-아세안 FTA 조기관세자유화 일정	65
[표 3-6]	중국-칠레 FTA 추진 현황(I)	66
[표 3-7]	중국-칠레 FTA 추진 현황(II)	67
[표 3-8]	중국-칠레 FTA에서 중국의 수산물 관세 양허	68
[표 3-9]	중국-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69
[표 3-10]	뉴질랜드-중국 FTA 관세 스케줄	70
[표 3-11]	중국-뉴질랜드 FTA 수산부문 관세 양허안	71
[표 3-12]	중국-페루 FTA 추진 현황	72
[표 3-13]	중국-페루 FTA의 품목별 관세 인하 스케줄	73
[표 3-14]	중·페루 FTA에서 페루의 수산물 관세 양허	74
[표 3-15]	중·페루 FTA에서 중국의 수산물 관세 양허	75
[표 3-16]	중·대만 ECFA 조기자유화 품목	77
[표 3-17]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수산물 관세 삭감 일정	77
[표 3-18]	수협 수산경제연구원(2008)의 영향 분석 결과	79
[표 4-1]	한·칠레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3
[표 4-2]	한·싱가포르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4
[표 4-3]	한·EFTA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4
[표 4-4]	한·ASEAN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5
[표 4-5]	한·인도 CEPA 수산물 양허 내용	86
[표 4-6]	한·EU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6
[표 4-7]	한·페루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7
[표 4-8]	한·미 FTA 수산물 양허 내용	88
[표 4-9]	직접적 피해보전제도 개편 내용	91
[표 4-10]	폐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91
[표 4-11]	2012년 수산부문 FTA 대책 사업	94
[표 4-12]	2012년 수산부문 FTA 대책 중 경쟁력 강화 대책	95
[표 4-13]	미국의 FTA 추진 현황	99
[표 4-14]	미국의 TAA	101
[표 4-15]	TAA 농어업 부문 예산(2009~2011년)	102
[표 4-16]	미국 농수산물 무역조정지원 대상 품목	104
[표 4-17]	미국 양식생산어종(2008)	105
[표 4-18]	TAA 대상 어종 수입추이	105

[표 4-19]	어업인 TAA 집중기술지원 내용	106
[표 4-20]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및 개요	109
[표 4-21]	유럽구조기금 제2차 사업기간 목표지역의 종류	110
[표 4-22]	목표지역에 따른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111
[표 4-23]	유럽수산기금 지원 내용	113
[표 4-24]	유럽수산기금 사업별, 지역별 지원 비율	114
[표 4-25]	SIRP 2004 주요 지원내역	119
[표 5-1]	FTA 국내보완대책 기본 구조	126
[표 5-2]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2007년 대책 기준)	127
[표 5-3]	농업부문 FTA 국내대책보완 내용	128
[표 5-4]	농업부문 피해보전 직불제도	129
[표 5-5]	농업부문 폐업지원제도	130
[표 5-6]	2012년 농업부문 FTA 대책 사업	134
[표 5-7]	무역조정지원제도	135
[표 5-8]	제약산업의 FTA 대응 기본 방향	138
[표 5-9]	2012년 FTA 대책 사업 비교	141
[표 6-1]	업종별 의견수렴 결과	156
[표 6-2]	품목별 의견수렴 결과	157
[표 6-3]	한·중 FTA의 수산부문 국내대책 추진방향	164
[표 6-4]	한·중 FTA의 수산부문 국내대책 중점추진사업(신규사업 중심)	164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7
[그림 2-1]	중국 어선세력 추이	14
[그림 2-2]	중국 해면별 양식어장 생산성 추이	15
[그림 2-3]	중국의 냉동창고 업체수 및 냉장능력 추이	16
[그림 2-4]	중국의 가공수산물 생산 추이	17
[그림 2-5]	가공품 품목별 비중(2011년 기준)	17
[그림 2-6]	전세계 수산물 생산 추이	18
[그림 2-7]	중국의 주요 수산물 생산 지역	20
[그림 2-8]	해면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 비중(2011년 기준)	26
[그림 2-9]	주요 국가별 갈치 생산 비중	29
[그림 2-10]	주요 국가별 고등어 생산 비중	30
[그림 2-11]	주요 국가별 조기·민어 생산 비중	31
[그림 2-12]	주요 국가별 오징어 생산 비중	33
[그림 2-13]	중국의 수산물 교역 추이	34
[그림 2-14]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추이	37
[그림 2-15]	중국의 수산물 공급 추이	39
[그림 2-16]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공급 추이	40
[그림 2-17]	주요 국가의 어패류 1인 1년당 공급량(2009년 기준)	41
[그림 2-18]	5대 산업체계 구축 방향	47
[그림 2-19]	중국의 어항 및 어선(관련 사진)	50
[그림 2-20]	중국의 양식장 및 축양장(관련 사진)	51
[그림 2-21]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관련 사진)	53
[그림 2-22]	중국 수산물 유통/판매 현장(청도시 재래시장)	54
[그림 2-23]	중국 수산물 유통/판매 현장(대형할인점)	55
[그림 4-1]	OECD 주요 국가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정책	98
[그림 4-2]	미국 농어업 TAA의 개요	102
[그림 4-3]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103

[그림 5-1] FTA 국내지원대책 현황 .....	126
[그림 5-2]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2007년 대책 기준) .....	128
[그림 5-3] 제약산업 FTA 대응 단계별 중점 추진전략 .....	138
[그림 6-1] 농산어촌 비전 2020 체계도 .....	146
[그림 6-2]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	151

# 요 약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의 8건의 FTA가 발효되는 등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협상에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5월 2일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음
  - 현재 한·중 FTA는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지난 5월 14일 1차 협상을 시작으로 4차 협상까지 이루어진 상태임
- 한·중 FTA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어떤 FTA보다도 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개방에 대비해 국내 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이 때 피해예상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은 물론, 국내 수산업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수립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한·중 FTA 체결 대비 구체적인 국내대책 수립에 앞서 기 연구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본 연구는 문헌자료 검토, 통계자료 수집·분석, 국내외 사례 분석, 전문가 및 관계자 면담조사, 자문 등의 방법을 통해 수행되었음

## 제2장 중국의 수산업 현황

### 제1절 어업구조

- 중국 어가의 경우 2000년 이후 소폭 증가한 가운데, 어업인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어업종사자의 경우 전업종사자와 임시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음
- 중국은 최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감척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선어업부문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어선감척 정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동력 어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으로 어업자원 고갈의 원인인 동력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무동력 어선의 척수는 2000년 488천 척에서 2011년 373천 척으로 연평균 2.4% 감소한 반면 동력어선의 경우 같은 기간 487천 척에서 696천 척으로 연평균 3.3% 증가함
- 중국의 양식어장 면적은 해면양식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해면양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면양식 면적이 전체 양식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 어장생산성의 경우 해면양식이 내수면 양식에 비해 높지만,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
- 수산물 가공의 경우 최근 중국의 수산가공산업 육성으로 인해 2000년 이후 수산가공업체수와 가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의 수산가공업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기반이 조성되면서 수산물 가공품 생산도 2000년 6,515천 톤에서 2011년 17,828천 톤으로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 제2절 수산물 생산

- 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가로 1990년 이후 꾸준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 수산물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3%에서 2010년 37.7%로 약 23%p 증가함
- 한편 중국 정부가 집계한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2011년에 약 5,603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업별로 보면 양식어업 생산은 2000년 이후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어로어업은 같은 기간 연평균 0.7% 증가에 그침
  - 해면별로 보면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 모두 증가세를 보이지만 특히 내수면어업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산둥성의 수산물 생산량이 814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5%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류별 생산 동향을 보면 품목 대부분의 생산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내수면 어류와 갑각류의 증가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는 대중어종의 경우도 중국의 생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최근 발표된 FA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전세계 갈치의 75%, 고등어의 24%, 조기·민어의 61%, 오징어의 24%를 생산하고 있음(2010년 기준)

## 제3절 수산물 교역

- 전세계 수산물 교역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09년 7.9%로 증가함
- 한편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수출은 4.6억 달러, 수입은 12.5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

중이 각각 20.1%, 29.8%로 나타남

-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은 오징어, 대구, 어란 등으로 2011년 기준 상위 7개 어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3.2%를 차지함
- 한국의 대중국 수입품목은 낙지, 조기, 아귀 등으로 2011년 기준 상위 7개 어종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48.5%를 차지함

#### 제4절 수산물 소비

-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480만 톤에서 2009년 5,319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1.4배 증가함
  - 중국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도 1990년 12.6kg에서 2000년 29.8kg, 2009년 38.9kg으로 2000년대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제5절 수산정책

- 중국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산부문의 정책은 이때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되고 있음
  - 최근에 발표된 12·5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업구조 조정 추진, 건강 수산양식 촉진 및 우량품종 번식 사업,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양어업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 제6절 특징

-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해역에서 동일한 어종을 생산하고 있어 어선어업, 어장을 둘러싼 양국간 경합이 심화되고 있음
  - 더욱이 중국 정부의 해외어장 진출에 대한 지원강화로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경합이 발생함

- 중국은 국내 수산물 시장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기존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국내 소비자들은 비위생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지만, 현재 중국의 중대형 수출 수산물 가공기업의 경우 전통적 업체에서 선진화된 기업까지 다양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의 기술·자금을 통해 설립된 대형기업의 경우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시리즈 등 선진형 위생·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
  -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도 무공해수산물 양식장 등이 확대되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내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로 對 중국 수산물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중국은 수산물 소비 증가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자국 내수를 위한 수산물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고소득층의 경우 자국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고급 수입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경우 통계 등 일반적인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현실진단이 어려운 상태로 한·중 FTA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업종/지역/품목에 대해 현실에 기반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분야별, 지역별 여건과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산분야의 실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통계 등 문헌자료를 통한 분석과 함께 산업 실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복합·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제3장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한·중 FTA 관련 기존 연구 분석

### 제1절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 FTA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 입장으로 변화하여 세계 각 지역들과 FTA 체결을 추진함
  -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 및 FTA 체결을 장려함
  - 비록 중국은 타 국가보다 FTA에 늦게 참여하였지만 FTA에 대한 강한 의지로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진행됨
- FTA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FTA를 통해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시켜 무역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소비자 잉여를 증대를 도모함
  - 세계무역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 추진함
  - 마지막으로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함
- 타 국가에 비해 중국은 FTA에 늦게 참여하였지만 진행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됨
  - 2004년 홍콩, 마카오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 기준 19여개 국가를 포함하는 10건의 FTA 협상을 완료함
  - 또한 FTA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국에 이름
- 초기에는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한 뒤 중남미, 유럽 국가들로 확대함
  - 초기에는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선택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FTA 협상 경험을 축적함
  - 이후는 중남미, 유럽 국가들로 지역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국



가를 선택하여 FTA를 추진함

- 협상 국가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산물 관세 양허를 설정함
  - FTA 협상 대상국 중 뉴질랜드, 페루, 칠레와 같은 수산선진국의 경우 보수적 양허전략을 마련함
  - 반면 아세안 국가에서는 수산물을 조기관세자유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유예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함

## 제2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전망

- 수협 수산경제연구원(2008)은 수산 부문의 전체 피해액으로 7,532억~1조 1,379억 원으로 추정함
  -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액 : 2,943~4,432억 원
  - 생산 감소액 : 3,005~5,363억 원
  - 수산물간 대체에 따른 피해액 : 1,584억 원
- 한·중 FTA의 수산부문 피해를 추정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연구기관, 시점,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통적인 것은 기 체결된 다른 FTA에 비해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임
-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한 대응은 다른 FTA에 비해 더욱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협상 대응 및 국내 대책 수립을 위한 영향 평가도 더욱 엄밀한 방법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음

##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

### 제1절 FTA 체결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검토·평가

-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FTA 국내보완대책’이 수립되었고 2011년 2월 한·미 FTA 추가 협상 및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따라 기존 대책을 보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거쳐 2011년 10월

- 31일 국회 합의사항에 따라 2012년 1월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함
- 2012년도 수산부문 FTA 대책사업 예산은 1,2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직접 피해보전 대책이 8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1,156억 원임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이 83%, 핵심인프라 구축이 11%로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대책은 비용보조 성격이 강하여 경영체 체질을 강화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한·중 FTA의 경우 기 체결 FTA보다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FT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보다는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비용보조 대책보다는 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관리회사, 거점유통단지 등 어업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대책 등임
  - FTA와 국내 대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전 영향 평가를 더욱 엄밀하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대책과 국내 대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영향 평가에 기초하여 민감품목의 관세 양허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도록 노력하고 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 대책을 마련함

##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FTA 대응 지원사례

### 1. 미국

- 미국은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를 마련하여 무역 자유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원함
  - TAA는 지원 대상을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세 개의 TAA로 각각 운영
- 농어민 TAA는 2002년 무역법(Trade Act)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09년 미국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과 옴니버스 무역법(Omnibus Trade Act of 2010)에 의해 연장됨

- 2004~2006년 농어업분야 TAA 시행 초기에 지원된 품목은 9개 품목으로 아보카도르, 리치(lychees), 메기, 콘코드 포도, 신선 감자, 올리브, 연어, 새우, 블루베리<sup>1)</sup> 였으나, 현재는(2010~2013) 메기, 새우, 바닷가재, 아스파라가스, 블루베리 등 5개 품목임

## 2. EU

-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국·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을 창설함
  - 유럽구조기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지원제도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간 경제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무역자유화 피해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유럽구조기금은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 ESF),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 EAGF),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ERDF),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 FIFG) 으로 구성됨
- EU는 지역정책에 있어 발전이 뒤쳐진 지역과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함
  - 2000~2006년 제2차 사업기간 EU는 3개의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구조기금을 분배함
- 유럽수산기금은 어획노력 조정, 어선 현대화, 소규모 영세어업 지원 분야 등 총 12개 분야를 지원함
  - 유럽수산기금은 사업별, 해당 목표 지역별로 차등 지원함
  -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기금이 지원, 나머지 비용은 개별 회원국과 민간이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임
  - 1인당 GNP가 유럽공동체 전체 평균 1인당 GNP의 75% 미만인 제1목표 지역의 경우 소규모 어업지원사업분야에 대해서는 EC에서 50~70% 비

1)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rengthen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January, 2008.

용 부담,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EC 15%, 회원국 5%, 그리고 민간이 60%를 부담함

-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회적 조치 사업의 경우에도 제1목표 지역의 경우 EC에서 50~75%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국이 나머지 25%를 부담함

### 3. 시사점

- 미국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국내 지지기반 확보, 이익집단간의 갈등 완화, 피해당사자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고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 수행함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임
  - TAA는 피해품목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별 격차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EU의 구조기금은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함
  - 유럽구조기금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해당 지역 경제주체가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투입,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축소됨
  - 그러나 근로자나 기업에 대해 발생하는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어 있음

## 제5장 FTA 체결에 따른 타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

### 제1절 FTA 국내지원 대책 개요

- FTA에 대한 국내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2007년에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이라 할 수 있음

-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1.1조 원임
- 2010년에는 한·EU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 산업에 총 2조 1,700억 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함
- 2011년에는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07년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또한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함
-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 구조는 크게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제2절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 농업부문의 경우 한·칠레 FTA 때부터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
  - 농업부문의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장치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 농업부문의 지원대책은 크게 직접적 피해보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4가지로 구성됨
  - 직접적 피해보전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마련함
  - 산업 경쟁력 강화의 경우 핵심 인프라 구축, 농림기술개발 지원 등이 이루어짐
  -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짐
  - 마지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및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제3절 여타 산업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전을 위하여 무역

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제약업의 경우 별도의 피해보전 제도가 없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함
- 사업전환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함
-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의 경우 제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기술개발 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서비스업의 경우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서비스 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서비스 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한편 제약업의 경우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FTA 체결 후 10년간 제도선진화와 연구개발지원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함
  - 1단계에서는 국내제도 선진화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유연한 구조조정을 지원함
  - 2단계에서는 단기목표인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을 지원함
  - 3단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신약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제4절 시사점

- FTA 국내 보완대책은 크게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으로 이루어짐
- 국내 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농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도 지원이 이루어짐
  - 농수산업의 경우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등 3가지 측면에서 지원됨

-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2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음
- 그러나 FTA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에 비해 수산부분의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2008년~2017년 간 총 24.1조 원이 지원되는데, 농업부문이 22.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산부문은 0.7조 원에 불과함

## 제6장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

### 제1절 수산정책 현황

-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 설정에 앞서 정책방향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정책을 검토함
  - 기존에 발표된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농산어촌 비전 2020’과 수산부분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비전 2020은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함
  - 미션으로는 新성장 녹색 ‘생명’산업,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을거리, ‘패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을 제시함
  - 비전과 정책미션 달성을 위해 농어업의 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의 5대 전략과 추진 과제를 도출함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비전으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의 목표를 설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 제2절 FTA 관련 수산업 종사자 의견 조사

- FTA 정책 수립에 있어 FTA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이 중요함
- 한·중 FTA와 관련하여 최근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주요 회의 결과를 참고할 때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일반적 의견과 국내대책으로 구분하여 종합해 볼 수 있음
-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우선 충분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폐업 보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중 FTA 체결 대비,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운영자금 등 보조금 및 자금의 지원 확대와 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시설 현대화, 기술 개발, 수산업 생산기반의 지속성 유지, 원산지, 위생검역제도 등의 기반 정비, 대중국 수출기반의 제도적 정비 등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제3절 한·중 FTA 대비 수산분야 정책대응 기본 방향

-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부문의 영향은 크게 ‘위기’와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위기요인으로는 ①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②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업경영체의 수익 감소와 어가 및 어업경영체 안정성 저하로 인한 어촌지역사회 공동화 ③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공급체계의 안정성 저하 ④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획물 선점 경쟁의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수산물 수요 확대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가능성 확대를 들 수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한·중 FTA 국내대책은 포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한·중 FTA 수산부문 국내대책은 첫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유지, 둘



째, 어업경영체의 건전성 강화와 어촌사회의 활력 유지, 셋째, 수산물의 수급 안정화, 넷째, 대중국 수산물 수출 증대 목표 하에 도입·추진될 필요가 있음

- 주요 추진방향은 첫째, 직접적 피해보전 체제를 강화하고, 둘째,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현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첫째, 한·중 FTA에 따른 영향 업종·어종·경영체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대책의 수립, 개별 경영체의 체질 강화 대책 도입, 추진 효과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사업의 도입·운영, 넷째, 유형별 맞춤형 대책 도입을 제시함

## 제4절 한·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 중국 수산업의 심층 조사·분석

- 중국은 광대한 면적과 EEZ를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수산물 생산하고 있으며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와 전망이 이루어져야 향후 한·중 FTA 체결 이후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중국의 수산업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별·업종별·품종별로 다양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데, 최근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중국 수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산업의 효율적 파악을 위해서는 중국 수산현장에 대한 조사의 지속적 수행이 필요함
  - 통계 등 문헌자료 중심의 검토는 지역별 혹은 성별 특성이나 계획의 실질적 파악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중국의 주요 지역·업종·품종에 대한 세부 실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국 수산업의 생산, 경영실태, 가격구조, 경쟁력 비교 등 심층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수산부문의 실태 조사 및 사전 영향 평가

- 주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전의 FTA와는 달리 한·중 FTA 체결은 수산부문에 있어 특정 품목이나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런데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국내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수산부문에 대한 통계도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집계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기존의 통계자료만으로는 일부 업종이나 어종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더 나아가 이들 업종이나 어종을 중심으로 중국 및 세계 수산물과의 비교우위 평가, 경쟁력 분석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내 수산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 FTA 대비 경쟁력의 비교우위(또는 열위) 업종·어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수산분야 구조조정(개선)의 적정 수준 설정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은 물론,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제안한 전문경영체 도입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 한·중 FTA 대응, 주요 업종별/품종별 대책 수립

-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부문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가공 및 유통 등 각 부분에서 발생할 피해의 정도나 각 부분에서 느끼는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어업별 품목별 피해 대책을 포함,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업종별·품목별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개선 대책과 비교우

위를 고려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동시에 한·중 FTA에 대한 수산부문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수산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실태 조사 및 지역별·업종별·품종별 공청회 등을 통해 생산현장의 의견과 수요 파악과 함께 수산분야의 공감대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

-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소득 증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급수산물,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일본, EU 등 주요 수산 선진국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이익 균형의 실현과 시장 접근성 개선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에 더해 고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고급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 확대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국내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가 더해지면서 향후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수산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교우위 품목 선정, 구체적인 품목별·지역별 수출전략 및 현지 소비 확대 전략 등 한·중 FTA를 통한 수출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Chapter

1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은 183건으로 전체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주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세계의 RTA는 WTO가 출범한 이후 보다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여 현재 314건<sup>2)</sup>이 발효되어 있는데, 전체 RTA의 약 86%가 1995년 이후 체결되었으며,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 싱가포르, EFTA(4개국), ASEAN(10개국), 인도, EU, 페루, 미국의 8건의 FTA가 발효되는 등 주요 통상정책으로서 FTA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2011년 발효된 FTA는 한·EU FTA(2011. 7. 1), 한·페루 FTA(2011. 8. 1)이고, 한·미 FTA도 2011년 말(2011. 11. 22) 국회 비준을 거쳐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어 현재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음
  - 2012년에는 터키, 콜롬비아와의 협정이 각각 타결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2012년 1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FTA 협상에 필요한 국내 사전절차를 시작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후 5월 2일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음
  - 현재 한·중 FTA는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5월 14일 1차 협상이 시작되었음

2) WTO의 List of all RTAs 바탕(2011년 말 기준)

[표 1-1]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국 가
발 효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상품),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15)
서명/협상타결	터키('12.8), 콜롬비아('12.8)
협상 중	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중국·일본, RCEP
공동연구/여건 조성 중	일본, 멕시코, GCC, 호주, 뉴질랜드, MERCOSUR, 이스라엘, 중미, 말레이시아

주 :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동남아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3) GCC(걸프협력이사회)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4) MERCOSUR(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5)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6)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

- 국내 수산물 시장에 있어 중국산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그 간 추진되었던 한·중 FTA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수산부문에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참고로 수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KMI, 2012 수산전망대회)에서 국내 수산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중국과의 FTA로, 이에 대비해 업종별 국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음<sup>3)</sup>
  - 중국은 자국의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양국간 FTA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중국의 양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도 있으나, 중국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생산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도 저렴한 노동력 및 투입재 등을 바탕으로 우리 수산업에 비해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중국은 세계의 식량창고로 불리며 세계 식량 수급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국가로서, 수산부문의 경우 어장이 인접해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산물 수급과 유사한 상품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3) KMI, 2012 수산전망대회 결과보고, 2012.2.

- 중국의 수산물 생산규모는 약 6,350만 톤(2010년 기준, FAO)으로 세계 최대의 수산물 생산국인데, 양식수산물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또한 세계 최대 수준의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대한 수산물 교역도 활발한데,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는 2011년 현재 약 17억 달러에 이르며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적자(2011년 기준 7억 8천 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 국내의 다양한 정책(관세, 안전성 규제 등) 하에서도 일찍이 중국은 국내 수산물수입의 약 30% 이상을 차지(2011년 기준)하는 수산물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의 수입시장점유율(Market Comparative Advantage, MCA)<sup>4)</sup> 분석에서도 한국산 수산물은 활·신선·냉동·가공 등 모든 품목에서 중국에 비해 절대 열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실정므로, 향후 양국간에 FTA가 진행될 경우 국내 수산분야에 있어 막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중국에서 수입되는 상위 30개 주요 품목의 경우 중국산의 수입점유율이 73%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품목의 경우 독점하고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지리적 인접성, 식문화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유사성이 높은 수산물 생산, 소비 구조를 보유한 만큼 양국간의 FTA는 시장 개방에 따른 효과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양국간의 FTA 협상 타결에 앞서 선제적으로 우리나라 수산분야의 사전적이며 체계적 전략 마련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이를 국내 수산업 발전의 전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중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개방에 대비해 국내 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요구됨
- 이 때 피해예상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의 선제적 수립은 물론, 국내 수산업이 당면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국내 수산업의 경쟁

4) MCA : 실질적인 경쟁척도이면서 자국내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판단 가능한 지수

- 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 수립에 대한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한·중 FTA 체결 대비 구체적인 국내대책 수립에 앞서 기 연구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해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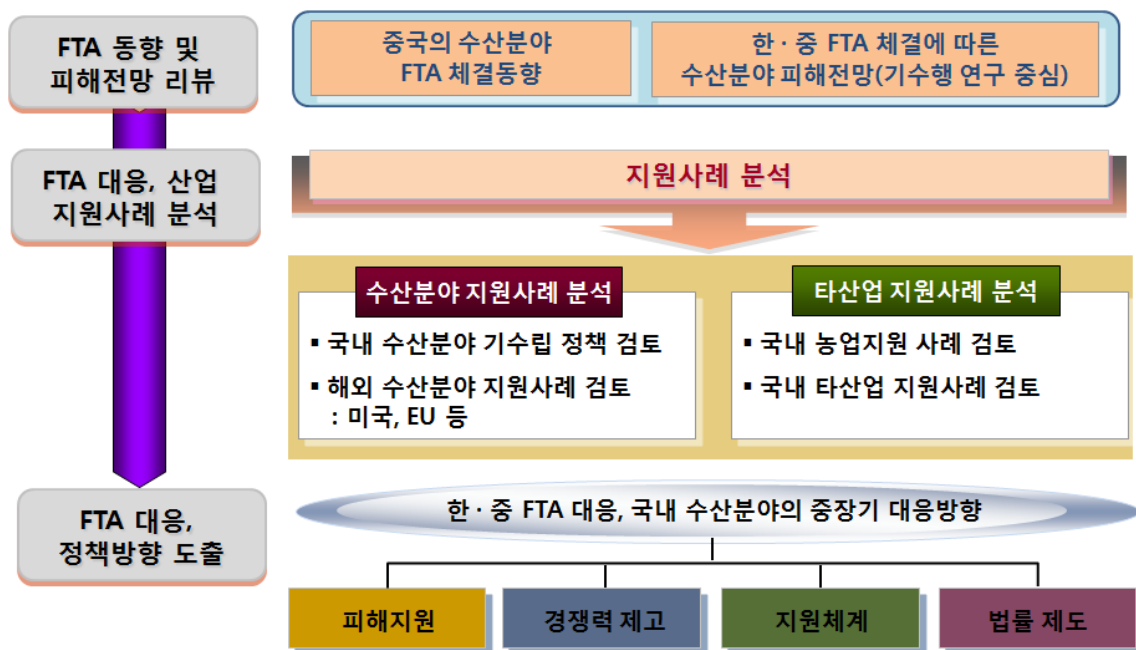
## 2.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 체결에 대비하여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정책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세부 연구과제 도출에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정책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해 기존 한·중 FTA의 영향을 검토하고 기존의 정책 지원제도와 피해지원사례 등을 분석함
  - 이를 바탕으로 한·중 FTA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방향과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제2절 연구 방법 및 추진체계

- 본 연구는 문헌자료 검토, 통계자료 수집·분석, 사례 분석을 위한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면담 결과의 활용 및 전문가 자문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
  -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은 기존의 한·중 FTA 연구 결과와 중국 및 주요 국가의 FTA 체결 관련 통계 등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하였음
- 향후 국내 대책 방향설정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분석을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FTA 체결 대응, 국내 지원대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음
  - 수산분야 FTA 체결과 관련 해외 국가의 대응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및 정책 등을 수집·분석하였음



[그림 1-1] 연구 추진 체계도

- 동시에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내 관계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자문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농업 등 타분야의 전문가 및 기관, 국내 수산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현지 출장조사)를 실시하였음
- 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 등 각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Chapter

2

# 중국의 수산업 현황

제1절 어업구조

제2절 수산물 생산

제3절 수산물 교역

제4절 수산물 소비

제5절 수산정책

제6절 중국 수산업의 특징

## 제2장 중국의 수산업 현황

### 제1절 어업구조

#### 1. 어업종사자

- 중국 어가수는 2000년 이후 소폭 늘어난 가운데, 어업인구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어가의 경우 2000년 455만 호에서 2011년 523만 호로 연평균 1.3% 증가한 반면, 어업인구의 경우 같은 기간 1,940만 명에서 2,061만 명으로 연평균 0.6%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가 증가세보다 낮았음
- 어업종사자의 경우 전업종사자와 임시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소폭 증가하였음
  - 전업 종사자의 경우 2000년 629만 명에서 2011년 798만 명으로 연평균 2.2% 증가한 반면, 겸업종사자는 같은 기간 665만 명에서 511만 명으로 연평균 2.4% 감소함
  - 한편 임시종사자의 경우 2008년부터 통계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2-1] 중국의 어업종사자수 추이

단위 : 만 호, 만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어가	455	498	520	524	523	1.3
어업인구	1,940	2,068	2,085	2,081	2,061	0.6
어업종사자	1,294	1,290	1,385	1,399	1,459	1.1
- 전업종사자	629	710	758	764	798	2.2
- 겸업종사자	665	580	497	494	511	△2.4
- 임시종사자	-	-	130	141	150	-

주 : 1) 어업인구는 어업생산 및 관련활동에 의지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인구를 말하며, 실제어업 생산 및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와 그 부양가족도 포함함  
 2) 전업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자  
 3) 겸업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3~6개월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20~50%인 자  
 4) 임시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20% 이하인 자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한편 해면어업의 경우 어가, 어업인구 모두 200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어가의 경우 2000년 144만 호에서 2011년 157만 호로 연평균 0.8% 증가하였으며, 어업인구도 같은 기간 555만 명에서 588만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함
- 어업종사자의 경우 겸업종사자와 임시종사자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함
  - 전업 종사자의 경우 2000년 207만 명에서 232만 명으로 연평균 1.0% 증가하였으며, 겸업종사자도 같은 기간 74만 명에서 86만 명으로 연평균 1.4% 증가함
  - 한편 임시종사자의 경우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함

[표 2-2] 중국의 해면어업 종사자수 추이

단위 : 만 호, 만 명,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어가	144	139	148	155	157	0.8
어업인구	555	536	576	578	588	0.5
어업종사자	280	309	339	345	369	2.5
- 전업종사자	207	222	223	228	232	1.0
- 겸업종사자	74	87	81	77	86	1.4
- 임시종사자	-	-	35	40	51	-

주 : 1) 어업인구는 어업생산 및 관련활동에 의지해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인구를 말하며, 실제어업 생산 및 관련활동에 종사하는 인구와 그 부양가족도 포함.  
 2) 전업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자.  
 3) 겸업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3~6개월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20~50%인 자.  
 4) 임시종사자는 연간 어업종사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전체 수입 중 어업수입 비중이 20% 이하인 자.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2. 어선세력

- 중국은 최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선감척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어선어업부문에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의 어선세력은 2000년 이후 정체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국 전체 어선수는 2000년 975천 척에서 2011년 1,070천 척으로 연평균 0.8% 증가에 그침
- 그러나 중국의 어선감척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동력 어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어업자원 고갈의 원인인 동력어선에 대해서는 감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즉, 무동력 어선의 척수는 2000년 488천 척에서 2011년 373천 척으로 연평균 2.4% 감소하였으나, 동력어선의 경우 같은 기간 487천 척에서 696천 척으로 연평균 3.3%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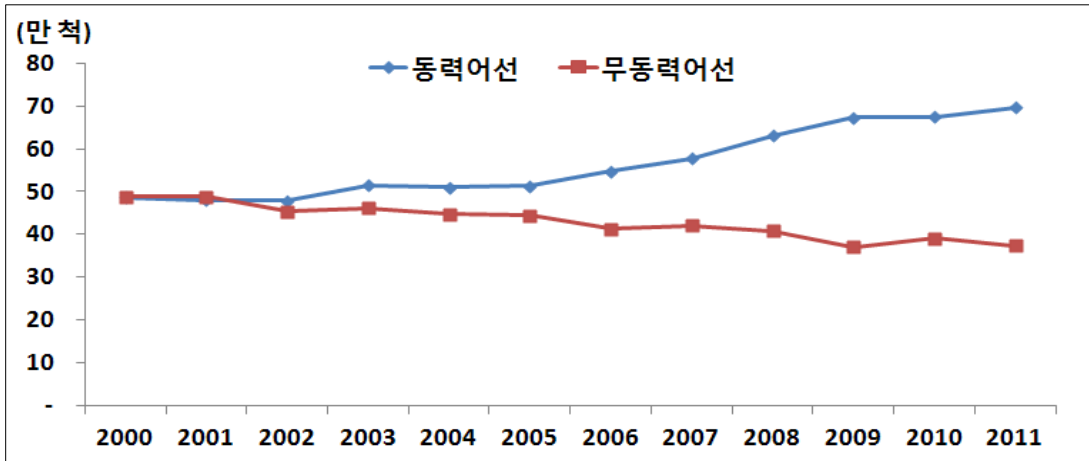
[표 2-3] 중국의 어선세력 추이

단위 : 천 척,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전체	척수	975	958	1,042	1,066	1,070	0.8
	톤수	7,610	7,875	9,181	9,408	9,571	2.1
동력 어선	척수	487	514	673	675	696	3.3
	톤수	6,849	7,140	8,595	8,802	9,022	2.5
	척당톤수	14.1	13.9	12.8	13.0	13.0	△0.7
무동력 어선	척수	488	444	370	390	373	△2.4
	톤수	761	735	-	606	549	△2.9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다음 그림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동력어선의 경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무동력 어선은 2000년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1] 중국 어선세력 추이

### 3. 양식규모

- 중국의 양식어장 면적은 해면양식의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해면양식면적의 경우 2000년 1,244천 ha에서 2011년 2,106천 ha로 연평균 4.9%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내수면 양식면적도 같은 기간 5,278천 ha에서 5,729천 ha로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해면양식면적의 증가세보다는 낮음
  - 2000년 이후 해면양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수면양식면적이 전체 양식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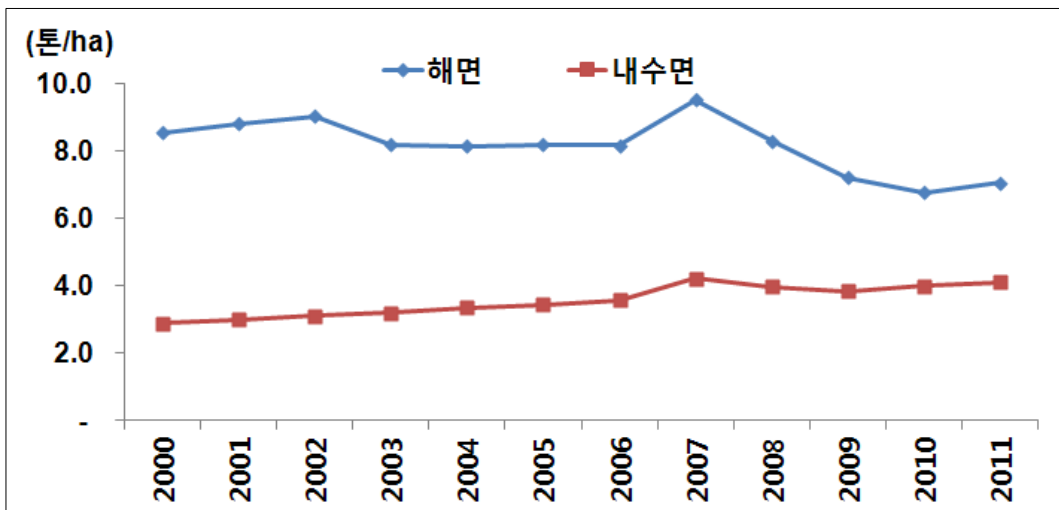
[표 2-4] 중국의 양식어장 면적 및 생산성 추이

단위 : 천 ha, 톤/ha,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면적	전체	6,521	7,545	7,283	7,645	7,835	1.7
	해면양식	1,244	1,695	1,859	2,081	2,106	4.9
	내수면양식	5,278	5,850	5,424	5,564	5,729	0.7
생산성	전체	4.0	4.5	4.7	4.7	4.9	1.9
	해면양식	8.5	8.2	7.2	6.8	7.0	△1.7
	내수면양식	2.9	3.4	3.8	4.0	4.1	3.3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어장생산성(톤/ha)을 살펴보면 해면양식이 내수면 양식에 비해 높지만,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
  - 즉, 해면양식의 경우 해상이라는 공간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내수면양식에 비해 생산성이 높지만, 2000년 이후 어장생산성이 감소하고 있음
  - 반면 내수면 양식의 경우 2000년 이후 매년 어장생산성이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2] 중국 해면별 양식어장 생산성 추이

#### 4. 수산물 가공

- 중국내 수산가공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2000년 이후 수산가공업체수와 가공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가공기업수는 2000년 6,922개소에서 2011년 9,611개소로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며, 가공능력도 같은 기간 연평균 9.1% 증가하였음
  - 업체당 가공능력도 2000년 1,349톤에서 2011년 2,528톤으로 연평균 5.9% 증가하였음
  - 기업수 증가율에 비해 가공능력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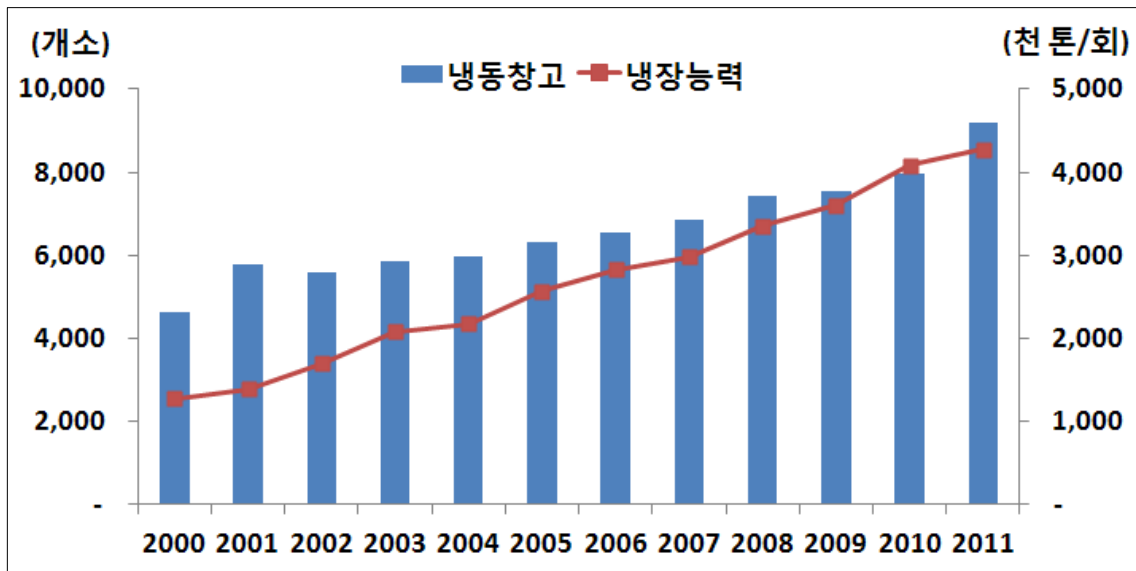
수산물 가공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5] 중국의 수산물 가공업체수 및 가공능력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기업체수(개소)	6,922	9,128	9,635	9,762	9,611	3.0%
가공능력(천톤)	9,339	16,962	22,092	23,885	24,294	9.1%
업체당 가공능력(톤)	1,349	1,858	2,293	2,447	2,528	5.9%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수산물 가공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냉동냉장업의 동향을 보면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2011년도 냉동창고수와 냉장능력은 각각 9,173개, 1회 당 428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각각 6.4%, 11.6% 증가함
  - 냉동창고에 비해 냉장능력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냉동창고의 대형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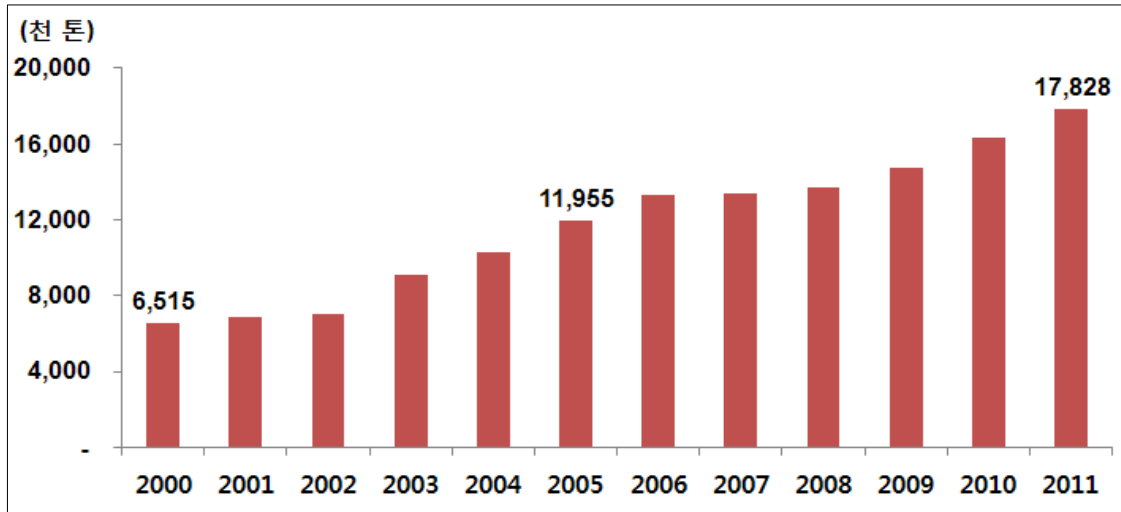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3] 중국의 냉동창고 업체수 및 냉장능력 추이

- 중국 정부의 수산가공업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기반이 조성되면서 수산물 가공품 생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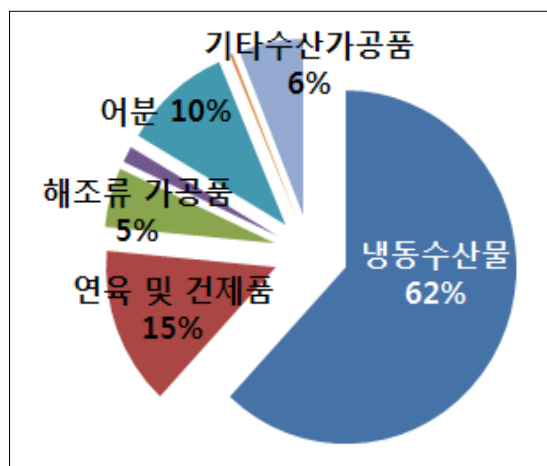
- 수산물 가공품 생산은 2000년 6,515천 톤에서 2011년 17,828천 톤으로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함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4] 중국의 가공수산물 생산 추이

- 수산물가공품의 품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냉동수산물이 6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2011년 기준)
  - 다음으로 연육 및 건제품, 어분, 해조류 가공품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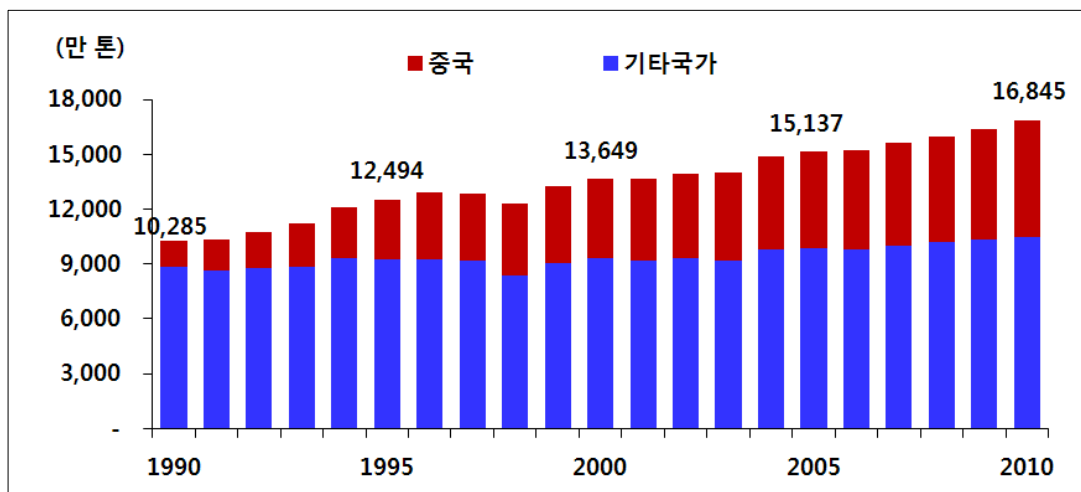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5] 가공품 품목별 비중(2011년 기준)

## 제2절 수산물 생산

- 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가로 1990년 이후 꾸준히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 10,285만 톤에서 2010년 16,845만 톤으로 연평균 2.5% 증가함
  - 이 중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1990년 1,467만 톤에서 2010년 6,350만 톤으로 연평균 7.6%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기타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8,818만 톤에서 10,495만 톤으로 연평균 0.9% 증가해 중국의 증가세보다는 낮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전세계 수산물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4.3%에서 2010년 37.7%로 약 23%p 증가함



자료 : FAO, Fishstat Plus.

[그림 2-6] 전세계 수산물 생산 추이

- 한편 중국 정부가 집계한 중국의 수산물 생산은 2011년에 약 5,603만 톤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어업별로 보면 양식어업 생산은 2000년 2,237만 톤에서 4,023만 톤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반면, 어로어업은 같은 기간 1,469만 톤에서 1,580만 톤으로 연평균 0.7% 증가에 그침
  - 이에 따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양식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0.4%에서 2011년 71.8%로 약 10%p 증가함

- 해면별로 보면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 모두 증가세를 보이지만 특히 내수면어업의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면어업의 경우 어로어업의 생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식어업과 원양어업에서의 생산증가로 2000년 2,204만 톤에서 2011년 2,908만 톤으로 연평균 2.6% 증가함
  - 내수면 어업의 경우 내수면 양식어업의 생산증가에 기인하여 2000년 1,502만 톤에서 2011년 2,695만 톤으로 연평균 5.5% 증가함

[표 2-6] 중국의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만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11)
총생산량	합계	3,706	4,420	5,116	5,373	5,603	3.8
	양식	2,237	2,944	3,622	3,829	4,023	5.5
	어로	1,469	1,476	1,495	1,544	1,580	0.7
해면	합계	2,204	2,466	2,682	2,798	2,908	2.6
	어로	1,276	1,255	1,179	1,204	1,242	△0.2
	양식	928	1,211	1,405	1,482	1,551	4.8
	원양	-	-	98	112	115	-
내수면	합계	1,502	1,954	2,435	2,575	2,695	5.5
	어로	193	221	218	229	223	1.3
	양식	1,309	1,733	2,216	2,347	2,472	6.0

주 : 2008년 이후 해면수산물 생산에서 원양어업이 분리됨.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1. 지역별 생산

### 가. 전체

- 중국의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산둥성의 수산물 생산량이 814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광둥성 763만 톤(13.6%), 복건성 604만 톤(10.8%), 절강성 516만 톤(9.2%), 강소성 476만 톤(8.5%) 등의 순임
  - 이들 상위 5개 지역의 수산물 생산량은 3,172만 톤으로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약 57%를 차지함

- 2007년 이후 지역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5개 지역의 수산물 생산 증가세보다, 기타 지역에서의 수산물 생산 증가세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상위 5개 지역의 수산물 생산도 2000년 이후 연평균 3.0% 증가 하였으나, 기타 지역의 수산물 생산은 연평균 3.8% 증가함

[표 2-7] 중국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만 톤,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률 ('07~'11)
합 계	4,748	4,896	5,116	5,373	5,603	3.4
산 동	713	730	754	784	814	2.7
광 동	664	680	703	729	763	2.8
북 건	532	542	568	587	604	2.6
절 강	415	419	440	478	516	4.4
강 소	409	425	443	460	476	3.1
기 타	2,014	2,099	2,209	2,335	2,431	3.8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그림 2-7] 중국의 주요 수산물 생산 지역

## 나. 해면어업

- 해면어로 어업의 경우 주로 절강성, 산둥성, 복건성 등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함
  - 2011년 기준으로 절강성의 생산량이 303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산둥성, 복건성, 광둥성, 요녕성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79.3%를 차지함
  - 한편 2007년 이후 지역별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절강성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이 정체되어 있음

[표 2-8]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단위 : 만 톤, %
						연평균 증감율 ('07~'11)
합 계	1,136	1,150	1,179	1,204	1,242	1.8
절 강	233	234	267	282	303	5.4
산 동	236	238	237	235	238	0.2
복 건	184	183	186	191	192	0.8
광 동	140	145	142	143	145	0.7
요 녕	102	103	100	101	106	0.7
기 타	241	245	248	252	257	1.3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반면 해면양식어업의 경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인해 2007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음
  - 2011년 기준 산둥성의 생산량이 413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6.7%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복건성, 광둥성, 요녕성, 광서성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5.8%를 차지함
  - 한편 2007년 이후 지역별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 하였으며, 특히 요녕성과 광서성의 경우 연평균 약 4% 이상 증가하고 있음

[표 2-9] 중국 해면양식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만 톤,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합 계	1,307	1,340	1,405	1,482	1,551	3.5
산 동	354	361	381	396	413	3.2
북 건	274	278	293	304	316	2.9
광 동	223	223	235	249	266	3.6
요 녕	186	202	214	231	244	5.6
광 서	76	78	82	88	92	3.9
기 타	195	199	200	214	220	2.5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다. 내수면어업

- 내수면 양식어업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호북성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으로 호북성의 생산량이 336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3.6%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둥성, 강소성, 강서성, 호남성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4.6%를 차지함
  - 한편 2000년 이후 지역별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호북성의 경우 연평균 약 5% 이상 증가함

[표 2-10] 중국 내수면양식어업의 지역별 수산물 생산 추이

단위 : 만 톤,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합 계	1,971	2,072	2,216	2,347	2,472	4.6
호 북	262	283	308	327	336	5.1
광 동	279	291	303	315	331	3.5
강 소	257	268	281	291	301	3.2
강 서	158	166	178	186	193	4.0
호 남	155	163	177	188	190	4.2
기 타	860	902	970	1,040	1,121	5.4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2. 어종별 생산

### 가. 류별 생산 동향

- 류별 생산 동향을 보면 품목 대부분의 생산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내수면 어류와 갑각류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해면어업의 경우 2007년 이후 모든 품목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조류와 연체류의 경우 연평균 3%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 내수면어업의 경우도 2007년 이후 조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어류와 갑각류의 경우 연평균 4%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2-11] 중국 류별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연평균 증감율 ('07~'11)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합계	46,487	48,613	51,006	52,614	54,884	3.4	
해면	소계	27,402	28,628	29,907	26,859	27,933	0.4
	어류	8,317	8,643	8,808	9,063	9,604	2.9
	갑각류	2,977	2,888	3,036	3,104	3,218	1.6
	패류	10,680	10,725	11,200	11,704	12,128	2.6
	조류	1,388	1,423	1,484	1,566	1,629	3.2
	연체류	589	638	643	658	695	3.4
	기타류	482	583	667	763	658	6.4
내수면	소계	19,085	19,985	21,099	25,755	26,952	7.1
	어류	19,085	19,985	21,099	22,256	23,437	4.2
	갑각류	2,021	2,101	2,288	2,481	2,488	4.3
	패류	505	501	520	538	539	1.3
	조류	7	6	7	10	7	△0.4
	기타류	348	381	434	469	481	6.7

주 : 1) 조류는 건제품 중량이며, 그 외는 원중량임  
 2) 해면생산량에는 원양어업 생산량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해면어로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을 살펴보면 갈치, 멸치, 고등어, 가라지, 삼치 등이 주로 생산됨
  - 2007년 이후 해면어로어업의 생산이 보합세를 보이는 가운데 멸치, 정



- 어리, 까나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 생산이 증가세를 보임
- 특히 고등어의 경우 2007년 344천 톤에서 2011년 563천 톤으로 연평균 10.4% 증가하였으며, 실꼬리돔과 송어의 경우도 같은 기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반면 정어리의 경우 2007년 169천 톤에서 2011년 140천 톤으로 연평균 3.7% 감소하였으며, 멸치도 같은 기간 연평균 1% 감소함

[표 2-12] 중국 해면어로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

단위 : 천 톤,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갈치	1,071	1,193	1,172	1,187	1,118	0.9
멸치	806	659	522	598	767	△1.0
고등어	344	593	397	492	563	10.4
가라지	571	595	540	563	562	△0.3
삼치	452	434	429	476	468	0.7
참조기	339	355	373	407	399	3.4
바다장어	297	321	341	340	359	3.9
병어	322	372	373	365	358	2.2
실꼬리돔	144	312	306	315	323	17.5
강달어	212	221	220	235	283	6.0
말쥐치	176	184	210	205	202	2.8
돔	126	131	153	165	168	5.8
가송어	125	127	127	157	151	3.7
정어리	169	157	134	135	140	△3.7
까나리	140	129	147	154	135	△0.7
보구치(백조기)	107	126	126	131	125	3.1
송어	60	75	90	91	117	14.1
우럭바리	81	80	86	94	95	3.3
수조기	68	81	94	85	85	4.4
준치	87	94	99	87	85	△0.6

주 : 해면생산량에는 원양어업 생산량이 포함되지 않음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2011년 기준 해면양식어업의 류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패류가 11,544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류, 갑각류, 어류 등의 순임
- 한편 2007년 이후 류별 생산 동향을 살펴보면 모든 류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류의 생산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어류의 경우 2007년 이후 연평균 7.0% 증가하였으며, 특히 넙치, 가자미

등의 경우 연평균 약 10%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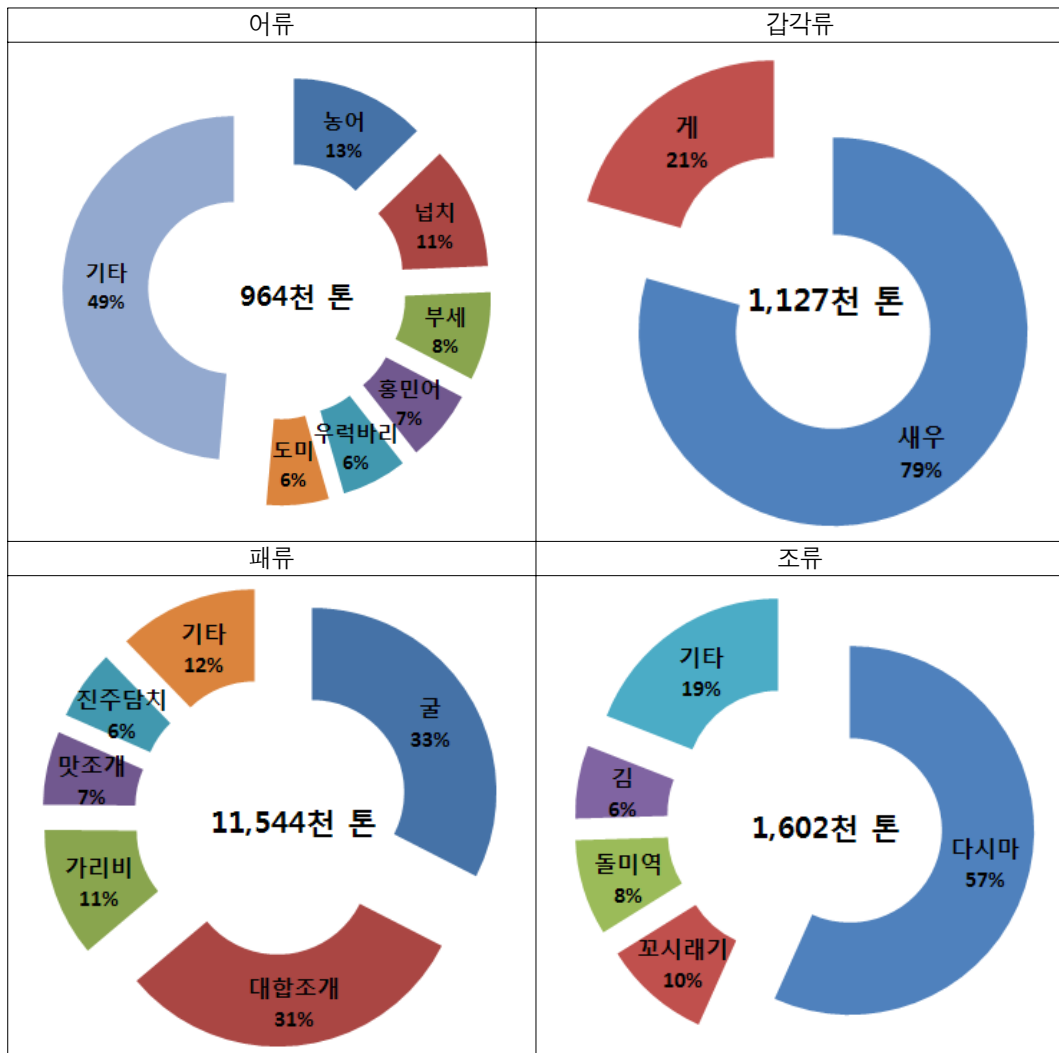
[표 2-13] 중국 해면양식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

단위 : 천 톤, %  
연평균 증감율 ('07~'11)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합 계	13,073	13,403	14,052	14,823	15,513	3.5	
어류	소계	689	748	768	808	964	7.0
	농어	101	96	102	106	123	4.1
	넙치	67	78	87	85	112	10.9
	부세	62	66	66	86	80	5.3
	홍민어(접성어)	49	51	49	52	65	5.6
	우럭바리	43	45	44	49	60	6.8
	도미	55	36	40	45	56	0.5
	날쌔기	26	23	29	36	37	7.6
	방어	12	20	19	17	13	2.9
	복어	15	16	19	17	12	△5.0
	가자미	5	8	12	5	8	9.5
갑각류	소계	919	942	1,017	1,061	1,127	4.2
	새우	710	725	796	833	895	4.8
	게	209	216	220	228	232	2.1
패류	소계	9,938	10,081	10,530	11,082	11,544	3.0
	굴	3,509	3,354	3,504	3,643	3,756	1.4
	대합조개	2,957	3,058	3,192	3,539	3,613	4.1
	가리비	1,165	1,137	1,277	1,407	1,306	2.3
	맛조개	667	742	684	714	745	2.2
	진주담치	449	480	637	702	707	9.5
	새꼬막	280	290	277	310	293	1.0
	고동	259	225	204	208	203	△4.7
	전복	25	33	42	57	77	24.8
	키조개	12	11	15	31	30	20.0
조류	소계	1,356	1,386	1,456	1,541	1,602	3.4
	다시마	775	798	828	884	908	3.2
	꼬시래기	99	114	125	115	151	8.8
	돌미역	140	132	132	109	134	△0.9
	김	90	81	107	107	103	2.6
	툇	14	9	8	8	11	△4.0
	녹각채(청각)	9	7	7	6	6	△6.6
	파래	1	1	1	1	1	△2.9
	우뭇가사리	0	0	0	0	-	-
기타류	소계	172	247	280	330	277	10.0
	해삼	78	93	102	130	138	12.2
	성게(톤)	7,428	3,023	6,086	6,169	6,756	△1.9
	해수진주(톤)	31	15	23	16	10	△20.2
	해파리	42	47	63	60	70	10.6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갑각류의 경우 2007년 이후 연평균 4.2% 증가함
- 패류의 경우 2007년 이후 연평균 3.0%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복과 키조개의 경우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 조류의 경우 2007년 이후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며, 특히 꼬시래기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해면양식어업의 류별 어종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어류의 경우 농어, 넙치, 갑각류의 경우 새우, 패류의 경우 굴과 대합조개, 조류의 경우 다시마의 비중이 높음



[그림 2-8] 해면양식어업 주요 어종별 생산 비중(2011년 기준)

- 내수면양식어업의 주요 생산 어종을 살펴보면 초어, 백련어, 잉어 등이 주로 생산됨
  - 2007년 이후 내수면양식어업의 생산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어과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 생산이 증가세를 보임
  - 특히 미꾸라지, 동자개, 철갑상어, 복어 등의 경우 2007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표 2-14] 중국 내수면양식어업 주요 생산 어종

단위 : 천 톤,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7~'11)
초어	3,556	3,707	4,082	4,222	4,442	4.6
백련어	3,076	3,193	3,484	3,608	3,714	3.8
잉어	2,229	2,351	2,462	2,538	2,718	4.1
대두어	2,135	2,290	2,435	2,551	2,668	4.6
붕어	1,937	1,956	2,055	2,216	2,297	3.5
틸라피아	1,134	1,110	1,258	1,332	1,441	4.9
무창어	576	600	626	652	678	3.3
흑잉어	331	360	388	424	468	7.1
가물치	309	324	359	377	446	7.6
메기	315	316	325	374	392	4.5
드렁허리	196	212	237	273	292	8.3
쏘가리	212	229	236	253	275	5.3
미꾸라지	131	153	176	205	232	12.1
동자개	114	134	164	184	217	13.8
농어	157	167	174	186	208	5.8
뱀장어	207	205	215	214	208	0.1
찬넬메기	205	224	223	217	205	0.0
콜로소마	82	77	86	85	95	3.1
철갑상어	22	21	29	35	44	15.1
눈볼개	14	17	16	16	20	6.4
벗꽃뱅어	17	16	18	18	18	1.3
종어	14	15	18	17	17	4.3
빙어	11	11	15	13	14	5.5
복어	1	2	2	3	4	24.1
연어과	3	2	1	1	2	△8.0

자료 :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 나. 주요 대중성 어종의 생산 동향

- 앞서 중국에서 발표되는 통계를 중심으로 주요 어종의 생산 동향을 살펴 보았음
- 이하에서는 FAO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되는 주요 어종의 중국 생산 동향을 살펴봄
  - 주요 어종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갈치, 고등어, 조기·민어, 오징어를 대상으로 함

### 1) 갈치

- 전세계 갈치 생산은 2000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량이 1,187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74.7%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92.5%를 차지함
  -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생산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감소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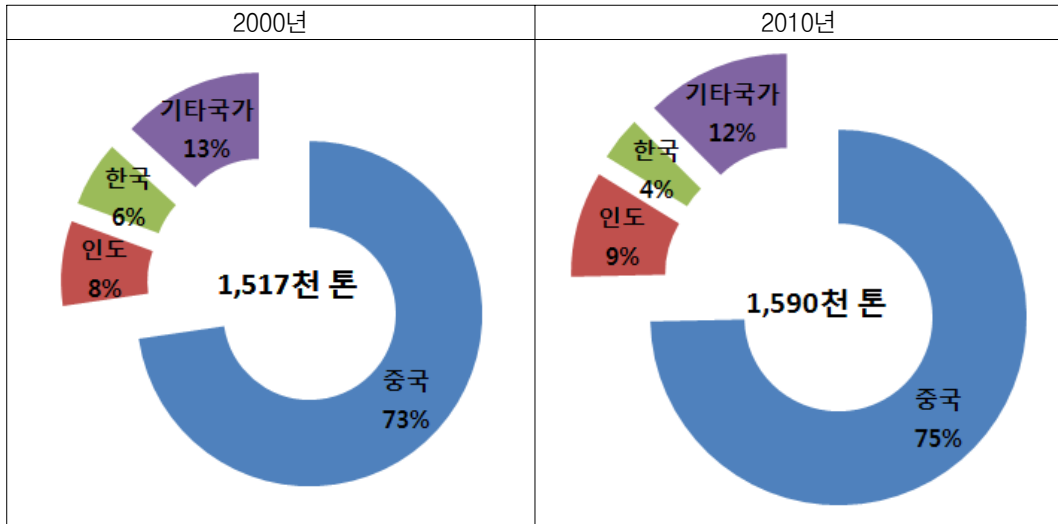
[표 2-15] 전세계 갈치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00~'10)
합계	1,517	1,445	1,563	1,568	1,590	0.5
중국	1,103	1,090	1,193	1,172	1,187	0.7
인도	121	115	87	101	145	1.9
한국	93	62	75	88	60	△4.3
인도네시아	38	39	74	74	57	4.1
파키스탄	29	23	23	20	21	△3.1
기타국가	134	116	111	112	120	△1.1

주 : 갈치의 생산량은 Black scabbardfish, Frostfishes, Hairtails, scabbardfishes nei, Largehead hairtail의 합계임  
 자료 : FAO, Fishstat Plus

- 전세계 갈치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3%에서 2010년 75%로 더욱 높아짐



[그림 2-9] 주요 국가별 갈치 생산 비중

## 2) 고등어

- 전세계 고등어 생산은 2000년 이후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량이 968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4%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55.0%를 차지함
  -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말레이시아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도 2000년 727천 톤에서 2010년 968천 톤으로 연평균 2.9%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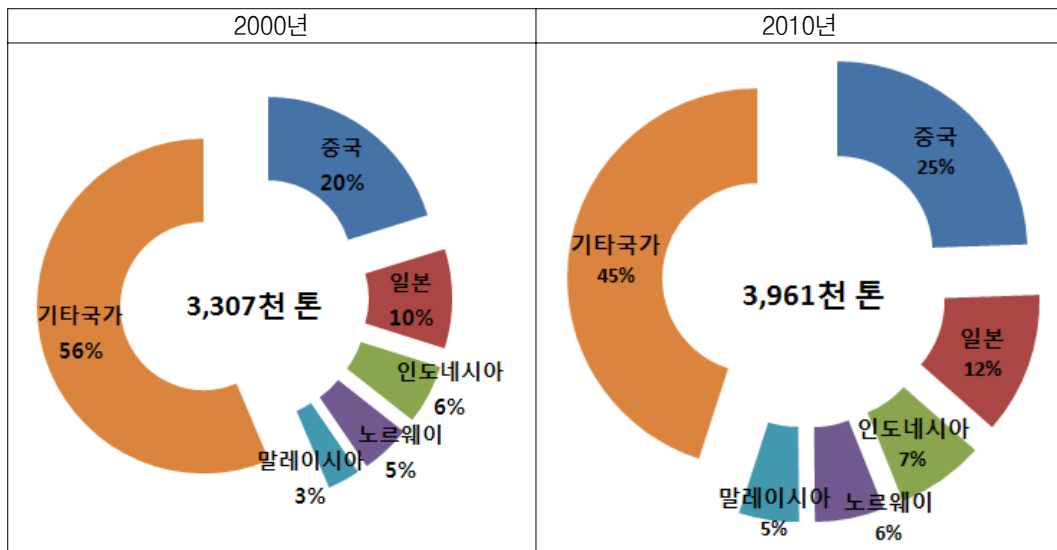
[표 2-16] 전세계 고등어 생산 추이

단위 :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00~'10)
전체	3,307	3,850	3,959	3,765	3,961	1.8
중국	727	775	1,027	826	968	2.9
일본	346	620	520	471	478	3.3
인도네시아	207	232	267	280	295	3.6
노르웨이	174	120	121	121	234	3.0
말레이시아	113	143	185	198	203	6.0
기타국가	1,739	1,959	1,839	1,869	1,783	0.3

주 : 고등어의 생산량은 Atlantic mackerel, Blue mackerel, Chub mackerel, Indian mackerel, Indian mackerels nei, Mackerels nei, Scomber mackerels nei, Seerfishes nei, Short mackerel의 합계임  
 자료 : FAO, Fishstat Plus

- 이에 따라 전세계 고등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0%에서 2010년 25%로 더욱 높아짐



[그림 2-10] 주요 국가별 고등어 생산 비중

### 3) 조기·민어

- 2010년 민어·조기 생산량은 1,802천 톤으로 중국 등의 생산 증가로 인해 2000년 이후 연평균 5.3% 증가함
  -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량이 1,101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61.1%

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브라질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84.9%를 차지함

-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인도와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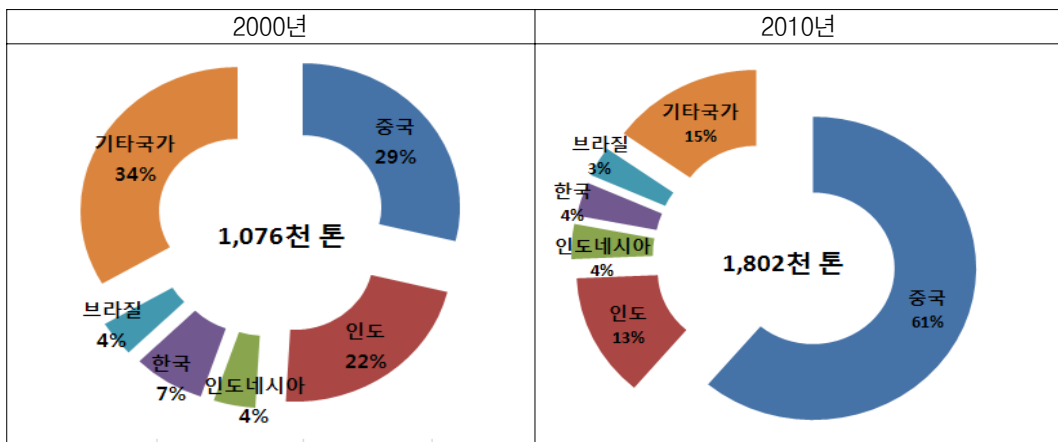
[표 2-17] 전세계 조기·민어 생산 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위 : 천 톤, % 연평균 증감율 ('00~'10)
합계	1,076	1,577	1,712	1,753	1,802	5.3
중국	349	843	991	1,027	1,101	12.2
인도	268	235	233	245	238	△1.2
인도네시아	52	60	65	57	67	2.5
한국	90	61	73	70	65	△3.1
브라질	48	50	68	73	58	1.8
기타국가	268	327	281	280	273	0.2

주 : 민어·조기의 생산량은 Argentine croaker, Atlantic croaker, Bigeye croaker, Black drum, Blackmouth croaker, Bobo croaker, Boe drum, Canary drum (=Bardman), Cassava croaker, Corvina drum, Croakers nei, Croakers, drums nei, Drums nei, Freshwater drum, Geelbek croaker, Gulf kingcroaker, Honnibe croaker, Kingcroakers nei, Large yellow croaker, Law croaker, Mi-iuy (brown) croaker, Peruvian banded croaker, Red drum, Shi drum, Silver croaker, South American silver croaker, Spot croaker, Tigertooth croaker, West African croakers nei, White croaker, White weakfish, Whitemouth croaker, Yellow croaker의 합계임

자료 : FAO, Fishstat Plus

- 이에 따라 전세계 조기·민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9%에서 2010년 61%로 2배 이상 증가함



[그림 2-11] 주요 국가별 조기·민어 생산 비중



#### 4) 오징어

- 2010년 오징어 생산량은 2,592천 톤으로 일본, 한국 등의 생산 감소로 인해 2000년 이후 연평균 0.3% 감소함
  - 2010년 기준으로 중국의 생산량이 608천 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3.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페루, 일본, 한국, 칠레 등의 순으로 상위 5개 국가의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65.2%를 차지함
  - 한편 2000년 이후 주요 국가별 생산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페루의 증가세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경우 2000년 217천 톤에서 2010년 608천 톤으로 연평균 10.8% 증가하였으며, 페루도 같은 기간 연평균 16.9%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표 2-18] 전세계 오징어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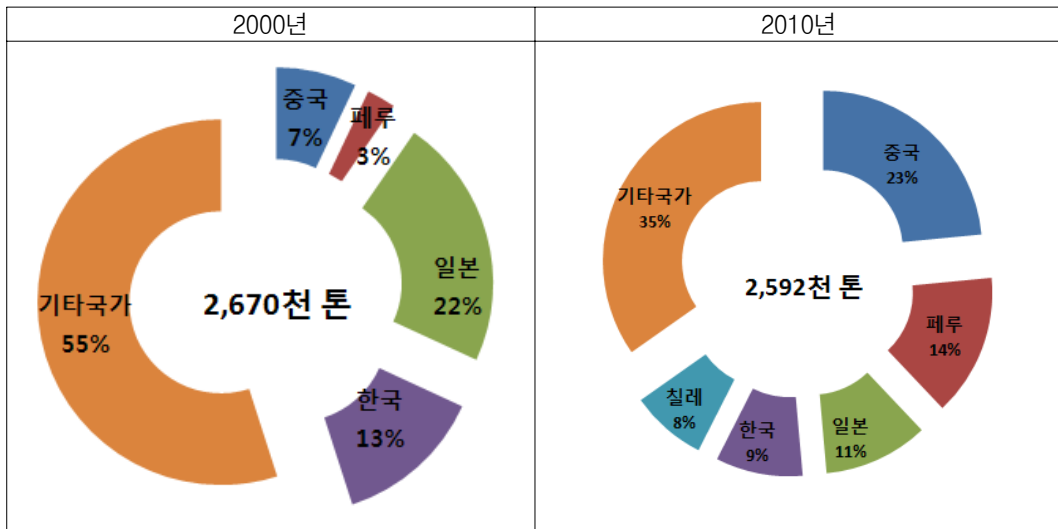
단위 : 천 톤, %

구분	2000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감율 ('00~'10)
합계	2,670	2,760	3,279	2,451	2,592	△0.3
중국	217	636	740	524	608	10.8
페루	78	301	538	425	375	16.9
일본	685	331	303	324	277	△8.7
한국	405	272	376	281	231	△5.5
칠레	0	298	146	56	200	123.7
기타국가	1,285	922	1,175	841	901	△3.5

주 : 오징어의 생산량은 Argentine shortfin squid, Bigfin reef squid, Broadtail shortfin squid, Cape Hope squid, Common squids nei, European flying squid, Gonate squids nei, Greater hooked squid, Japanese flying squid, Jumbo flying squid, Longfin squid, Neon flying squid, Northern shortfin squid, Opalescent inshore squid, Patagonian squid, Robust clubhook squid, Schoolmaster gonate squid, Sevenstar flying squid, Various squids nei, Veined squid, Wellington flying squid의 합계임

자료 : FAO, Fishstat Plus

- 이에 따라 전세계 오징어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0년 23%로 3배 이상 증가함



[그림 2-12] 주요 국가별 오징어 생산 비중

### 제3절 수산물 교역

#### 1. 대세계 수산물 교역

- 최근 FA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수산물 교역규모는 2000년 1,168억 달러에서 2009년 1,978억 달러로 연평균 6.0% 증가함
- 한편 중국의 수산물 무역규모는 같은 기간 55억 달러에서 156억 달러로 연평균 12.2%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전세계 수산물 교역 비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7% 2009년 7.9%로 약 3%p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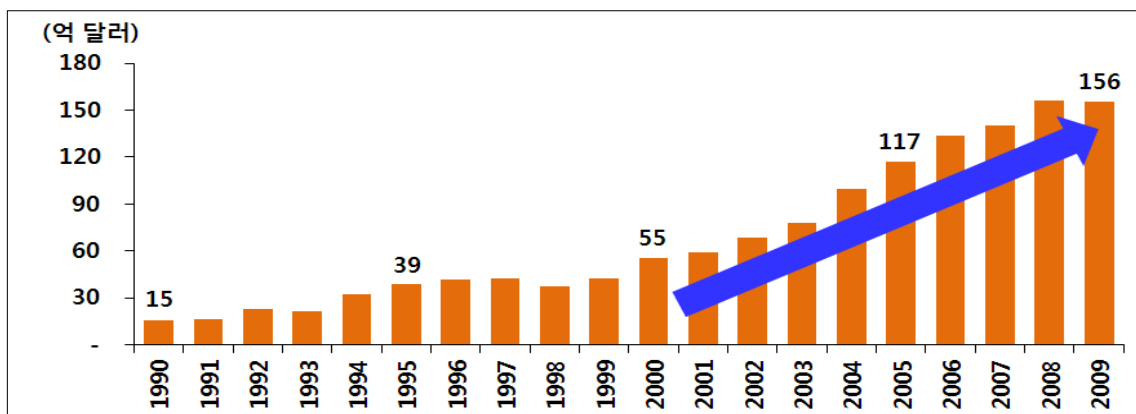
[표 2-19] 중국의 수산물 교역 추이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감율 ('00~'09)
전세계	합계	1,168	1,627	1,944	2,121	1,978	6.0
	수출	558	791	941	1,026	967	6.3
	수입	610	837	1,003	1,095	1,011	5.8
중국	합계	55(4.7)	117(7.2)	140(7.2)	156(7.4)	156(7.9)	12.2
	수출	37(6.6)	77(9.7)	95(10.0)	104(10.1)	105(10.8)	12.2
	수입	18(3.0)	40(4.8)	46(4.6)	53(4.8)	51(5.0)	12.1

주 : ( )안의 수치는 전세계 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FAO, Fishstat Plus

- 중국의 수산물 교역규모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2000년대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



[그림 2-13] 중국의 수산물 교역 추이

- 중국 정부가 집계한 중국의 수산물 수출 동향을 보면 2000년 153만 톤, 38억 달러에서 2010년 334만 톤, 138억 달러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함
  - 2010년 중국의 상위 5개 수출국은 일본, 미국, 한국, 홍콩, 대만 등으로 2000년과 비교해 독일이 대만으로 교체되었을 뿐 상위 4개 국가는 변화가 없음
  - 그러나 최근 수산물 교역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상위 5개국으로의 수출액 비중은 2000년 87%에서 2010년 63%로 감소함
  - 즉,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낮아진 반면, 여타 국가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 수출대상국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특히 제1위 수출대상국인 일본의 경우 수출규모 자체는 증가세를 보이거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3%에서 2010년 23%로 큰 폭으로 하락함

[표 2-20]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국

단위 : 천 톤, 천만 달러

구분	2000년			2010년		
	국가명	물량	금액	국가명	물량	금액
1	일본	591	203	일본	628	323
2	미국	183	53	미국	560	260
3	한국	287	44	한국	449	133
4	홍콩	136	23	홍콩	152	98
5	독일	76	11	대만	99	63
기타 국가		262	49	기타 국가	1,453	505
전체		1,534	383	전체	3,340	1,383
상위 5개국 비중(%)		83%	87%		57%	63%

자료 : 중국수산학회, 중국수산물수출입통계연감, 각 년도.

- 한편 중국의 수산물 수입 동향을 보면 2000년 252만 톤, 19억 달러에서 2010년 382만 톤, 65억 달러로 물량과 금액이 각각 2배, 3배 이상 증가함
  - 2010년 중국의 상위 5개 수입국은 러시아, 페루, 미국, 칠레, 노르웨이 등으로 2000년과 비교해 일본과 인도가 빠지고, 칠레와 노르웨이가 새롭게 진입함

- 상위 5개 국가에 대한 수입집중도는 2000년과 비교해 크게 차이가 없지만, 특정 국가에 대한 집중도는 감소하는 등 수출과 마찬가지로 교역대상국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음
- 즉, 상위 5개 국가의 수입액 비중은 2000년 64%에서 2010년 63%로 1% 차이 밖에 나지 않지만, 중국의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와 페루로 부터의 수입은 같은 기간 44%에서 37%로 감소하고, 칠레, 노르웨이의 비중이 증가함

[표 2-21] 중국의 주요 수산물 수입국

단위 : 천 톤, 천만 달러

구분	2000년			2010년		
	국가명	물량	금액	국가명	물량	금액
1	러시아	576	42	러시아	910	136
2	페루	966	40	페루	715	109
3	일본	51	15	미국	427	85
4	미국	156	13	칠레	205	42
5	인도	139	9	노르웨이	188	41
기타 국가		631	66	기타 국가	1,377	240
전체		2,519	185	전체	3,822	654
상위 5개국 비중(%)		75%	64%			64%

자료 : 중국수산학회, 중국수산물수출입통계연감, 각 년도.

## 2. 대한민국 수산물 교역

- 한국의 對세계 수산물 무역수지는 2000년 94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후 적자로 전환되어 2011년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함
  -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수출은 15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연평균 4.0%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14억 달러에서 42억 달러로 연평균 10.4%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임
- 한편 한국의 對중국 수산물 교역을 살펴보면, 2011년 기준으로 수출은 465백만 달러, 수입은 1,250백만 달러로 전체 수산물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0.1%, 29.8%로 나타남
  - 또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2000년 4억 달러에서 2011년 7.9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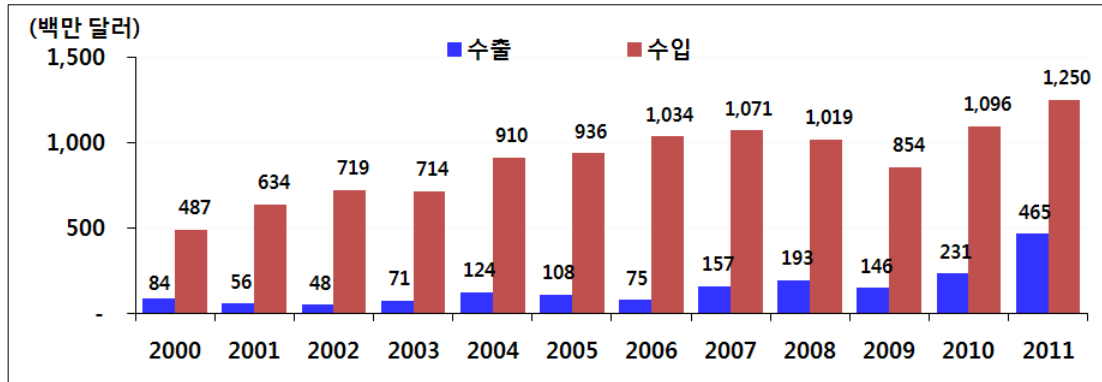
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표 2-22] 한국과 중국의 수산물 교역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00~'09)
대세계	수출	1,504	1,193	1,511	1,798	2,308	4.0
	수입	1,411	2,384	2,895	3,458	4,192	10.4
	무역수지	94	△1,190	△1,384	△1,660	△1,884	
중국	수출	84	108	146	231	465	16.8
	수입	487	936	854	1,096	1,250	9.0
	무역수지	△403	△828	△709	△865	△786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그림 2-14] 한국의 대중국 수산물 수출입 추이

-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품목은 오징어, 대구, 어란 등으로 2011년 기준 상위 7개 어종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63.2%를 차지함
  - 오징어가 1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1.5%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구, 어란, 삼치, 명태, 기타넙치, 김 등의 순임
  - 한편 2000년과 비교하여 어란, 삼치, 김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품목은 낙지, 조기, 아귀 등으로 2011년 기준 상위 7개 어종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48.5%를 차지함
  - 낙지가 1.7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13.2%를 차지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조기, 아귀, 갈치, 새우, 새우살, 미꾸라지 등의 순임
  - 한편 2000년과 비교하여 모든 어종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꾸

라지, 낙지, 아귀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함

[표 2-23]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출 품목

단위 : 만 달러, %

순위	어종명	2000년(A)		2011년(B)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8,489	100.0	46,482	100.0	6
1	오징어	4,512	53.7	10,002	21.5	1
2	대구	596	7.1	4,659	10.0	8
3	어란	84	1.0	4,042	8.7	48
4	삼치	65	0.8	3,251	7.0	50
5	명태	161	1.9	3,060	6.6	19
6	기타넙치	96	1.1	2,378	5.1	25
7	김	17	0.2	2,005	4.3	1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표 2-24] 한국의 對중국 주요 수입 품목

단위 : 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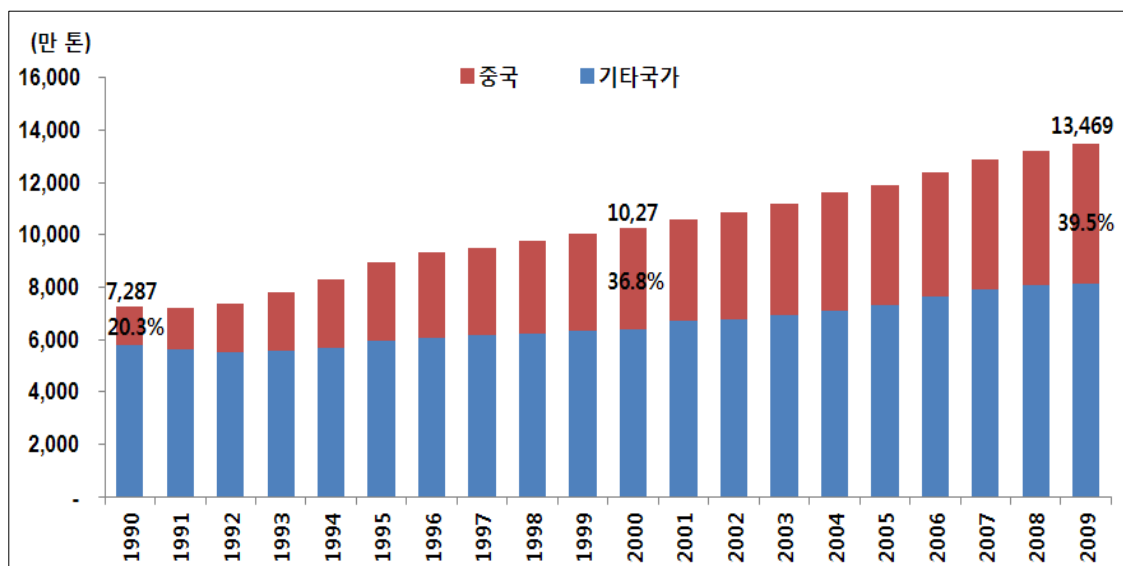
순위	어종명	2000년(A)		2011년(B)		B/A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48,684	100.0	125,044	100.0	2.6
1	낙지	3,026	6.2	16,549	13.2	5.5
2	조기	14,076	28.9	16,235	13.0	1.2
3	아귀	1,739	3.6	7,814	6.2	4.5
4	갈치	3,404	7.0	6,338	5.1	1.9
5	새우	1,827	3.8	5,271	4.2	2.9
6	새우살	908	1.9	4,670	3.7	5.1
7	미꾸라지	481	1.0	3,792	3.0	7.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 제4절 수산물 소비

### 1. 총 공급량

-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수산물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1990년 1,480만 톤에서 2009년 5,319만 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중국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1.4배 증가하는데 그침
  - 이에 따라 전세계 수산물 소비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0%에서 2007년 39%로 19%p 증가함



주 : 1) 수산물은 Seafood(total)와 Aquatic Plants 합계임

2) 조식용 공급량 기준임

자료 : //faostat.fao.org/site/610/default.aspx#ancor

[그림 2-15] 중국의 수산물 공급 추이

- 중국의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로 어패류, 해조류 모두 증가세를 보임
  - 어패류의 경우 2000년 3,150만 톤에서 2009년 4,237만 톤으로 연평균 3.3% 증가함
  - 해조류의 경우도 2000년 709만 톤에서 2009년 1,083만 톤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패류 증가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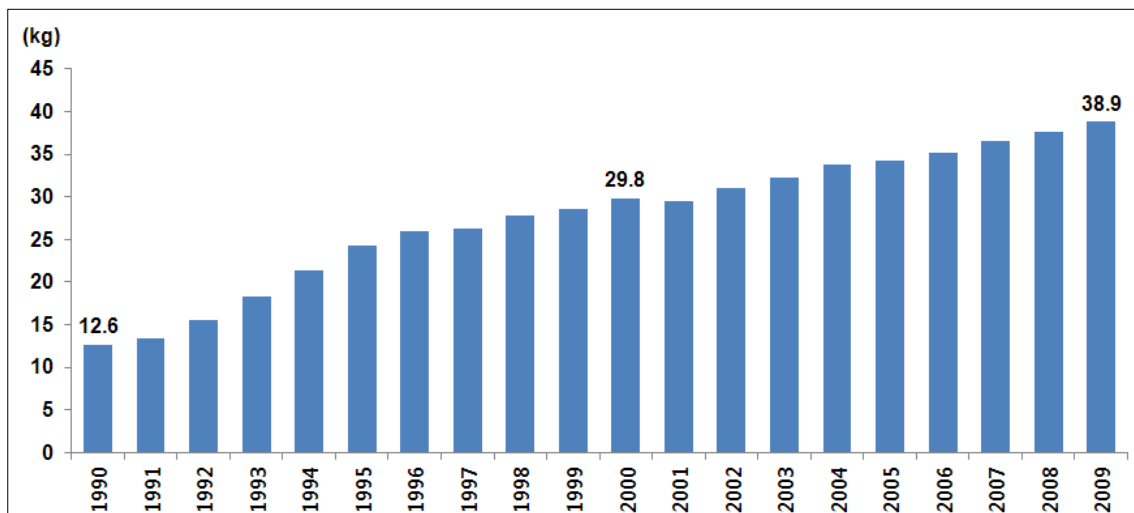
[표 2-25] 중국의 류별 수산물 공급

구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위 : 만 톤, %
						연평균 증감율 ('00~'09)
전체	3,860	4,577	4,934	5,108	5,319	3.6
어패류	3,150	3,601	3,924	4,073	4,237	3.3
해조류	709	975	1,010	1,035	1,083	4.8

주 : 1) 수산물은 Seafood(total)와 Aquatic Plants 합계임  
 2) 조식용 공급량 기준임  
 자료 : //faostat.fao.org/site/610/default.aspx#ancor

## 2. 1인당 공급량

-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도 199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의 경우 1990년 12.6kg에서 2000년 29.8kg, 2009년 38.9kg으로 2000년대 들어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주 : 1) 수산물은 Seafood(total)과 Aquatic Plants 합계임  
 2) 조식용 공급량 기준임  
 자료 : //faostat.fao.org/site/610/default.aspx#ancor

[그림 2-16]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공급 추이

-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량은 2000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로 어패류, 해조류 모두 증가세를 보임
  - 어패류의 경우 2000년 24.3kg에서 2009년 31.0kg으로 연평균 2.7% 증가함
  - 해조류의 경우도 2000년 5.5kg에서 2009년 7.9kg으로 연평균 4.1%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어패류 증가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6] 중국의 1인 1년당 류별 공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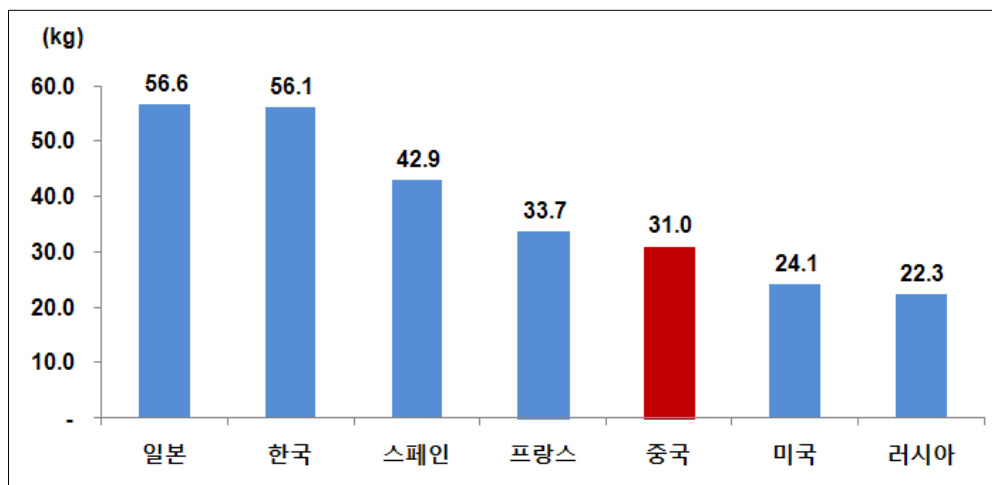
구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08년	2009년	단위 : kg, %
						연평균 증감율 ('00~'09)
전체	29.8	34.2	36.5	37.6	38.9	3.0
어패류	24.3	26.9	29.0	30.0	31.0	2.7
해조류	5.5	7.3	7.5	7.6	7.9	4.1

주 : 1) 수산물은 Seafood(total)과 Aquatic Plants 합계임

2) 조식용 공급량 기준임

자료 : //faostat.fao.org/site/610/default.aspx#ancor

- 한편 주요 수산물 소비국가와의 어패류 소비량을 비교한 결과 수산물 최대 소비국인 일본과 한국에 비해서는 낮지만 미국, 러시아보다는 수산물 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주 : 조식용 공급량 기준임

자료 : //faostat.fao.org/site/610/default.aspx#ancor

[그림 2-17] 주요 국가의 어패류 1인 1년당 공급량(2009년 기준)

## 제5절 수산정책

### 1. 중국의 수산정책 동향

-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하여 정부주도로 5개년 계획이 실시되고 있는데, 제1차 5개년 계획(一五期, 1953~1957년)을 시작으로 현재는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실시되고 있는 중임
- 비교적 최근 발표된 5개년 계획 내 수산분야에 대한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9·5 계획에서는 해면어로어업 제로성장 정책과 해면 및 내수면 마이너스 정책이 실시됨
  - 10·5 계획의 핵심은 三無어선(어업허가증, 어선등록증, 어선검사증)에 대한 정리와, 어로어업허가증 관리규정 제정, 어선감척사업 및 금어기 도입이라 할 수 있음
  - 11·5 계획에서는 양식 중심의 수산업 발전과 어업관리 강화 및 자원절약형 어업이 추진됨
  - 12·5 계획의 경우 어업구조 조정 추진, 건강 수산양식 촉진,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양어업 발전을 꾀하고 있음

[표 2-27] 중국 수산정책 동향

구분		주요 정책
9·5 계획 (96~00년)	1999년	▪ 해면어로어업 제로성장 정책 실시
	2000년	▪ 해면 및 내수면 어로어업 마이너스 성장 정책 실시 ▪ 어로어업 어선에 대한 조사 실시
10·5 계획 (01~05년)	2001년	▪ 삼무(三無) 어선에 대한 정리
	2002년	▪ 어로어업허가증 관리규정 제정·시행 ▪ 어선감척잠정규정 개정 ▪ 장금 금어기 도입 : 장강 하류유역
	2003년	▪ 장강 전지역에 대한 봄철 금어기 실시
	2004년	▪ 발해해역에 대한 금어제 도입·실시
11·5 계획 (06~10년)	2006년	▪ 양식 중심 수산업 발전 ▪ 어업관리 강화 및 자원절약형 어업 추진
12·5 계획 (11~15년)	2011년	▪ 어업구조 조정 추진 ▪ 건강 수산양식 촉진 및 우량품종 번식 사업 ▪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양어업 발전

- 여기서는 주요 부문별 정책 현황과 최근에 발표된 12·5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함

## 2. 주요 부문별 정책 동향

### 가. 생산부문

#### 1) 어획허가제도

- 중국의 어업관리 기본제도는 어획허가제도로 이를 통해 어선어업 전반에 대한 계획과 통제를 실시하고 있음
  - 어획허가제도는 ‘수산자원번식 보호조례(1979년 제정)’에 의해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1980년에 중국 전 지역의 어선어업을 대상으로 도입됨
  - 어획허가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1986년 제정된 ‘어업법’과 ‘어업법 세칙’이며, 2002년 실시한 ‘어획허가증관리방법’과 ‘어획허가관리규정’에서 어획허가제도의 내용을 보완함
  - 어획허가는 조업장소, 조업유형, 조업기간, 조업방식, 어획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허가증은 원양어업, 대형트롤, 대형 선망어업 등은 중앙정부에서, 기타 연근해 어업은 지방정부에서 발급함

#### 2) 금어·휴어 제도

- 중국정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1955년부터 금어제도를 실시함
  - 1955년 최초로 17개 조업금지선을 설정하여 금어구(금지선 내 수역)에서의 동력저인망어업의 조업을 금지하였으며, 1979년에는 동중국해에서의 기선저인망어업을 금지하였으나 이는 국영업체가 제외되면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효과는 한정적이었음
  - 1981년에 금어구의 조업금지선 외측에 갈치, 부세, 병어에 대한 보호구를 설정하여 매년 4~7월에 조업을 금지시킴
  - 1990년대에는 중국내 수산자원이 급감하면서 금어 혹은 휴어제도가 더욱

강화됨

- 하계휴어제도는 일정 수역에 대해 하계에 조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1995년부터 도입되어 실시됨
  - 초기에는 동중국해와 황해를 위주로 7~8월에 저인망과 범장망을 금지하였으며, 이 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됨
  - 하계휴어제도에 참가한 어선 척수는 1995년에 7만 2,000여척에서 1999년에는 9만 4,000여척, 2001년에는 11만 8,000여 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하계 휴어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과 일본과는 달리 참가한 어업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는 점임

### 3) 제로 성장정책

- 1990년대 이후 무분별한 수산자원 어획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급격하게 고갈하자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1999년 어획량 제로성장정책을 도입함
  - 제로성장 정책의 핵심은 하계휴어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어선 감척을 동시에 추진하여 어획노력량을 감소시키는 것임
  - 2000년에는 ‘제로성장정책’에서 더 나아가 ‘마이너스(-) 성장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생산량을 규제하는 ‘제로성장정책’과 함께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약 11억 7,000만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업구조조정을 실시함
  - 그 결과, 전국적으로 총 1만 8,000여척의 동력어선이 감척되고, 8만 여명의 어업인들이 양식어업이나 수산가공업 및 유통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음
  - 그러나 어업구조조정에 의해 전업을 했던 어업인들이 최근에 다시 어선어업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4) 양식어업 관리

- 중국 정부는 어선어업의 어획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양식어업에 있어서도

1987년 양식증 제도를 도입함

- 양식증 제도는 양식어업의 기본제도로 양식어업 발전과 양식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중국 정부는 선진국 양식 기술과 설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양식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농업부에서 어업기술지도센터를 설립하여 양식업자들에게 양식 기술을 전수하고 있음
  - 또한 수출용 수산물의 양식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우수 수산물 또는 지역의 특색이 있는 수산물의 양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최근에는 무공해양식을 추진하는 등 친환경수산물의 생산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음
  - 2001년 4월 중국 농업부는 ‘무공해 식품행동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2005년 부터는 매년 385억 달러를 투입하여 5년 내에 ‘무공해 어류양식기지’를 건설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무공해 수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 수산물’의 브랜드화를 촉진하고 있음
  - 실제로 장수(江蘇)성에서는 2004년도에 약 18만km<sup>2</sup>의 무공해 수산물 양식기지에서 게, 새우 등 223개 품목이 양식되었음

## 나. 가공 및 유통

### 1) 가공부문

- 1997년 중국 농업부는 ‘수산물가공관리규범’을 제정하여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제도를 도입함
  - 동 규범에서는 HACCP와 관련한 항목(가공 원료, 보조 원자재, 가공용 수와 얼음, 생산시설, 생산 환경, 포장, 표시, 저장, 운송, 생산과정의 모니터링, 관리 인원, 위생통제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수출가공기업은 HACCP를 도입하고 있으며, 자국용 수산물 가공기업도 최근에 HACCP을 도입하기 시작함
- 수산물 가공산업의 발전의 주요 대책은 저가 수산물을 개발·이용하고, 수산보건식품과 합성 수산식품을 개발하며, 고차 가공 수산물의 품질을

강화하는 것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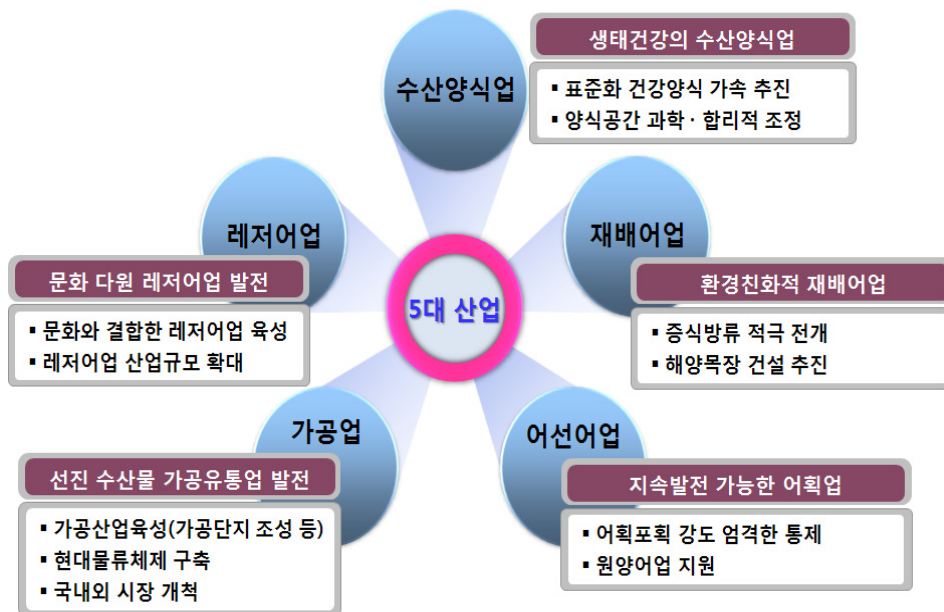
- 이에 최근 수산물 가공은 염장에서 신선·냉장 및 활어로, 포장이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저차가공에서 고차가공으로 전환되고 있음
- 중국의 어업발전 ‘12.5(2011~2015년) 계획’에는 2015년까지 수산물 가공율을 2010년 35%에서 40%까지 증가시킬 계획임
- 이를 위해 수산물가공단지를 적극 조성하고, 선진수산가공기업을 육성하고 있음

## 2) 유통부문

-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현재 연안지역의 경우 수산물도매시장체계가 거의 이루어졌으며, 내륙 지역에서도 도매시장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도·농간 수산물 소비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촌지역의 수산물 소비를 중점적으로 촉진하는 동시에 도시지역의 수산물 소비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침임
  - 중국의 ‘10년 식품발전 강요’에 따르면, 2010년까지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2000년 수준보다 10kg가량 늘릴 것이라고 하였음
- 수산물 위생 관련 규정으로는 1995년에 8월에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수산물위생관리방법’이 있음
  - 이는 중국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관리대상으로 식용어류, 갑각류, 패류 및 수산물 가공품이 포함되며, 생산, 가공, 유통단계에 적용됨

### 3. 12·5계획

- 2011년 중국 농업부는 ‘어업발전 12.5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동 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업구조 조정 추진, 건강 수산양식 촉진 및 우량품종 번식 사업, 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원양어업 발전으로 요약할 수 있음



[그림 2-18] 5대 산업체계 구축 방향

#### 가. 생태건강의 수산양식업

- 표준화 건강양식 추진을 위해 수산신품종 개발, 수산원우량종 보급률과 유전개량을 제고, 양식품종구조 및 구역안배 조정 및 최적화, 고효율 인공배합사료 보급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양식공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기본 양식수역 보호대책 수립,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입식량 통제, 심해 대형 가두리 등 해양 양식 적극 보급, 공장화 순환수양식 장려 등을 실시함
- 전염병 예방·통제 및 품질안전 감독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종묘 산지검역 추진, 어촌마을 수의사 등기제도 실시, 정부수의사 단체 건립 추진, 수산물 품질안전 제도 정비 등을 실시함



## 나. 환경 친화적 증식어업

- ‘전국수생생물증식방류총체계획(2011~2015년)’을 성실히 실행하고 수역 생태환경, 자원상태에 따라 증식방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증식방류 품종 및 규모를 확정함
- 해양목장과 인공어초의 설계, 위치 및 형식선정, 효과평가 등 기초 작업을 견고히 하여 완전한 해양목장건설과 관리보호제도를 마련함
  - 지역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세워 증·양식어초, 생태어초, 자원보호어초 및 유어낚시 레저어초 등 다양한 형태의 인공어초를 건설함

## 다. 지속발전가능한 수산업

- 어업포획 강도를 엄격히 통제함
  - 해양포획어선의 수, 출력 “쌍방 통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함
  - 어선관리와 포획허가 제도를 정비하고, 어선·어구 표준화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원양어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국제어업자원관리제도 제정에 적극참여, 타국 EEZ 입어 제고, 새로운 형태의 합작방식 모색, 신자원·어장 탐색 포획 및 개발이용을 강화함
  - 해외기지 건설, 가공 확대, 원양어업장비 및 기업관리 수준제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원양어업기업 및 현대화 원양어업선단을 배양하고 육성함

## 라. 선진 수산물 가공유통업 발전

- 수산물가공단지 조성, 수산물가공업 클러스터 구축, 고차 가공수산물 개발 등을 통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킴
- 산지에서부터 판매처까지의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수산물시장 정보서비스 강화, 수산네트워크 구축, 수산물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현대물류체계를 구축함
- 수산물의 국내시장소비 유도, 수산물 국제무역의 주도권 장악, 각종 무역장벽 대처능력 제고시킴

## 마. 문화다원 레저어업 발전 장려

- 문화오락형, 도시관상형, 체육경기형, 관광체험형, 전시교육형, 명품 현대 레저어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킴
-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수립, 지역 특색형성, 레저어업 대규모 클러스터 등을 조성함
- 관상어 생산규모 확대, 레저어업중 공익성 시설의 투입지원 확대, 레저어업 조직과 협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함

## 제6절 중국 수산업의 특징

### 1. 수산물 생산강국

- 중국은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으로서 수산물에 있어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2010년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은 6,350만 톤으로 전세계 수산물 생산량 (16,845만 톤)의 37.7%를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311만 톤)와 비교할 때 약 20배 이상의 규모임
-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 해역에서 조업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어선어업, 어장을 둘러싼 양국간 경합이 심화되고 있음
  - 어장 중첩성, 어종 유사성으로 서해안 일대에 최근 중국어선에 의한 불법조업이 성행하여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정부의 해외어장 진출에 대한 지원 강화로 원양어업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경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 중국 요녕성 A어항 전경



▲ 정박된 어선

▲ 양륙 시설과 조선소

[그림 2-19] 중국의 어항 및 어선(관련 사진)



[그림 2-20] 중국의 양식장 및 축양장(관련 사진)

-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는 어업구조조정, 안전한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해외진출 확대, 양식산업 육성 등 정책적으로 산업구조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양식산업과 관련해 혁신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 및 지원이 다각적으로 각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일례로 중국수산과학연구원 황해수산연구소에서는 양식분야에서 300여개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도국가해양과학연구중심에 따르면

청도지역의 경우 양식생산을 지지하는 양식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양식업체에서는 노르웨이 등 선진국에서의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로 인해 중국의 양식수산물 생산량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0년 기준 전세계 양식 수산물 생산량(7,894만 톤)의 61%(4,783만 톤)가 생산됨

## 2. 수산물 가공업의 선진성

- 중국 정부는 식품 전반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 수산물에 있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특히 수출용 가공 수산물의 경우 제외국의 안전 수요에 대응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최근에는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도 위생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전통적 가공은 물론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바탕으로 선진형 기술·품질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저차가공에서부터 고차가공까지 다양한 형태의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수산물 가공업은 노동집약형 산업으로서 일찍이 해외자본이 중국에 진출해 왔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소규모~대규모 계열화)의 가공무역/가공기업이 발달해 있음
  - 현재 선진국을 주 거래대상으로 하는 중대형 기업의 대부분은 HACCP, ISO 시리즈 등 선진형 위생·품질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음
  - 일례로 연태지역 85개의 수산물가공 업체가 HACCP, ISO 인증을 획득한 상태로 조사되었음
- 중국의 수산물가공업은 국내에 비해 산업적 다양성과 비용측면에서 우위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중국 내 인건비 등 제비용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국내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높음



[그림 2-21] 중국의 수산물 가공공장(관련 사진)

- 특히 중국의 수산물은 품질 및 가격 등에서 국내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국내외 인접한 수산도시인 산둥성, 저장성 등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동일한 어종이 유통·소비되고 있으며, 대중품목의 경우 국내에 비해 낮은 거래단가가 형성되어 있음
  - 더욱이 일반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 중으로 무공해수산물 양식장 등이 확대되고 있음



▲ 시장전경



▲ 시장 입구



▲ 시장 내부 전경



▲ 선어 판매대



▲ 꽃게

[그림 2-22] 중국 수산물 유통/판매 현장(청도시 재래시장)

### 3. 수산물 소비 확대 및 다양화

-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산물 내수시장이 크게 성장함
  - FAO-OECD에 의하면 중국의 1인 1년당 수산물 소비는 2009~2011년 평균 34kg에서 2021년에는 37kg으로 약 4kg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만약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가 1kg 늘어날 경우 약 130만 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처럼 향후 중국의 수산물 총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수산물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날 경우 자국내 생산만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수산물 수입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수산물전문판매점

▲ 수산물전문판매점 전경

▲ 상품 카탈로그(어패류가공품)

▲ 신선수산물 판매대

[그림 2-23] 중국 수산물 유통/판매 현장(대형할인점)



- 한편 중국내 고소득층의 경우 자국 수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고급 수입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확대되고 있음
  - 이에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은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중국 수출시장 개발을 추진 중임
  - 특히 일본의 경우 정책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중으로 소비 실태, 물류/유통 실태 등 수산물 소비 관련 기초조사의 수행은 물론, 진출 업체에 대한 자금, 컨설팅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4. 기타

- 중국의 경우 수산업 규모의 광대함과 사회인프라 측면의 제약 등으로 인해 정확한 현실 진단이 어려운 실정임
  - 가장 대표적으로 수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통계자료인 생산량 통계에 있어서 FAO에서 발표하는 국제통계와 중국 국내통계 간에 괴리가 있음
  - 2010년 기준 생산량 집계 현황을 보면 FAO는 6,350만 톤, 중국어업연감에서는 5,373만 톤으로 발표하고 있어 약 1,000만 톤의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수산분야에 있어서도 각 분야별, 지역별 여건과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산분야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통계 등 문헌자료를 통한 분석과 함께 산업 실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복합·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對중국 수출 전략 품종으로서 전복, 해삼 등이 부상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그런데 중국 내에서도 소비 증가에 대응할 목적으로 대규모 해삼 양식단지 조성이 추진되는 등 자구책이 등장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 수산업의 실태 분석에 있어 통계 등 문헌정보 뿐만 아니라 산업,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음
- 한·중 FTA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주요 업종/지역/품목에 대해 현실에 기반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Chapter

3

#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한·중 FTA 관련 기존 연구 분석

제1절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제2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전망

# 제3장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한·중 FTA 관련 기존 연구 분석

## 제1절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 1. 중국의 FTA 체결 전략 및 동향

#### 가. 중국의 FTA 추진 배경

- 1990년대 말까지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 입장으로 변화하여 세계 각 지역들과 FTA 체결을 추진함
  - 중국은 1991년 APEC 가입 이후 상당기간 역내협력에 대해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으며 한 때는 ‘아시아통화기금(AMF)’ 구상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
  - 그러나 1999년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역경제통합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으로 전환함
  - 특히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적극적인 다자간 협력과 함께 FTA 체결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비록 타 국가에 비해 중국은 FTA에 늦게 참여하였지만 FTA 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중국이 최근 FTA에 대해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먼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FTA를 통해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시켜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중국 내 소비자에게 고품질 저가격의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를 확대시켜 소비자 잉여를 증가시키는 데 있음
  - 또한 세계 각 국가들이 FTA를 통해 발 빠르게 지역통합을 추진하는 등 세계무역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중국도 이에 소외당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함

- 마지막으로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FTA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sup>5)</sup>
- 중국은 자국 중심의 경제블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NAFTA, EU에 이은 제3의 ‘경제중심’으로 요약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미국의 거센 입김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중국 상무부 등 주요 기관들의 자료에 나타나듯이 FTA를 통해 인민폐의 국제화 추진, 국제정치적 지위와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협상력 제고는 물론, 많은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맺음으로서 국제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있음

## 나.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중국은 2000년대 이전까지 FTA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001년 WTO 가입 이후 세계경제에 급속히 편입되면서 세계화와 지역경제협력 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FTA 등 지역협력 추진을 주도적으로 추진함
- 비록 타 국가에 비해 중국은 FTA에 늦게 참여하였지만 진행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중국은 2004년 홍콩, 마카오와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시작으로 2012년 상반기 기준 19여개 국가를 포함하는 10건의 FTA 협상을 완료함
  - 또한 FTA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도 한국을 포함하여 약 20여 개국에 이름

5) 위 내용은 LG 주간경제(2007년 5월 16)의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함

[표 3-1] 중국의 FTA 추진 현황

구 분	국가/협정명	추진경과	비고
발효 10건 19개국	홍콩 CEPA	'04.1. 발효	▪ CEPA :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마카오 CEPA	'04.1. 발효	
	ASEAN FTA	'04.1. EHP 발표 '05.7. 상품협정 발효 '07.7. 서비스협정 발효 '09.8. 투자협정 서명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라오tm, 베트남, 미얀마 등 10개국 ▪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농산물 일부품목(교역액 기준 1.5%)의 관세 조기 철폐
	칠레 FTA	'06.10. 상품협정 발효 '10.2. 제6차 투자협상 개최 '10.8. 서비스협정 발효	
	파키스탄 FTA	'06.1. EHP 발효 '07.7. 상품협정 발효 '09.10. 서비스협정 발효	▪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뉴질랜드 FTA	'08.10. 발효	▪ 선진경제권과의 최초의 FTA
	싱가포르 FTA	'09.1. 발효	
	페루 FTA	'10.3. 발효	
	코스타리카 FTA	'10.4. 공식서명 '11.8.1. 발표	
	대만 ECFA	'10.9. ECFA 발효	▪ ECFA :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 조기 철폐 프로그램(EHP : Early Harvest Programme) 실시 ▪ 806개 품목에 대한 조기 철폐 프로그램 발효 이후 확대 협상 예정
협상중 7건 16개국	SACU FTA	'04.6. 협상 개시 선언	▪ 남아프리카 관세동맹(SACU : Southern African Customs Union) ▪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남아공, 스와질란드 등 5개국
	GCC FTA	'05.4. 협상 개시 '07.11. 제5차 협상	▪ 걸프 협력회의(GCC :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등 6개국
	호주 FTA	'05.5. 협상 개시 '11.7. 제16차 협상	
	노르웨이 FTA	'08.9. 협상 개시 '10.9. 제8차 협상	
	아이슬란드 FTA	'07.4. 협상 개시 '08.5. 제4차 협상	
	스위스 FTA	'11.1. 협상 개시 선언 '11.4. 제1차 협상	
	한국 FTA	'12.5. 협상 개시 선언 '12.5. 제1차 협상	
공동연구 2건 3개국	한·중일 FTA	'11.12. 공동연구 제4차 회의	
	인도 RTA	'07.10. 공동연구 종료	▪ RTA : Regional Trade

## 다. 중국 FTA의 특징

- 중국은 세계시장에서 중국산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며 무역마찰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통상 전략의 일환으로 FTA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
- 중국 FTA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초기에는 홍콩, 마카오, ASEAN 등 중화권 및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FTA를 추진한 뒤 중남미, 유럽 국가들로 확대하고 있음
  - 즉, 초기에 중국은 FTA 대상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비교적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선택하여 자국 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FTA 협상 경험을 축적함
  - 이후에는 중남미, 유럽 국가들로 지역적으로는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를 선택하여 FTA를 추진함
  - 이는 중국이 선진국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개도국을 잠재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다방위, 다형식의 전략을 세워 대륙별로 대표적인 국가를 선택해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이 FTA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산업 활성화, 세계무역 질서 변화에 따른 적응, 대외적 영향력 증대를 들 수 있음
  - 먼저,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통한 시장접근성 향상과 산업 고도화 촉진, 상품과 서비스 구입 기회 확대와 같은 소비자 잉여확대임
  - 다음으로는 세계무역 질서 변화에 적응을 위해서인데, 이는 국제 교역 중심에서 소외되어 무역전환효과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임 (대선진국 교역의존도 감소 및 무역 마찰-중국의 덤핑 등)
  - 마지막으로 경제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임(궁극적으로 NAFTA, EU에 이은 제3의 '경제 중심'으로 도약 목적-미국 견제)
  - 중국의 국가별 FTA 추진 동기는 다음 표와 같이 요약 할 수 있음

[표 3-2] 중국의 국가(지역)별 FTA 추진동기

중국의 FTA 추진 목적	주요 해당 국가
신 시장 개척 및 중국 기업해외진출 촉진	ASEAN, 인도, 남아공, 브라질, 칠레, 파키스탄
에너지 확보	ASEAN, 호주, 칠레, SCO, GCC, 파키스탄, 아이슬란드
아시아 지역 내 리더십 강화	한국, ASEAN, 파키스탄
지역 간 연결 통로 역할	ASEAN, SC, 인도
신업경쟁력 제고	홍콩, 마카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서부 대개발 및 동북진흥책 촉진	한국, ASEAN, 파키스탄
해외화교 네트워크 강화	ASEAN
시장경제지위 인정 유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주 : SCO는 상하이협력기구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임  
 자료 : LG경제연구원,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 주간경제」, 표 2 참조, 2007.

## 2. 중국의 수산분야 FTA 체결 동향 및 특징

### 가. 중국-아세안

#### 1) FTA 추진 현황

- 중국-아세안<sup>6)</sup> FTA는 2000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중국-아세안 고위급회의(10+1)에서 제안됨
  - 2001년 11월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2010년까지 FTA 완성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향후 10년 안에 FTA를 ‘완결’하기로 합의함
- 200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중·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약’을 체결함
  - 2004년 11월 ‘중국-아세안 상품협정’이 체결되었으며, 2005년 7월에 발효됨
  - 이후 2007년 1월에는 서비스 부문에 대해 최종 합의하고 동년 7월에 발효되었으며, 2009년 8월에는 투자분야에 대해 최종 합의함

6) 아세안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10개국임

[표 3-3] 중국-아세안 FTA 추진 현황(1)

일시	주요 내용
2000년 11월	▪ 제4차 중-아세안 고위급 회의(싱가포르) : FTA 제안
2001년 11월	▪ 중-아세안 정상회담(브루나이) : 중국 2010년까지 FTA 완성 제안
2002년 11월	▪ 중-아세안 정상회담(프놈펜) : 포괄적 경제협력 기본협약 체결 - 조기관세철폐 프로그램 : 2004년 1월부터 발효
2005년 7월	▪ 상품 협정 체결(2004년 11월) ▪ 상품 협정 발효 - 관세철폐 계획 : 아세안 6개국(2010년), 나머지 4개국(2015년)
2007년 7월	▪ 제10차 중-아세안 정상회담 : 서비스 협정 체결(2007년 1월) ▪ 서비스 협약 발효
2009년 8월	▪ 투자 협정 체결

## 2) FTA 협정 주요 내용

- 중국-아세안은 경제발전단계를 감안하여 아세안을 크게 아세안 창설국과 아세안 후발가입국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자유화 일정에 차등을 둠
  - 아세안 창설국은 기존 아세안 회원국으로 비교적 경제적 여건이 양호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임
- 관세 인하 기준 시점은 2003년 7월 1일이며, WTO 회원국의 경우 기준 관세는 기준시점인 2003년 7월 1일 현재 최혜국 대우 실행관세율이며, 베트남<sup>7)</sup>, 라오스 등 WTO 비회원국인 경우 기준 시점 현재 중국에 대한 실행 관세율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음
- 중국-아세안 FTA에서 상품양허는 크게 3단계로 나뉘는데 우선 조기 관세 자유화 품목을 설정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트랙(Normal Track)과 민감트랙(Sensitive Track)으로 구분함
  - 조기관세자유화 품목은 주로 1차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 외 공산품에 대한 관세양허는 일반트랙과 민감트랙으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자유화가 실시되는데, 일반트랙으로 자유화되는 품목에 대한 MFN 실행관세율은 회원국 그룹에 따라 무역자유화 이행기간이 달라짐
- 중국과 아세안은 HS 2단위의 01류~08류에 대해서는 선자유화조치 적용 대상 품목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함

7)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였으며, 중·아세안 FTA 논의 시점에서는 WTO 비회원국이었음



- 선자유화조치 적용 대상 품목 중 회원국이 원할 경우 별도의 품목을 예외품목으로 적용할 수 있지만(부속서에 명시) 수산물의 경우 어떤 품목도 예외 품목으로 적용하지 않음

[표 3-4] 중국-아세안 FTA 추진 현황(II)

HS코드	해당품목
01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2	육과 식용 설육(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
03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무생척추동물
04	낙농품류, 조란, 천연꿀
05	기타 동물제품(동물털, 모피, 녹용, 산호 등)
06	살아있는 수목, 절화, 장식용 잎 등
07	식용 채소류, 식용 뿌리(참, 매니옥, 고구마 등)
08	식용 과일과 견과류, 감귤류의 껍질

자료 : KIEP, “중-아세안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Focus」, 표 1 참조, 2004.

- 선자유화조치 대상에 포함된 수산물은 3가지 카테고리에 의해 자유화가 이루어짐
  - 아세안 기존 회원국의 경우 관세가 15%보다 높은 품목을 제1카테고리로, 관세가 5~15%인 품목을 제2카테고리로, 관세가 5%보다 낮은 품목을 제3카테고리로 정의하고 200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함
  - 아세안 후발가입국의 경우 관세가 30%보다 높은 품목을 제1카테고리로, 관세가 15~30%인 품목을 제2카테고리로, 관세가 15%보다 낮은 품목을 제3카테고리로 정의하고 2009년까지 관세를 철폐하도록 규정함

[표 3-5] 중국-아세안 FTA 조기관세자유화 일정

구분		'04	'05	'06	'07	'08	'09	'10	
아세안 창설국	제1카테고리	10%	5%	관세철폐					
	제2카테고리	5%	관세철폐						
	제3카테고리	관세철폐							
아세안	제1카테 고리	베트남	20%	15%	10%	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20%	14%	8%	관세철폐	
		캄보디아			20%	15%	10%	5%	관세철폐
	제2카테 고리	베트남	10%	10%	5%	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10%	10%	5%	관세철폐	
		캄보디아			10%	10%	5%	5%	관세철폐
	제3카테 고리	베트남	5%	5%	0~5%	0~5%	관세철폐		
		라오스, 미얀마			5%	5%	0~5%	관세철폐	
		캄보디아			5%	5%	0~5%	0~5%	관세철폐

## 나. 중국-칠레

### 1) FTA 추진 현황

- 중국-칠레 FTA는 2004년 8월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급속하게 진행됨
  - 2005년에 1월 북경에서 1차 협상을 시작으로 동년 10월까지 총 5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짐
- 2005년 11월 중국과 칠레는 한국 부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 칠레공화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2006년 10월에 FTA를 발효함
  - 중-칠레 FTA는 중국-아세안 FTA 후의 중국이 체결한 두 번째 FTA이며 단일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 협정임
  - 양측은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교역 상품의 97%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철폐하고 경제, 문화, 교육, 과학기술, 환경 보호 분야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 2008년 4월 중국 하이난 성 산야에서 열린 중-칠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중-칠레간 FTA의 서비스 교역에 대한 추가협정(The Supplementary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of the Free Trade Agreement)에 서명하였고 2010년 8월에 서비스 협정이 발효됨
  - 현재는 투자분야에 대한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표 3-6] 중국-칠레 FTA 추진 현황(1)

일시	주요 내용
2004년 8월	▪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시작
2005년	▪ 총 5차례 협상 개최
2005년 11월	▪ 부산 APEC회담을 계기로 공식 서명
2006년 10월	▪ 중-칠레 FTA 발효
2008년 4월	▪ 서비스 협정 공식 서명
2009년 2월	▪ 투자협상 개시(2010년 2월 제6차 투자협상 개최)
2010년 8월	▪ 서비스협정 발효

## 2) FTA 협정 주요 내용

- 중국과 칠레의 FTA 협상은 아세안과는 달리 조기관세자유화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본격적인 FTA를 체결함
- 중국의 양허 관세철폐 일정에 따르면 즉시 철폐, 2년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로 구분됨
  - 민감품목인 쌀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임업부문인 종이 수입도 관세철폐 예외 품목으로 분류됨
- 칠레의 양허 관세철폐 일정은 즉시 철폐, 5년 철폐, 10년 철폐 등으로 구분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킴

[표 3-7] 중국-칠레 FTA 추진 현황(II)

구 분		'06.10.1	'07	'08	'09	'10	'11	'12	'13	'14	'15	
칠레	즉시 철폐	100%										
	5년 유예	20%	40%	60%	80%	100%						
	10년 유예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세양허 제외											
중국	즉시 철폐	100%										
	2년 유예	50%	100%									
	5년 유예	20%	40%	60%	80%	100%						
	10년 유예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관세양허 제외											

자료 : 중국·칠레 FTA 협정문 부속서 1 'Elimination of Import Customs Duties'

- 중국-칠레 FTA에서 민감품목 리스트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국 산업에 영향이 큰 품목들의 관세는 5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하도록 하고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들은 예외항목으로 제출함
  - 중국에서 칠레에 제시한 7,550개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표에서 관세인하 제외품목은 총 214개로 전체의 2.8%에 해당함
  - 중국의 민감품목은 쌀, 밀과 그 종자, 목재류, 종이류 그리고 일부 섬유 원료 등이며,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들에는 칠레산 연어, 포도주, 포도, 사과와 올리브유가 포함됨
  - 반대로 칠레에서 중국에 제시한 7,903개 품목에서 관세인하 제외 품목은 총 152개로 전체의 1.9%에 해당함
  - 칠레의 민감품목 들에는 중국산 섬유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10년에 걸

- 처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들에는 섬유, 화학 및 시멘트가 포함됨
- 수산물의 관세양허의 경우 중국과 칠레는 상반된 양상을 보임
    - 칠레측은 협정 발효 직후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 반면, 중국은 칠레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자국산 수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었음
    - 특히 경쟁력이 있는 칠레산 연어(신선냉장) 및 가공 수산물(예: 정어리, 고등어, 연어 등)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였음
    - 한편 칠레산 송어, 뱀장어의 치어 등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 철폐하였음

[표 3-8] 중국-칠레 FTA에서 중국의 수산물 관세 양허

구분	주요 품목	품목 수
즉시철폐	송어치어, 뱀장어치어, 냉동새우, 바닷가재(양식용)등	30개 (14.8%)
2년 유예	활뱀장어, 넙치(냉동), 청어(냉동), 바닷가재(냉동), 새우(신선냉장)등	14개 (6.9%)
5년 유예	연어(신냉), 다랑어류(신냉), 민대구(신냉), 다랑어류(냉동), 청어 조제가공 등	62개 (30.5%)
10년 유예	대서양연어(신냉), 기타다랑어(냉동), 정어리(냉동), 활민물게, 정어리(조제가공), 고등어(조제가공)등	97개 (47.8%)
합 계		203개 (100%)

주 : 1) 수산물은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집계하였으며, 03류와 16류는 전체를 수산물로 간주함  
 2) 03류와 16류를 제외한 나머지 6단위는 050790, 050800, 051191, 051199, 121221, 121229, 130231, 150410, 150420, 150430, 151610, 152190, 210410, 210690, 230120임

## 다. 중국-뉴질랜드

### 1) FTA 추진 현황

- 2004년 11월 칠레 산티에고에서 개최된 APEC 국가 정상 회의에서 뉴질랜드의 헬렌 클락 수상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FTA 협상개시를 발표하였음
  - 이 같은 발표는 양국의 FTA 체결이 양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공동연구 완료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다음 달인 12월에 1차

협상이 시작됨

- 이후 15차 협상까지 진행되다가 2007년 12월 베이징에서 협상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결론을 도출함
- 이후 양국은 2008년 4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뉴질랜드의 헬렌 클랑 수상은 베이징에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음
  - 중국-뉴질랜드 FTA는 중국이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포괄적 FTA로서의 의미를 가짐
  - 상품, 서비스 교역, 투자 등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환경협력협정(Environment Cooperation Agreement, ECA)과 노동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for Labour Cooperation)에도 합의하였으며, 이는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음

[표 3-9] 중국-뉴질랜드 FTA 추진 현황

일시	주요 내용
2004년 5월	▪ 양국간 공동연구 종료
2004년 11월	▪ FTA 공식 협상 논의 시작(APEC 정상회담)
2004년 12월	▪ 중국-뉴질랜드 제1차 FTA 협상 개시(이후 총 15차례 협상 개최)
2008년 1월	▪ 중국-뉴질랜드 FTA 협상 공식 타결
2008년 4월	▪ 중국-뉴질랜드 FTA 공식 서명
2008년 10월	▪ 중국-뉴질랜드 FTA 공식 발효

## 2) FTA 협정 주요 내용

- 양국 FTA의 관세양허 일정은 관세철폐 예외품목을 비롯해, 2008년 10월 1일 즉시철폐, 09년 1월 1일에 이어 2019년 1월 1일에 이르기까지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특징적인 점은 중국 측만 양허제외 품목을 설정하였고, 자국인 민간품목인 축산물과 양모제품에 대해 약 3년 정도 더 긴 유예기간을 확보하였음
  - 특히 양모의 경우에는 국가특정관세쿼터(country-specific tariff quota)를

- 적용하여 2009년에 2만 5천 톤의 모직물과 450톤의 모직물로 만든 상의에 대해서 2017년까지 연간 5%씩 증가시키기로 하였음
- 평균 관세가 낮고, 대부분 무관세인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관세즉시철폐 품목이 전체의 38.6%를 차지하였음
- 그러나 37%의 상품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어 관세 장벽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세즉시철폐품목은 1.6%로 비중이 낮음)
- 다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의류 및 신발류에 대해서 최대 관세 유예기간을 확보하여 자국 시장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 중국의 경우에는 2008년 10월 1일 뉴질랜드산 품목의 35.3%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관세 철폐를 단계적으로 이어가며 종이류, 가공원목상품, 밀, 쌀 등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두고 있음
- 그리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뉴질랜드산 양모 상품에 대해서는 TRQ를 적용하고 있어 중국은 뉴질랜드에 비해 자국 시장을 보호하려는 성격이 비교적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표 3-10] 뉴질랜드-중국 FTA 관세 스케줄

관세철폐시기	중국 측		뉴질랜드 측	
	비중	주요 품목	비중	주요 품목
즉시철폐 ('08년 10월 1일)	35.3%	어분, 합판, 고철(구리 및 알루미늄) 등	38.6%	이미 37%의 상품이 무관세 적용대상
'09. 1. 1	6.0%	현 양모 수출의 75%	-	-
'13. 1. 1	31.2%	분유, 카제인, 냉동어류, 냉동어류피레트, 사과, 와인	35.3%	가구, 타이어, 펜
'14. 1. 1	-	-	4.2%	섬유, 의류 일부 및 신발류, 카펫
'16. 1. 1	4.6%	오렌지, 오렌지주스, 키위 등	21.5%	의류 및 신발류
'17. 1. 1	2.5%	버터, 치즈 등	-	-
'19. 1. 1	15.2%	탈지분유파우더	-	-
양모의 국가특정 관세쿼터	8.1%	양모	-	-
관세철폐 예외품목	4.0%	종이류, 가공원목상품, 밀, 설탕, 쌀	-	-

자료 : 뉴질랜드의 대중국 FTA 홈페이지(www.chinafta.govt.nz)

- 양국의 수산물 관세 양허를 살펴보면 중국은 뉴질랜드에 비해 시장 개방이 다소 보수적임

- 즉, 중국은 HS 8단위 기준으로 총 200개(03류, 121220류와 16류의 합) 품목으로 분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즉시 철폐, 5년 유예(2012년)의 2 단계로 구분하여 관세를 삭감하기로 하였음
- 즉시 철폐품목은 14개 품목이며 167개 품목은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관세를 삭감하기로 하였음(나머지 19개 품목의 관세율은 0임).
- 즉시 철폐 품목은 기본적으로 2~5% 저율 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으로 건조 실고기, 냉동새우와 보리새우, 조제저장 정어리, 조제저장 다랑어, 조제저장 게, 조제저장 새우, 조제저장 랍스타, 조제저장 민물가재, 조제저장 갑각류, 조제저장 대합조개, 조제저장 연체동물 등 조제 가공품이 대부분임
- 한편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총 157개로(03류, 121220류와 16류의 합, 8단위 기준) 관세율 5% 적용 품목 7개, 6.5% 적용품목 13개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무관세 적용 대상임
  - 뉴질랜드 역시 유예기간을 발효 후 즉시 철폐, 5년 유예(2012년)의 단계로 구분하여 관세를 삭감하기로 하였음
  - 즉시철폐 품목은 관세율이 5%인 품목인 기타 연체동물, 조제저장 기타 정어리, 조제저장 다랑어, 조제저장 고등어, 조제저장 멸치 등임

[표 3-11] 중국-뉴질랜드 FTA 수산부문 관세 양허안

구 분	중국측 양허안		뉴질랜드측 양허안	
즉시 철폐 품목	14개 (7%)	조제저장 다랑어, 조제저장 새우, 조제저장 갑각류, 조제저장 게 등	7개 (4%)	산 것·신선·냉장 기타연체동물 것, 조제저장 고등어, 조제저장 기타청어, 조제저장 다랑어 등
5년 유예 품목	167개 (89%)	활 잉어, 신선냉장 고등어, 냉동 기타 넙치, 냉동 고등어, 건조 김, 조제저장 멸치 등	13개 (8%)	조미 닭새우류, 조미 새우와 보리새우,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등
예외품목	19개	관세율 0%	137개	관세율 0%

- 그리고 기본세율이 6.5%인 조미 닭새우류, 조미 랍스타, 조미 새우와 보

리새우, 조미 게, 기타 조제저장 어류(페이스트),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품, 조제저장 게(페이스트), 조제저장 새우와 보리새우, 조제저장 랍스타(페이스트) 등 13개 품목은 매년 1.3% 포인트씩 감소하여 2012년에 관세가 완전 철폐됨

## 라. 중국-페루

### 1) FTA 추진 현황

- 2007년 5월 중국과 페루는 베이징에서 양국간 FTA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개최함
  - 이후 2007년 9월 양국 정상인 후진타오 주석과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은 중국-페루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

[표 3-12] 중국-페루 FTA 추진 현황

일시	주요 내용
2007년 5월	▪ 양국간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1차 회의 개최
2007년 9월	▪ 양국 정상 FTA 협상 개시 합의
2008년 1월	▪ 중국-페루 제1차 FTA 협상 개시(이후 총 6차례 협상 개최)
2008년 11월	▪ 중국-페루 FTA 타결
2009년 4월	▪ 중국-페루 FTA 공식 서명
2010년 3월	▪ 중국-페루 FTA 공식 발효

- 중국과 페루는 2008년 1월부터 11개월간 6차례에 걸쳐 협상을 완료하고 2009년 4월 28일 양국 정부는 FTA 체결에 합의하고 2010년 3월 공식적으로 발효됨
  - 중국은 중남미 국가로는 처음으로 페루와 상품·서비스·투자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FTA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보임
  - 즉, 중국-페루의 전통적인 우호관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교역



확대 및 경제 협력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양국의 FTA는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협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체결된 것이라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 FTA 협정 주요 내용

- FTA 상품양허 구조는 크게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즉시철폐, 5년 철폐, 8년 철폐, 10년 철폐, 12년 철폐, 15년 철폐, 17년 철폐, 관세양허 제외이며 상품을 14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음
  - 그 중에서도 카테고리 E, K, L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문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세를 인하하게 됨
- FTA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페루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7,351개) 중 62.7%를 차지하는 4,610개에 대해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하고 951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1천여 개의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게 됨
  - 한편 중국에서 수입되는 중고품(옷, 신발, 자동차 및 그 외 부품, 타이어) 수입 불허권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

[표 3-13] 중국-페루 FTA의 품목별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카테고리 A	즉시 철폐	카테고리 H	15년 철폐
카테고리 B	5년 철폐	카테고리 I	17년 철폐
카테고리 C	10년 철폐	카테고리 J1	협정 발효 후 4년간 관세 유예, 5년째부터 관세 인하, 17년째 관세 철폐
카테고리 D	관세철폐 예외	카테고리 J2	협정 발효 후 8년간 관세 유예, 9년째부터 관세 인하, 17년째 관세 철폐
카테고리 E	*8)	카테고리 J3	페루에만 적용 협정발효 후 10년간 관세 유예, 11년째부터 관세 인하, 17년째 관세 철폐
카테고리 F	8년 철폐	카테고리 K	중국에만 적용 <sup>9)</sup> **
카테고리 G	12년 철폐	카테고리 L	***10)

자료 : 중국-페루 FTA 협정문 부속서 A

- 한편 중국은 페루의 수출 품목의 약 7,758개 가운데 61.2%에 해당하는 4,747개 품목에 대해 FTA 발효 즉시 수입관세를 철폐하며 908개 품목에 대해서는 5년, 1,604개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 관세를 즉시 철폐하는 품목에는 아스파라거스,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페루의 주 수출품목으로 관세 철폐 시에 페루의 대중국 수출 증대가 예상됨
  - 특히 페루산 포도에 대해서는 중국-칠레 FTA에서 적용되는 관세율 7.8%를 동등하게 적용함으로써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산물 관세 인하의 경우 페루는 수산물을 3개 카테고리 분류하였음
  - 이 중 약 160여개 품목 가운데 93%에 해당하는 150개 품목의 관세는 협정 발효 즉시 관세 철폐되었음
  - 여기에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다랑어류(신냉), 어란, 굴, 가리비, 수산물 가공식품 등 다양한 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음
  - 페루측의 가장 민감한 품목은 어즙으로 10년간 관세를 유예함으로써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표 3-14] 중·페루 FTA에서 페루의 수산물 관세 양허

구분	주요 품목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A)	다랑어류(신냉), 어란, 굴, 가리비, 수산물 가공식품 등	150(93.8)
5년 철폐(B)	관상용 활어, 관상용 활어의 치어, 뱀장어(활어), 잉어(활어), 참다랑어(활어), 남방참다랑어(활어), 어류의 필렛및어분 등	9(5.6)
10년 철폐(C)	어즙(1603-00-0000)	1(0.6)
수산물 총 품목수		160(100)

8) 카테고리 E의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Y1	Y2	Y3	Y4	Y5	Y6	Y7	..	Y16
카테고리 E	3%	3%	5%	7%	7%	5%	7%	..	7%

9) 카테고리 K의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Y1	Y2	Y3	Y4	Y5	Y6	Y7
카테고리 K	7.8%	6.5%	5.2%	3.9%	2.6%	1.3%	0%

10) 카테고리 L의 관세 인하 스케줄

구분	Y1	Y2	Y3	Y4	Y5	Y6	Y7
카테고리 L	1.2%	1.0%	0.8%	0.6%	0.4%	0.2%	0%

- 한편 중국은 페루에 비해 자국산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양허 일정을 세분화하고 있음
  - 즉시철폐, 5년 철폐, 7년 철폐, 8년 철폐, 10년 철폐, 관세철폐 예외 등 총 6개 카테고리로 구분하고 있음
  - 즉시관세 철폐되는 품목은 전체 수산물의 약 26%를 차지함
  - 이들 품목의 특징은 치어류 및 다랑어, 새우 등의 조제가공수산물로, 협정 발효 후 페루에서 이들 상품의 수입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자국 내 시장의 충격이 낮은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는 중국 자국내 이들 상품의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여 이들 상품을 값싸게 수입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임

[표 3-15] 중·페루 FTA에서 중국의 수산물 관세 양허

구분	주요 품목	품목수 (비중)
즉시철폐(A)	송어, 뱀장어, 잉어류의 치어(활어), 청어(냉동), 바닷가재(냉동), 새우(냉동), 다랑어의 조제가공, 게(조제가공), 새우(조제가공) 등	51(26.4)
5년 철폐(B)	연어(신냉), 넙치(신냉), 민대구(신냉), 다랑어류의 신냉 및 냉동제품, 홍합 등	44(22.8)
7년 철폐(L)	어분	1(0.5)
8년 철폐(F)	기타어류(냉동), 기타냉동필렛, 가리비(냉동,건조,염장), 정어리(조제가공) 등	8(4.1)
10년 철폐(C)	송어(신냉), 민대구(냉동), 멸치(염장), 해삼(냉동,건조,염장), 상어지느러미(조제가공) 등	76(39.4)
관세철폐 예외(D)	어란(냉동), 어란(건조, 염장, 훈제), 전복(냉동,건조,염장), 기타 백합, 민물장어(조제가공), 틸라피아(조제가공), 메기류(조제가공) 등	13(6.7)
수산물 총 품목 수		193 (100)

주 : 수산물은 편이상 03류, 16류, 23류의 합계임  
 자료 : 중국-페루 협정문 부속서

- 반면 중국 측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는 품목은 관세예외 품목군과 10년 관세 철폐 품목군으로 볼 수 있음
  - 우선 관세철폐 예외품목에는 어란(냉동), 어란(건조, 염장, 훈제), 전복(냉동, 건조, 염장), 기타 백합, 민물장어(조제가공), 틸라피아(조제가공), 메기류(조제가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그리고 10년 철폐 품목에는 송어(신선냉장), 민대구(냉동), 멸치(염장), 해삼

(냉동, 건조, 염장), 상어지느러미(조제가공)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멸치, 민대구 등의 품목은 페루의 높은 가격경쟁력 등으로 인해 중국 자국 내 수입될 경우 중국 수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품목임

## 마. 중국-대만

### 1) FTA 추진 현황

- 대만 국민당 마잉주 총통의 집권 이후, 양안 관계의 개선에 따라 양국은 2008년 6월, 10년 만에 양안회담을 재개한 바 있음
- 2009년 5월 대만 국민당 우보승 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하였고, ECFA 체결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를 합의함
- 2009년 말까지 4차례에 걸친 양안회담을 통해 경제 이슈에 관한 12개 협정을 체결하였고, 특히 2009년 12월 4차 양안 회담에서 ECFA 협상 개시에 합의함
- 이 후 3차례의 ECFA 실무협상을 거쳐 이번 5차 양안회의에서 이번 협정에 서명한 것임

### 2) FTA 협정 주요 내용

- 조기수확 프로그램(EHP)
  - 중국과 대만은 ECFA가 조기에 가시적인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 대해 EHP (Early Harvest Program)을 체결함
  -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품목 중 상품무역 539개 품목 중 수산물 03류는 6개 품목이 있음
  - 대만의 중국에 대한 조기자유화 상품무역 267개에 수산물 품목은 포함되지 않음

[표 3-16] 중·대만 ECFA 조기자

구분	중국의 對대만 자유화 품목	대만의 對중국 자유화 품목
상품 EHP 관세인하 품목	539개 품목: 농산품(18), 기계(107), 석유화학(88), 방직(136), 자동차부품(50), 기타(140)	267개 품목: 석유화학(42), 기계(69), 방직(22), 자동차부품(17), 기타(117)

자료 : ECFA협정문 및 부속서

- 중국의 2009년 수입관세를 기준으로 3단계로 분류하여, EHP 발효 후 2년 동안(2011년 발효 시부터 2013년 1월 1일까지) 3단계에 거쳐 관세를 철폐함
  - 조기자유화 수산물 품목은 모두 EHP 발효 2년 안에 철폐됨

[표 3-17] 중국의 대만에 대한 조기자유화 수산물 관세 삭감 일정

2009년 수입세율 (X%)	품목수	협정세율		
		EHP발효 1년	EHP 발효 2년	EHP 발효 3년
$0 \leq X \leq 5$	0	0		
$5 \leq X \leq 15$	0	5	0	
$X > 15$		10	5	0

자료 : ECFA협정문 및 부속서

## 제2절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피해 전망

### 1. 수협 수산경제연구원(2008)

#### 가. 분석 방법

- 수산물 가격 하락, 생산량 감소, 수산물간 대체에 따른 피해액을 구분하여 각각 추정한 다음 합산하였음
-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액 추정 흐름은 다음과 같음
  - 한·중 FTA 체결 → 대중수입관세율 하락 → 대중수입량 증가 → 수산물 총공급량(수입량 증가, 국내생산량 불변)증가 → 단기적 국내어업 총공급액 불변 가정 → 국내산 단가하락 견인
  - ‘단가하락액×국내생산량’을 수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액으로 추정
- 생산 감소액 추정 흐름은 다음과 같음
  - 한·중 FTA 체결 → 대중수입관세율 하락 → 대중수입량 증가 → 수산물 총공급량 증가 → 단가하락에 의한 국내생산 감소로 대중수입량의 국내 수산물 대체
  - ‘하락된 후 국내단가 × 수입산 대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생산 감소액으로 추정
- 수산물간 대체에 따른 피해액 추정 흐름은 다음과 같음
  - FTA 체결 → 관세철폐 → A어종과 대체관계에 있는 B어종의 가격하락 → B어종의 수입증가 → A어종의 소비 감소
  - ‘대체관계에 의한 소비감소량 × 국내단가’를 수산물간 대체에 따른 피해액으로 추정
  - 대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우 평균값 적용
-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수산금융 부문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피해가 파급된다고 분석하였음
  - 한·중 FTA 체결 → 수입수산물 증가 → 수산물 가격 하락 → 생산 감소·어업경영 악화 → 조합원의 채무이행 불능 혹은 연체 → 회원조합의 채무손실부담 → 회원조합을 설립·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의 손실 → 회원조합의 부실화 및 도산 초래

- 어업생산액 감소 → 어가경영체의 어업수익 및 어업이익의 감소(어업비용 불변 가정) → 어업이익률 감소 → 어업이익률의 감소비율 만큼 영어자금의 연체율 증가

## 나. 피해 추정 결과

- 수산 부문의 전체 피해액 : 7,532억~1조 1,379억 원
  -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액 : 2,943~4,432억 원
  - 생산 감소액 : 3,005~5,363억 원
  - 수산물간 대체에 따른 피해액 : 1,584억 원
- 수산 금융 부문의 영향: 영어자금 연체율 4.7~7.0%p 상승
  - 연근해어업의 경우 어가당 7,198~11,808천 원의 어업소득 감소, 어업이익 16.8~27.9%p 하락, 이에 따라 영어자금 연체율 1.6~2.6%p 상승
  - 양식어업의 경우 어가당 10,527~13,578천 원의 어업소득 감소, 어업이익 59.6~86.5%p 하락, 이에 따라 영어자금 연체율 7.0~10.2%p 상승

[표 3-18] 수협 수산경제연구원(2008)의 영향 분석 결과

구분	영향	비고
수산 부문 전체 피해	7,532억~1조 1,379억 원	가격 하락 : 2,943~4,432억 원 생산 감소 : 3,005~5,363억 원 수산물간 대체 : 1,584억 원
수산 금융 부문 영향	영어자금 연체율 4.7~7.0%p 상승	연근해어업 : 1.6~2.6%p 상승 양식어업 : 7.0~10.2%p 상승

자료 : 김현용·송경은,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2008.

## 2. 한·중 FTA 수산부문 피해 전망

- 한·중 FTA의 수산부문 피해를 추정 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연구기관, 시점,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용 자료가 부족하여 모형에서 추정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며 이는 현실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분석하게 되는데 연구기관, 시기, 방법에 따

라 다를 수 있음

-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기 체결된 다른 FTA에 비해 한·중 FTA가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임
- 따라서 한·중 FTA에 대한 대응은 다른 FTA에 비해 더욱 준비가 철저해야 하며 협상 대응 및 국내 대책 수립을 위한 영향 평가도 더욱 엄밀한 방법으로 재분석될 필요가 있음



Chapter

4

#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

제1절 FTA 체결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검토·평가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FTA  
대응 지원사례

#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수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

## 제1절 FTA 체결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검토·평가

### 1. 수산부문의 기존 FTA 체결 내용

#### 가. 한·칠레 FTA

- 2004년 4월 1일 발효된 한·칠레 FTA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10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 협정 당시 전체 406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277개, 5년 양허가 88개, 10년 양허가 41개이고 양허 제외 품목은 없음

[표 4-1] 한·칠레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277	활어(열대어, 송어, 실뱀장어, 잉어 등), 신선냉장(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등), 오징어, 문어, 생선소시지, 생선묵 등
5년	88	뱀장어, 홍어, 삼치, 복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이빨고기, 명태피레트, 명태연육, 기타어류 피레트, 멸치, 가리비, 굴, 문어, 바지락, 기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10년	41	뱀장어, 홍어, 삼치, 복어, 정어리, 고등어, 명태, 갈치, 전갱이, 이빨고기, 명태피레트, 명태연육, 기타어류 피레트, 멸치, 가리비, 굴, 문어, 바지락, 기타 해조류, 수산가공품 등
계	406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나. 한·싱가포르 FTA

-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음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10년까지의 이행 기

간을 적용함

- 협정 당시 전체 407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56개, 5년 양허가 136개, 10년 양허가 37개임
- 열대어(관상용) 등 양허 제외 품목이 178개로 수산부문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체결됨

[표 4-2] 한·싱가포르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56	갯장어(활어), 뱀장어(신선·냉장), 가리비(염장·염수장), 게(건조) 등
5년	136	연어(신선·냉장), 다랑어(냉장), 어간, 어란, 청어(염장·염수장), 대구(염장·염수장), 게살(냉동), 굴(염장·건조), 닭새우(신선·냉장), 김 등
10년	37	붕장어(피레트, 신선·냉장), 가자미(피레트, 신선·냉장) 연어(신선·냉장), 서대(신선·냉장) 등
양허 제외	178	송어(활어), 열대어(관상용), 실장어, 뱀장어, 넙치(신선·냉장), 다랑어(신선·냉장), 갈치(신선·냉장), 홍합(조제) 등
계	407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다. 한·EFTA FTA

- 한·EFTA FTA(2006년 9월 1일 발효)에서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10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표 4-3] 한·EFTA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132	연어(활어), 송어(활어) 등
3년	10	황새치(피레트, 냉동), 어란, 새우
5년	105	다랑어(신선·냉장), 연어(냉동), 새우살(냉동), 굴 등
7년	10	명태(신선·냉장), 전갱이(염장·염수장) 등
10년	123	신냉(황다랑어, 갈치, 돔 등), 쥐치포, 조미오징어 등
TRQ	1	고등어(냉동)
7년내 재검토	34	열대어(관상용), 실뱀장어, 비단잉어, 오징어(냉동) 등
기타	3	새우, 자라
계	418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협정 당시 전체 418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132개, 3년 양허가 10개, 5년 양허가 105개, 7년 양허가 10개, 10년 양허가 123개임
  - 고등어(냉동)의 경우 TRQ가 적용되었고 34개 품목은 7년 내에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 라. 한·ASEAN FTA

- 한·ASEAN FTA는 2007년 6월 1일 발효되었음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10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 협정 당시 전체 406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81개, 2008년 철폐가 189개, 2010년 철폐가 14개임
  - 2012년까지 20%,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인하하는 품목이 52개임

[표 4-4] 한·ASEAN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철폐	81	갯지렁이, 비단잉어, 송어(활어) 등
2008년 철폐	189	송어(신선·냉장), 연어(신선·냉장), 정어리(신선·냉장) 등
2010년 철폐	14	기타어류(피레트), 연육(냉동), 기타어류(훈제) 등
2012년까지 20%, 2016년까지 0~5%로 인하	52	실장어(활어), 봉장어(활어), 가자미(신선·냉장), 대구(신선·냉장), 대구(냉동) 등
관세 상한(50%)	1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
20% 감축	26	열대어(관상용), 고등어(냉동), 새우와 보리새우(건조) 등
TRQ	4	새우살, 새우와 보리새우(냉장·냉동), 갑오징어(냉동) 등
양허 제외	39	돔(활어), 능성어(활어), 복어(활어), 갈치(신선·냉장), 삼치(신선·냉장), 명태(냉동), 갈치(냉동) 등
계	406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관세상한 50% 적용 품목으로 새우와 보리새우(염장·염수장)이 있고 20% 감축 품목 26개, TRQ 품목으로 새우살, 새우와 보리새우(냉장·냉동 등) 4개 품목이 있음
- 돔(활어) 등 39개 품목은 양허 제외되었음

## 마. 한·인도 CEPA

- 한·인도 CEPA(2010년 1월 1일 발효)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8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함
- 협정 당시 전체 407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50개, 5년 양허가 95개, 8년 양허가 130개임
  - 8년내 50% 감축 품목이 52개임
  - 갈치(냉동) 등 80개 품목은 양허 제외되어 수산부문의 경우 낮은 수준으로 체결됨

[표 4-5] 한·인도 CEP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50	잉어(활어), 홍살치(냉동) 등
5년	95	간장, 어란, 곱상어와 기타상어
8년	130	비단잉어, 실뱀장어(활어),
8년대 50% 감축	52	붕장어(신선·냉장) 복어(신선·냉장), 먹장어(냉동) 등
양허 제외	80	갈치(냉동), 꽃게(냉동), 새우(냉동) 등
계	407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바. 한·EU FTA

- 한·EU FTA(2011년 7월 1일 발효)의 경우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10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표 4-6] 한·EU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50	종패, 패각
3년	142	이빨고기(냉동), 캐비아, 연체류(밀폐용기)
5년	111	골뱅이, 다시마
7년	19	멸치(조제)
10년	118	가자미(냉동), 민대구(냉동), 홍어(냉동), 볼락(냉동): 비선형
12년(비선형)	2	기타넙치(냉동):TRQ(800톤), 고등어(냉동)
현행 유지	3	명태(냉동), 민어(냉동), 오징어(냉동)
계	445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협정 당시 전체 445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50개, 3년 양허가 142개, 5년 양허가 111개, 7년 양허가 19개, 10년 양허가 118개임
  - 기타넙치(냉동)은 TRQ가 적용되고 고등어(냉동)과 함께 12년 비선형 관세가 철폐됨
  - 명태(냉동) 등 3개 품목은 양허 제외됨

## 사. 한·페루 FTA

- 한·페루 FTA(2011년 8월 1일 발효)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7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 협정 당시 전체 445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43개, 3년 양허가 120개, 5년 양허가 141개, 7년 양허가 67개, 10년 양허가 72개임
  - 명태(냉동), 민어(냉동)은 양허 제외됨

[표 4-7] 한·페루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43	지렁이
3년	120	어란
5년	141	해삼(조제), 어분, 캐비아대용물: 비선형
7년	67	붕장어(냉동필레트)
10년	72	오징어(냉동), 오징어(건조), 조미오징어, 연체동물기타(자숙오징어 포함), 가리비(냉동)
현행 유지	2	명태(냉동), 민어(냉동)
계	445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아. 한·미 FTA

- 한·미 FTA(2012년 3월 15일 발효)는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 유지하거나 15년 이상의 장기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고 민감도 낮은 품목은 즉시 철폐하거나 7년까지의 이행 기간을 적용함
- 협정 당시 전체 445개 품목 중에서 즉시 철폐가 58개, 3년 양허가 165개, 5년 양허가 31개, 7년 양허가 1개, 10년 양허가 148개임

- 민어(냉동), 기타넙치(냉동)은 TRQ이면서 고등어(냉동)과 함께 12년 양허임
- 명태(냉동)은 TRQ이면서 15년 양허임

[표 4-8] 한·미 FTA 수산물 양허 내용

양허 유형	HSK 품목 수	주요 품목
즉시	58	굴(냉동), 검정대구(냉동)
3년	165	명태어육(냉동), 먹장어(산 것), 해삼, 왕게(냉동)
5년	31	명란(냉동), 대구(냉동), 바다가재(냉동)
7년	1	기타우뚝가사리
10년	148	먹장어(냉동), 홍어(냉동), 임연수어(냉동), 민대구(냉동) 아귀(냉동), 가오리(냉동), 볼락(냉동), 오징어(냉동), 콩치(냉동), 꽃게
12년	3	민어(냉동): TRQ, 기타넙치(냉동): TRQ, 고등어(냉동)
15년	1	명태(냉동): TRQ
계	407	

주 : 협정 당시 품목 분류 기준임

## 2. 기체결 FTA 대응, 국내 수산업의 지원대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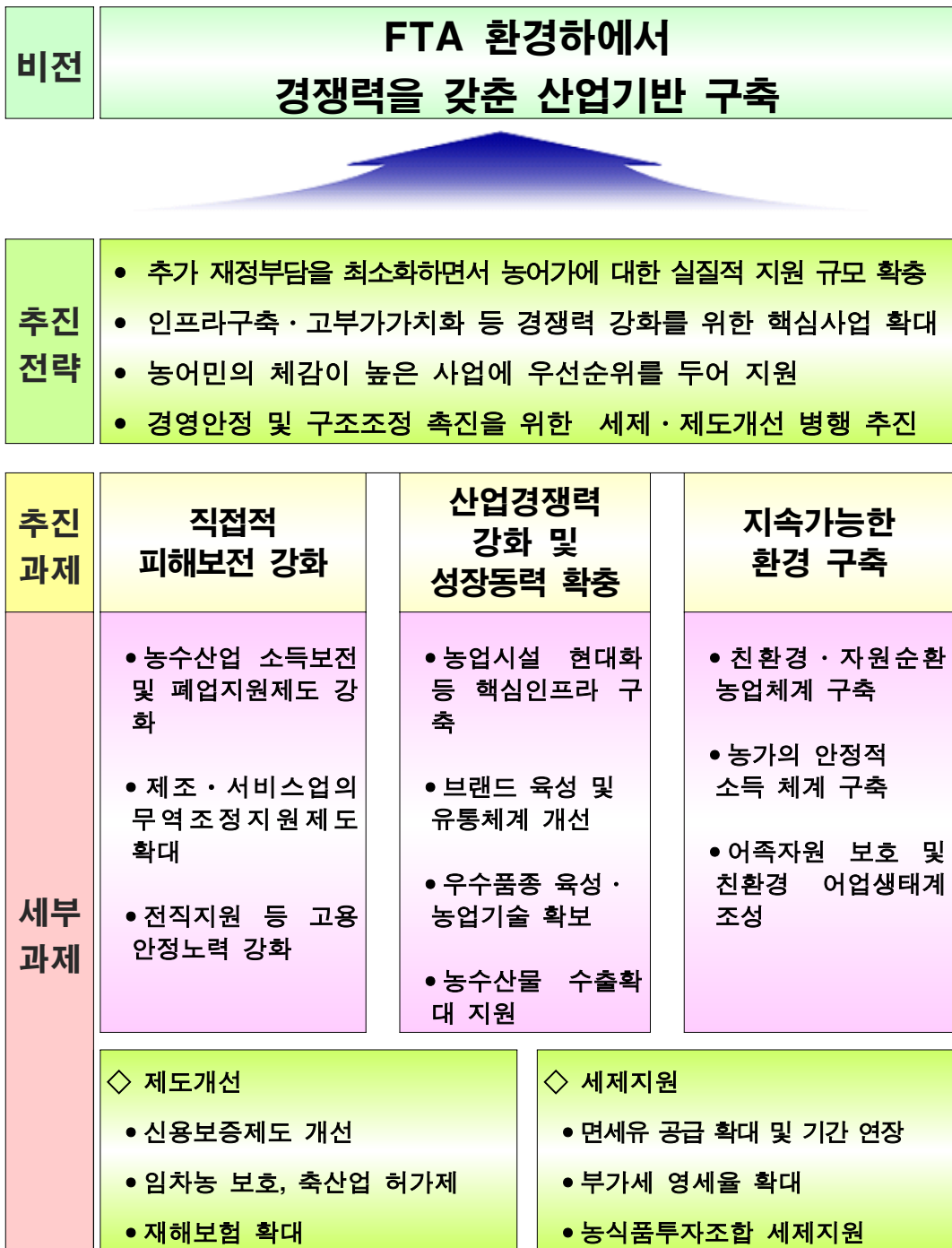
### 가. 지원대책의 추진 경과

-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피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07년 11월 향후 10년 동안 농어업부문에 21조 1천억 원을 지원하는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함
  - 농업부문이 20조 4천억 원, 수산부문이 7천억 원임
- 2011년 2월 한·미 FTA 추가 협상 및 2011년 7월 한·EU FTA 발효에 따라 기존 대책을 보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함
- 2011년 10월 31일 국회 합의사항에 따라 2012년 1월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함
- 이 과정에서 수산업의 경우 어업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 위생관리·품질제고를 위한 산지 거점유통센터 건립, 한·페루 FTA 대책으로 오징어 가공시설 건립 등의 신규 지원이 요청됨



## 나. 추진 전략 및 추진 대책

### 1) FTA 종합대책의 기본 구조



## 2) 피해지원 제도 확대

-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 기존대책의 발동 요건을 완화하고 보전 비율을 상향 조정함
  - 발동요건 : 기준가격 대비 80% 하락 → 85% 하락
  - 보전비율 : 기준가격과 차액의 80% → 90%
  - 대상품목 :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 사후지정(모든 품목)
  - 10년간(2021.6.30.까지) 시행하여 어가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

[표 4-9] 직접적 피해보전제도 개편 내용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발동기준	가격이 80% 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10.12.31일 종료	7년 (2017.12.31일까지)	10년 (2021.6.30일까지)

- 폐업지원제도 개편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 촉진
  -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은 어가가 폐업할 경우 3개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함
  - 어선·어구를 행정기관에 인도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하며, 이 경우 3개년 수익금 외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함께 지급함
  - 대상품목을 사전에 지정하던 기존 제도와 달리 모든 품목에 대해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표 4-10] 폐업지원제도 개편 내용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 어선·어구의 잔존가치 추가 지급	
대상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08.12.31일 종료	5년(2016.6.30일까지)	

### 3) 산업경쟁력 강화

- 핵심 인프라 구축
  - 양식시설현대화 사업 등 산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
  -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 없이 용자만 지원받을 경우 용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 강화
- 수산기술 개발
  - 우수 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수산종묘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생명공학을 활용한 수산 분야 기술의 사업화연구(R&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확대
  -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 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4)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 어촌의 안정적 소득기반 마련
  - 어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고,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
  - 수산직불제를 도입하여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직불금(가구당 49만원) 지급
-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인 수산자원 보호, 어장환경개선 유도, 참여공동체수 증가를 반영하여 사업규모 확대
  - 친환경 부표 및 생분해성어구 지원을 확대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교체, 친환경어구(통발, 자망) 사용 장려<sup>11)</sup>

## 5)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 개별 경영체에 대한 보조사업을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용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확대
  - 한도 10억 원 → 30억 원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 지속 확대
  - 양식수산업 : ('11) 1개품목 시행, 4개품목 시범사업 → ('13) 10개 품목
  - (대상품목) 넙치(시행), 전복, 조피볼락, 굴, 김
- 2012.6.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15.12.31일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한·EU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동 제도는 기존 일몰제도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후 10년간 유지
- 사료, 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 어업 여건 변화에 따라 활용도가 높아진 기자재 2종을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에 추가
  - 젓갈용 숙성용기, 수산물 건조용 건조발

## 다. 2012년 수산부문 대책 사업

### 1) 사업 내용

- 2012년도 수산부문 FTA 대책사업 예산은 1,2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직접 피해보전 대책이 8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1,156억 원임
  - 종자산업 육성, 어업재해보험 등은 농업 대책에 포함됨

11) 친환경 부표 구입 지원기간 연장('12→'15년), 지원 부표수 확대(858→1,680만 개), 친환경 어구 사용시 기존 어구와의 차액을 지급(국고 70%, 지방비 30%)

[표 4-11] 2012년 수산부문 FTA 대책 사업

구분		사업명	소관	'12년 예산(억 원)
합계				1,236
직접피해보전 (6%)		피해보전직불	어업교섭	30
		폐업지원	어업교섭	50
품목별 경쟁력 강화 (94%)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83%)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어업정책	50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수산개발	18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자원환경	20
		연근해어업 핵심전략연구	어업정책	5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양식산업	85
		해양폐기물 정화	해양보전	124
		자율관리어업 육성	자원환경	131
		수산자원사업단 출연	자원환경	587
	핵심인프라 구축 (11%)	원양어업 관리회사	원양정책	30
		원양어선설비현대화	원양정책	10
		활어운반선 건조	수출진흥	1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수산정책	72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수산정책	3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양식시설 현대화)	양식산업	20

## 2) 사업의 특징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이 전체 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이 83%, 핵심인프라 구축이 11%로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 특히 자원관리, 해양환경 개선 등 수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인 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
  - 수산자원사업단 출연, 해양폐기물 정화,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등이 이에 해당함
  - 어촌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도 신규로 도입되었음
  - 핵심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원양어업 관리회사, 양식시설 현대화, 원양어선설비현대화 등이 있음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공공사업(연구·개발 포함), 비용 보조, 경영효

율화 지원으로 구분할 때 공공사업이 739억 원으로 비중이 가장 크고, 비용보조 184억 원, 경영효율화 지원이 102억 원으로 비용보조 성격의 지원이 경영효율화 지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재정 사업 이외에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대책을 포함할 경우 면세유류 공급, 부가세 영세율 및 사후 환급 등 비용보조 성격의 대책이 많음

[표 4-12] 2012년 수산부문 FTA 대책 중 경쟁력 강화 대책

구분	사업	예산
공공사업	수산자원사업단 출연, 자율관리어업 육성, 해양폐기물 정화, 토속어류산업화센터, 연근해어업 핵심전략연구, 수산물 연구가공거점단지	870억 원
비용보조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생분해성어구시험사업, 원양어선 설비현대화, 활어운반선 건조, 양식시설현대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184억 원
경영효율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원양어업 관리회사	102억 원

- 이처럼 기존 FTA 대책에서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 비중이 높은 것은 한·미 FTA, 한·EU FTA의 경우 수산부문의 예상 피해가 크지 않고 수산부문 전반에 포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FT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자원관리, 해양환경 관리 등과 같은 대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 강화 대책은 비용보조 성격이 강하여 경영체 체질을 강화하는 것에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 3) 시사점

- 한·중 FTA의 경우 기 체결 FTA보다 영향이 크고 직접적이기 때문에 FTA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지는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 조성보다는 개별 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인 비용보조 대책보다는 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체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관리회사, 거점유통단지 등 어업생산·가공·유통을 효율적으로

로 연계하는 대책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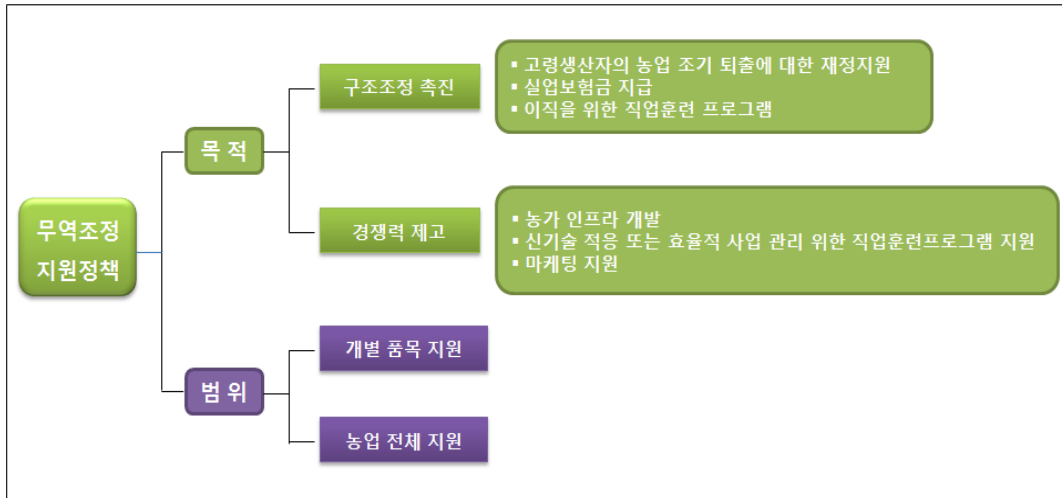
- FTA와 국내 대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사전 영향 평가를 더욱 엄밀하게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대책과 국내 대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즉, 영향 평가에 기초하여 민감품목의 관세 양허를 유예하거나 제외하도록 노력하고 협상 동향을 고려하여 국내 대책을 마련함

## 제2절 해외 주요 국가의 수산분야 FTA 대응 지원사례

### 1. 개요

- 특정산업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이 높을 경우, 이 산업에 속한 생산자들은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배제되는데,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들 생산자들이 겪게 되는 경제적 피해가 큼
- 즉, FTA를 비롯한 자유무역 정책의 추진은 경쟁 심화에 따라 자원의 효율적 재배분으로 효율성이 제고되고, 소비자후생이 증대되는 장점이 있지만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은 무역자유화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생산 및 수입의 감소, 실직을 경험하게 됨
- 무역조정지원은 이와 같이 비효율적인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 OECD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 정책은 목적에 따라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첫째, 생산자들의 퇴출(조기 퇴출 포함) 및 타 업종으로의 이직을 위한 것으로 퇴출자에 대한 재정 지원, 실업보험금 지급 및 이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사업이 여기에 포함됨. 이 같은 사업은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인 타산업으로의 재배치를 통한 해당 분야의 구조조정을 촉진함
  - 둘째, 해당 산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생산자의 경쟁력 또는 생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인적, 물질적, 사회적 자본의 품질을 제고시키기 위함임
  - 예를 들어 농업의 경우, 개별 농가 지원(예: 일시적 보조금 지급 또는 소득보전 용자 지원)과 농업의 인프라 개선(예: 농가 시설 개선을 위한 농업 자금 지원, 신기술 적용 또는 사업관리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의 인력 지원), 마케팅 기구의 신설·지원 등이 해당됨
- 또한 무역조정지원정책의 적용 범위에 따라 특정 품목에 한정된 정책과 특정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그림 4-1] OECD 주요 국가의 농업분야 무역조정정책

- 이하 무역조정지원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미국, EU, 호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 2. 미국

### 가. FTA 추진 동향 및 특징

- 집권 초기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은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와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 문제가 맞물려 다소 보호주의 성향을 띠었으나 최근 TPP 확대 협상을 주도하고, 콜롬비아, 파나마 등 미발효된 FTA에 대한 비준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음<sup>12)</sup>
- TPP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아시아태평양 FTA로 불리며 기존 4개국에서 9개국으로 확대협상이 진행중임

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18개 경제권(64개국)을 중심으로)”, 2011.

[표 4-13] 미국의 FTA 추진 현황

구분	국가/협정문	추진경과	비고
발효 (13건)	이스라엘 FTA	'85년 8월 발효	
	NAFTA	'94년 1월 발효	북미자유무역지역(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
	요르단	'01년 12월 발효	
	싱가포르 FTA	'04년 1월 발효	
	칠레 FTA	'04년 1월 발효	
	호주 FTA	CALF '05년 1월 발효	
	모로코 FTA	'06년 1월 발효	
	바레인 FTA	'06년 8월 발효	
	CAFTA-DR	'06년 3월 발효	CAFTA-DR :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 공화국 등 7개국
	오만 FTA	'09년 1월 발효	
	페루 FTA	'09년 2월 발효	
	한국 FTA	'12년 3월 발효	
	콜롬비아 FTA	'12년 4월 발효	
서명 및 타결	파나마 FTA	'07.6 공식서명	
협상중	SACU FTA	'03년 6월 협상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남아프리카관세동맹: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스와질랜드 등 5개국
	CAN FTA	'04년 5월 협상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안데안 공동체(CAN : Andean Community)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4개국
	에콰도르 FTA	'03년 5월 협상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태국 FTA	'04년 6월 협상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FTAA	'94년 12월 협상개시 이후 현재 협상 중단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 쿠바를 제외한 미주 34개국
	UAE FTA		
	말레이시아 FTA		
TPP 확대	'10년 3 협상개시 '11년 9월 제8차 협상	기존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에 호주, 미국,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합류하는 협상으로 총 9개국임	
추진검토	ASEAN,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대만, 파키스탄, 그루지아 등		

- 미국의 TPP 확대 협상 주도는 ‘수출시장 확보’, ‘아시아에서의 중국 견제 전략’,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의 발판 마련’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오바마 행정부의 ‘10년 3월 국가 수출구성 이후 수출 확대 방향의 일환

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FTA인 TPP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

- 미국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높아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아시아 지역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의 TPP 참가를 희망하며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나. 농어민을 위한 무역조정지원제도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Trade Adjustment Assistance, 이하 TAA)는 무역 자유화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을 근거로 창설된 무역조정지원제도(TAA)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해 왔으나 2002년부터 농어민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음<sup>13)</sup>
  - 2009년에 TA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무역 및 세계화 조정지원법(Trade and Globalization Adjustment Assistance Act of 2009, 이하 2009 TAA)」에 의거해 지원 범위 및 규모가 대폭 확대·적용되어 왔으며, 2011년 2월 12일에 효력이 만료되었음
  - 2009의 TAA 연장 여부와 관련해 미 의회 내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입장차이가 컸으나 2011년 9월 TAA 연장안이 가결 처리됨으로써 농어민에 대한 TAA 지원은 지속됨
- 미국내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입장차이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TAA 연장안이 가결처리된 것은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3개의 무역협정, 즉,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과의 FTA 시행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FTA 반대 세력을 포용하기 위해 방안으로써 TAA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임
- TAA는 크게 지원 대상을 기업, 근로자, 농어민 등 경제주체별로 나누어 세 개의 TAA로 각 각 운영하고 있음
- 기업 TAA는 FTA 등 무역 자유화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매출, 생산, 고용 등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 경영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또는 컨설팅을 제공함

13) 2002년 106차 의회에서 켄트 콘라드(Kent Conrad)와 찰스 그래스레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근거함

- 미 상무부 경제발전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주관함
- 근로자 TAA는 무역자유화로 인해 실업을 당한 근로자가 신속히 새로운 직장을 얻도록 직업 훈련 및 구직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업기간동안 소득의 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제공함
-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이 담당함

[표 4-14] 미국의 TAA

구분	기업 TAA	근로자 TAA	농어민 TAA
시행시기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및 2002년 개정	좌동	「2002년 무역법」
목적	FTA 등 무역자유화 추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의 지원		
	무역자유화로 매출, 생산, 고용이 감소한 기업 지원	무역자유화로 수입증가와 생산기지이전으로 실직한 근로자 지원	수입증가로 인해 생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소득이 감소한 농어민 지원
담당부처	상무부 경제발전청(Economic Development Administration)	노동부 고용훈련청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농무부 해외농업국(Foreign Agriculture Service)
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농어민
지원형태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의 비용을 기업과 정부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동부담	직업훈련, 소득지원, 구직 및 이사비용, 건강보험료 세금공제	새로운 상품 및 시장, 대안 사업 개발 등을 위한 기술지원, 소득지원, 직업훈련

자료 : 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농어민 TAA는 2002년 무역법(Trade Act)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2009년 미국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sup>14)</sup> 과 옴니버스 무역법(Omnibus Trade Act of 2010)에 의해 연장되었음
- 이러한 근거법에 의거해 2010년 농어민 TAA 이행 지원예산으로 9,000만 달러가 책정되었음
- 2011년 미국경기회복 및 재투자법은 농어민 TAA 예산으로 2,250만 달러를 추가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가장 최근의 옴니버스 무역법에 의거해 TAA 프로그램에 대해 1,04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였음<sup>15)</sup>

14) 미국 경기 회복 및 재투자법은 대공황이후 전례없는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2월 17일에 서명함. 이 법은 미국 인프라 현대화, 에너지 독립 강화, 교육 기회 확대, 의료보험 개선, 세금 경감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이에 따라 TAA 지원 농어업 부문 총예산은 약 3,300만 달러로 추정해 볼 수 있음
- 이는 농어민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FAS)의 2011년 전체 예산의 약 1.3%를 차지함

[표 4-15] TAA 농어업 부문 예산(2009~2011년)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TAA 예산(a)	25	90	33
해외농업국 전체예산(b)	3,198	2,749	2,588
TAA 비중(a/b)	0.8%	3.3%	1.3%

주 : 미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1일에서 익년 9월30일까지임. 따라서 2012년 9월까지의 2011년 예산을 적용받음  
 자료 : 미국 농무성,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각 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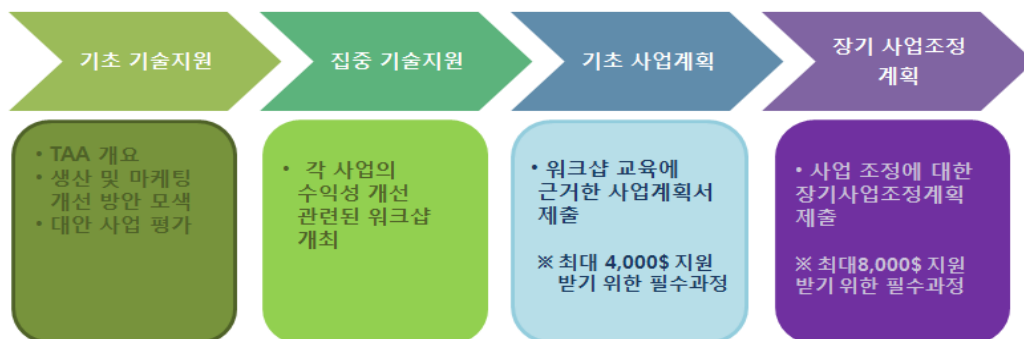
<b>지원대상</b>	수입 농수산물로 피해를 입은 농민, 축산인, 어업인과 양식업자
<b>지원기준</b>	수입으로 인해 해당 품목의 평균가격, 생산량, 생산액 또는 생산자 수취가격이 이전 3년 평균 대비 15% 이상 하락
<b>지원형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지원 : 기초기술지원, 집중기술지원</li> <li>▪ 현금지원 : 인당 최대 12,000 달러 지급</li> </ul>
<b>지원대상품목</b>	메기, 바닷가재, 새우, 아스파라가스, 블루베리

[그림 4-2] 미국 농어업 TAA의 개요

-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평균가격, 생산량, 생산액, 또는 생산자 현금수취 가격이 전 3년 평균 대비 15% 이상 하락하였을 경우 TAA 적격 대상자로 결정됨
  - 농어민 TAA의 특징은 피해 개별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피해 품목별 지원이라는 점임. 즉, 개별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아닌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피해가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전국 모든 농어민 또는 특정 지역내 농어민 전체가 지원대상임

15)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FY 2012.

- TAA 지원 대상은 수입 농수산물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농민, 축산인 그리고 어업인과 양식업자임
- 지원 형태는 기술지원과 현금지원으로 구분됨
- 기술지원은 다시 기초 기술지원과 집중 기술지원으로 구분됨
  - 기초 기술지원은 TAA에 대한 개요 및 생산, 마케팅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됨
  - 집중 기술지원은 각 품목별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워크샵 강의를 제공되는데, 이 같은 기술 지원은 무상으로 이뤄지며, 그 외 기술교육과 관련된 교통비가 지원됨
- 이 같은 기초와 집중적 기술지원이 이뤄진 후 사업조정계획 개발과 관련해 개인별 최대 12,0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이뤄짐
  - 그러나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기초 기술지원 커리큘럼과 집중적인 기술지원 커리큘럼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후 사업계획과 장기 사업조정계획을 제출한 이후에 각각 4,000달러와 8,0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현금 지원 대상자는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이 250만 달러 미만이며, 당해 연도 소득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기술지원을 수료하였고, 해당 생산물을 실제 생산하였음을 증빙해야 함(Evans, 2005)
  - 이렇게 4단계에 걸쳐 이뤄지는 기술 지원은 TAA 지원 승인이 이뤄진 이후 3년 동안 이뤄지는 특징이 있음



자료 :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홈페이지([www.taaforfarmers.org](http://www.taaforfarmers.org)) 참조

[그림 4-3]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절차

- 이처럼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핵심은 기술 지원이기 때문에 장래 수입 경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과 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2004~2006년 농어업분야 TAA 시행 초기에 지원된 품목은 9개 품목으로 아보카도르, 리치(lychees), 메기, 콘코드 포도, 신선 감자, 올리브, 연어, 새우, 블루베리<sup>16)</sup>였으나 현재는(2010~2013) 메기, 새우, 바닷가재, 아스파라가스, 블루베리 등 5개 품목임

[표 4-16] 미국 농수산물 무역조정지원 대상 품목

지원품목	대상지역	TAA 청원년도	TAA 지원 만료기간
메기	미국 전역	2010.6	2013.6
바닷가재	코네티컷, 메인, 메사추세츠,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2010.9	2016.9
새우	앨라배마, 알래스카, 플로리다, 조지아, 루지애나, 미시시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2010.9	2013.9
아스파라가스		2010.6	2013.6
블루베리	메인	2010.9	2013.9

자료 :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홈페이지 참조

- TAA 지원 대상 가운데 메기와 새우는 미국의 주요 양식 생산 어종으로 2008년 생산량(액)은 각각 23만 톤(3억 9천만 달러)과 1,900톤(852만 달러)임
  - 미국 전역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메기는 전체 양식 생산량의 약 5%를 차지하지만, 생산금액은 전체의 33%를 차지할 만큼 가격이 높은 어종이라고 할 수 있음
- 바닷가재는 해면어획 어종으로 2008년 생산량이 9,821만 톤(약 3억 달러)임<sup>17)</sup>
- 이들 어종의 미국내 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메기는 주로 신선냉장과 필렛 그리고 스테이크용으로 수입되는데, 2010년 수입액이 2억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함
  - 즉, 전체 생산량의 약 26%, 생산액의 54%를 수입함

16)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rengthen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January, 2008.

17) US Department of Commerce, *Fisheries Economics of the United States 2009, 2011.*

- 바닷가재와 새우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30%, 14% 증가함
- 또한 미국의 2010년 전체 수산물 수입과 비교하면 새우가 전체 수입 물량의 23%, 금액의 29%를 차지할 만큼 가장 수입 비중이 컸고, 바닷가재, 메기 순으로 높은 수입 비중을 차지함
- 자국민의 수산물 소비를 위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만큼 치열한 수입경쟁에서 생산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적극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TAA 제도가 활용되고 있는 셈임

[표 4-17] 미국 양식생산어종(2008년)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생산량	생산액
합계	351,007	1,194,659
어류		
미끼용어류	-	38,018
메기	233,564	390,052
연어	16,714	45,128
줄무늬농어	5,434	30,430
틸라피아	9,072	34,383
송어	16,213	49,774
패류		
대합	5,180	88,088
가재	53,285	127,351
홍합	387	4,474
굴	9,226	79,666
새우	1,932	8,520
기타		298,775

주 : 2008년이 가장 최근의 양식생산통계임  
 자료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표 4-18] TAA 대상 어종 수입추이

단위 : 톤, 천 달러

구분	2009년		2010년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수입량	수입액
메기	58,685	196,811	62,386	201,011	6.3%	2.1%
바닷가재	44,989	785,943	52,370	1,028,663	16.4%	30.9%
새우	547,039	3,746,137	557,055	4,272,211	1.8%	14.0%
총수입	2,341,242	13,124,171	2,474,946	14,807,678	5.7%	12.8%

자료 : 미 상무부, Imports and exports of fishery products annual summary, 2010 재구성함



- 수입이 가장 큰 품으로 늘어난 바닷가재의 집중기술지원을 살펴보면 마케팅, 재무, 품질제고, 에너지 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워크샵이 개최되었음
  - 총 29시간의 워크샵 가운데 TAA 지원 대상자는 최소 12시간의 워크샵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다음 단계의 사업계획 수립시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전체 워크샵은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업으로 인해 워크샵 참석이 어려운 생산자들을 배려하고 있음

[표 4-19] 어업인 TAA 집중기술지원 내용

구분	워크숍 내용	시간
바닷가재	직접 마케팅	3
	성공적 양식생산자가 되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3
	사업 이행계획(transition plan)	3
	사업계획 개발	3
	어가의 재무계획	2
	비즈니스모델 변화	2
	에너지 소비 및 어업 효율화	3
	바닷가재 마케팅 기회	3
	상품 품질 제고 및 처리	1.75
	바닷가재 대체 기업	2.25
	바닷가재 시장 개관	2
	사업계획의 디지털화(putting your business on the Digital map)	1
메기	양식 생산형태(practice)	2
	안전관리	1.25
	리스크 관리	1.5
	메기 양식업자들을 위한 시장 채널 및 대안	3
	직접 마케팅	3
	성공적 양식생산자가 되기 위한 전략적 포지셔닝	3
	사업 이행계획(transition plan)	3
	노동자 관리리스크	2
	사업계획 마련	3
	재무상태 및 정책	3
	재무상태 점검 및 정책 마련	1
	메기양식의 생산 효율성 제고	2
사업계획의 디지털화(putting your business on the Digital map)	1	

- 미국 내에서도 TAA 지원 및 운영기간이 타 사업에 비해 짧기 때문에 공

식적으로 사업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현금지원의 경우 지원액이 크지 않아 생산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했지만, 기술 지원은 농어업인들이 생산품목을 다양화시키고 기존 생산량의 판매 및 수익률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sup>18)</sup>
- 특히 리스크 관리 교육을 위한 미국 서부 센터(Western Center for Risk Management Education)가 발표한 평가 내용에 따르면 워크숍 참석자의 40%는 수입 농수산물과의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 변화를 모색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TAA 기술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두 가지의 발전 제약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는 TAA 신청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 지원이 필요한 농어업의 지원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임
  - 둘째 소득보전지원액이 매우 적어서 TAA 기술 지원 프로그램 및 수입 경쟁에 따른 농어업인이 사업을 변경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음

### 3. EU

- 무역자유화에 따른 피해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미국과는 달리 EU는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국·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구조기금을 창설함
  - 유럽구조기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무역자유화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지원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가간 경제통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넓은 의미에서 무역자유화 피해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유럽구조기금은 경제통합으로 피해를 입는 특정 산업이나 지역을 보조하는 역할보다는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18)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rengthen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olicy Brief number PB08-2

유럽공동체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가.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 유럽구조기금은 네 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유럽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 ESF)
  -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 : EAGF)
  -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ERDF)
  -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 FIFG)
- 유럽사회기금은 EU내 사회 불균형의 해소를 목표로 노동시장의 동등한 기회 보장, 직업훈련제도 개선, 숙련노동자의 육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유도 등을 지원함.
  - 유럽사회기금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 EEC)의 출범과 동시에 1958년 구조기금 중 가장 먼저 창설됨.
-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은 농업부문의 구조조정과 농촌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 해당 기금은 주로 농업설비 현대화와 생산품질의 제고 등을 위한 농업 부문 투자, 정착비와 직업훈련, 농업환경정책, 농산물 마케팅, 농업관광 상품개발 등을 지원함
  -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은 유럽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재정수단으로 1962년 창설됨
- 유럽지역개발기금은 1975년에 창설되었으며 지역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EU내 저개발 지역과 사양 산업 지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과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동 기금은 교통, 통신, 에너지, 환경,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도시재개발,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분야에 지원함
- 수산업지원재정기금은 1993년 EU 구조기금의 개정시 창설되었는데 EU 회원국 수산업의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동어업정책으로 개정됨

- 동 기금은 어촌지역의 활성화 및 근대화, 선박 폐선 및 업종전환, 수산 자원 보호, 개별 어민에 대한 복지사업 등을 지원함

[표 4-20] 유럽구조기금의 종류 및 개요

구분	유럽사회기금(ESF)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AGGF)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FG)*
시행시기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창설			
	1958년	1962년	1975년	1992년
목적	유럽연합 내 국가 및 지역간 균형적 경제사회의 발전			
	고용기회 확대, 생활수준 향상	농업부문 구조조정과 농촌개발	지역간 불균형 해소(저개발 지역, 사양산업지역 경제개발)	수산업부문 구조조정과 어촌개발
담당기관	유럽집행위원회: 구조기금 운영의 결정권을 행사 구조기금 위원회 및 각 기금별 위원회 : 구조기금 운영 자문 경영기관 :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의 실질적 담당기관 감독위원회: 각 회원국별 구조기금 운영 자문 및 감독			
지원대상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 사양산업 지역, 구조조정 필요지역 등 지역별 및 공동체별 지원			
지원형태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기금이 지원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개별 회원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			

주 : \*의 수산업지원재정기금(FIFG)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되었으며, 2007년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에 보다 초점을 맞춘 유럽수산기금(European Fisheries Fund, EFF)로 대체됨  
 자료 : 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나.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 EU는 지역정책에 있어 발전이 뒤쳐진 지역과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우선지원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음
- 2000~2006년 제2차 사업기간 EU는 3개의 목표지역을 설정하고 구조기금을 분배하였음
- 제1목표 지역은 EU의 1인당 평균 GNP가 75% 미만인 지역이며 소득수준이 낮고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며 타 지역으로 인구 전출이 계속되고 있는 낙후된 지역임
  - 제1목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낙후되고 부족한 인프라 시설(교통, 에너지, 통신), 시장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생산방식, 낙후된 농업구조, 농촌지역의 몰락으로 인한 인구의 대량이동, 미숙련 노동자와 청년실업 등을 들 수 있음

- 이들 지역은 EU의 외곽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활동의 중심지에서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투자가 빈약한 지리적 어려움도 겪고 있음
- 제1목표지역에는 13개 회원국, 60개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조기금의 2/3이 동 지역에 배분됨

[표 4-21] 유럽구조기금 제2차 사업기간 목표지역의 종류

구분	목표	기준
제1목표지역	낙후된 지역의 개발지원	1인당 GNP가 유럽공동체 전체 평균 1인당 GNP의 75% 미만
제2목표지역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는 지역 지원	산업고도화에 따라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석탄, 철강 산업지대로 생산, 고용 등 구조조정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제3목표지역	교육과 고용시스템의 현대화 지원	제1목표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지역 중 장기적인 실업이나 생산체계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

자료 : 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제2목표 지역은 산업고도화에 따라 점차 사양화되고 있는 석탄, 철강 산업지대로서 생산, 고용분야에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임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 취약한 도시지역, 수산업 의존지역 등 전반적으로 경제 침체지역들이 동 지역에 속함
  - EU 전체 제조업 인구의 10%, 농촌인구의 5%, 도시인구의 2%, 수산업 인구의 1% 정도가 이 지역에 포함됨
- 제3목표 지역은 제1목표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지역 중 장기적인 실업이나 산업생산의 변화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주로 교육의 현대화, 직업교육, 고용촉진정책 등을 지원함
  - 제3목표 지역은 인적자원 개발과 관계있는 모든 활동을 지원함
- 각 목표지역(objectives)별로 지원되는 구조기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1목표지역: 네 가지 구조기금 모두 사용

- 제2목표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ERDF)과 유럽사회기금(ESF)이 사용
- 제3목표지역: 유럽사회기금(ESF)만 사용

[표 4-22] 목표지역에 따른 유럽구조기금의 배분

구분	지역목표 배분		
	제1목표 지역	제2목표 지역	제3목표 지역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	○	
유럽사회기금(ESF)	○	○	○
유럽농업지원보증기금(EAGGF)	○		
수산업재정지원기금(FIFG)	○		

자료 : 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다. 유럽구조기금의 지원요건 및 절차

- 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단체는 유럽구조기금 신청이 가능하며 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총비용의 일정 부분을 구조기금 이외의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아야 함
  - 구조기금은 직접보조형태로 지급되며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임
  - 제1목표지역에는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75%까지 지원 가능하고 제2·3목표지역에는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함
- 프로젝트가 구조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함
  - 프로젝트가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지역개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프로젝트를 제안한 기관은 기금의 지원 없이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규모를 축소하거나 시간을 늦추어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의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함
  - 지역별 목표나 공동체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함
- 구조기금은 주로 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이므로 주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들이 신청함
  - 대체로 구조기금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는 있음

- 대기업들도 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 때 중소기업이 기금의 50%이상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음
- 구조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관은 프로젝트를 각 국별 신청기관(예: 영국의 잉글랜드는 정부사무소(Government office)에 신청함)에 제안하고 제안된 프로젝트는 접수화되어 경쟁 입찰을 통하여 기금의 수혜여부가 결정됨
  - 각 회원국에는 경영기관(Managing Authorities)이 구성되어 구조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 경영기관은 각 단체나 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프로젝트의 운영과 감독의 의무를 짐

## 라. 유럽수산기금

- 구조 기금 중 유럽수산기금은 주로 어획노력 조정, 어선 현대화, 소규모 영세어업 지원 분야 등 총 12개 분야에 대해 지원함
  - 유럽수산기금도 구조기금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경제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국·지역·계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유럽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산업 전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
- 대표적으로 소규모 영세어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선체 길이 12m 미만 어선에 대한 선상 위생, 안전, 작업 환경 개선, 선별적 어법을 위한 기술 도입, 전문 훈련에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선체 길이 12m 미만의 어선이 전체 어선 척수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EU 수산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또한 수산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폐업 등에 대해 유럽수산기금은 사회적 보상을 하고 있음
  - 어업인이 55세 이상이고, 최소 10년간 어업에 종사한 자가 조기 퇴직할 경우 지원됨
  - 어선 감척으로 폐업을 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업 종사를 증명하는 자에 한해 최대 1만 유로의 개인 지원금(premium) 지원함

[표 4-23] 유럽수산기금 지원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어획노력 조정	어선 감척, 비회원국으로의 어선 영구 이전, 어선 용도 비수익 목적으로 변경
어선 현대화 및 어선 수리(fleet renewal)	선별적 어법 사용(어구 교체 미지원), 선령 5년 미만 어선에 대한 VMS 장착, 선상에서의 수산물 처리, 가공, 품질 개선, 작업환경 및 안전 개선
소규모 영세어업(small-scale inshore fishing)	선체 길이 12m 미만 어선에 대한 선상 위생, 안전, 작업 환경 개선, 선별적 어법을 위한 기술 도입, 전문 훈련
내수면 어업	내수면 조업 어선의 현대화 기여 - 선별적 어법 사용 - 선상 수산물 처리, 가공, 품질 개선 - 작업환경 및 안전 개선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	- 해상 인공산호지역 조성 통한 해양보호지역 마련
어항 시설	- 양육 수산물의 신선도 및 안전 유지를 위한 어항시설 및 장비 현대화에 기금 지원 - 어항 내 냉장, 양육, 처리 저장 시설 설치
양식 개발	- 양식생산 및 관리: 양식시설의 신축, 확대 및 현대화 -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완화 및 양식 수산물 품질 개선 - 양식시설 내 수질 흐름 개선
수산물 가공 및 마케팅	- 가공시설 신설, 확대, 현대화
수산물 소비 촉진	- 수산물 품질 인증 - 홍보 캠페인 - 소비자 조사 - 수산물 박람회 참여 - 수산물 소비 시장 조사 및 교역 연계 방안 연구 - EU 비회원국 수출 위한 시장 조사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회적 조치	- 55세 이상, 최소 10년 어업에 종사한 자의 조기 퇴직 지원 - 어선 감척으로 폐업 및 최소 12개월 어업 종사자에 대해 최대 1만 유로의 개인 보험료(premium) 지급 - 최소 5년 어업종사자에 대한 개인 재훈련 보험료 지급 : 어업 영구 이직자에 대해 보험료(premium)는 5만 유로 초과 불과 - 파트 타임으로 이직한 경우 보험료는 1만 유로 초과 불과
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조치	- 생산자 단체 구성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수산물 품질 개선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수산자원관리: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기술조치 증진, 근로 환경 개선 및 상품의 공중보건 모니터링, 연안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치
수산업의 잠정 휴업	- 자연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충격에 의한 조업 중단 - EU에 의한 어업협정의 중단 또는 비갱신 - 자원회복 계획에 따른 어업 중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Fisheries,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3.

- 최소 5년 수산업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는 재훈련 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때 영구 이직자에 대한 지원금은 5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분 이직한 경우 1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표 4-24] 유럽수산기금 사업별, 지역별 지원 비율

구분	지역	지원 비율
어획노력 조정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어선 현대화 및 어선 수리(fleet renewal)	제1목표지역	A≤35%, B≥ 5%, C ≥60%
	기타 지역	A≤15%, B≥ 5%, C ≥60%
소규모 영세어업 (small-scale inshore fishing)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 지원금은 프로젝트당 15만 유로를 초과할 수 없음
내수면 어업	제1목표지역	A≤35%, B≥ 5%, C ≥40%
	기타 지역	A≤15%, B≥ 5%, C ≥60%
수산자원 보호 및 개발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어항 시설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양식 개발	제1목표지역	A≤35%, B≥ 5%, C ≥40%
	기타 지역	A≤15%, B≥ 5%, C ≥60%
수산물 가공 및 마케팅	제1목표지역	A≤35%, B≥ 5%, C ≥40%
	기타 지역	A≤15%, B≥ 5%, C ≥60%
수산물 소비 촉진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회적 조치	제1목표지역	50%≤A≤75% B≥ 25%
	기타 지역	25%≤A≤50% B≥ 50%

주 : A는 EC FIGG 지원, B 회원국의 지원비율, C는 민간 지원을 의미함  
 자료 : European Commission, Fisheries,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3.

- 유럽수산기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어선 및 수산 관련 시설의 현대화에 맞춰져 있음
  - 그 외에도 위생, 안전, 작업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수산분야의 발전 정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임
- 유럽수산기금은 사업별, 해당 목표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지원되고 있음
  - 사업별로 프로젝트 수행비용의 50~75%를 기금이 지원하고, 그 나머지 비용은 개별 회원국과 민간이 충당하는 일종의 매칭펀드 형태임

- 1인당 GNP가 유럽공동체 전체 평균 1인당 GNP의 75% 미만인 제1목표 지역의 경우 소규모 어업지원사업분야에 대해서는 EC에서 50~70%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외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EC 부담 비율이 15%, 회원국이 5%, 그리고 민간 부담 비율이 60%임
- 구조조정을 동반한 사회적 조치 사업의 경우에도 제1목표 지역의 경우 EC에서 50~75%의 비용을 부담하고, 회원국이 나머지 25%를 부담함
- 유럽수산기금(FIFG)은 2007년 EFF(European Fisheries Fund)로 변경되어 2013년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평가를 내리기는 힘들
- 다만 유럽지역에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유럽수산기금을 통해 유럽위원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지만 FTA 체결에 따른 EU지역의 수산업 피해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로써의 역할을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음

## 4. 호주

### 가. 돼지고기 산업 무역조정지원정책

- 호주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점진적 위생검사 완화조치로 인해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자국 돼지고기 산업이 수입 돼지고기와의 심각한 경쟁이 불가피하였음
- 이에 대해 1999년 호주 정부는 돼지고기산업지원팩키지(Pork Industry Assistance Package)를 마련하였으며, 총 지원규모는 2,400 호주달러(미화 약 1,550만 달러)임
  - 돼지고기산업지원팩키지는 4개 상세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돼지고기산업개발프로그램 1,160만 호주달러(미화 750만 달러)(National Pork Industry Development Program, NPIDP), 돼지고기가공산업보조프로그램(Pigment Processing Grants Program, PPGP), 돼지고기 생산업자퇴출프로그램(Pork Producer Exit Program, PPEP) 340만 호주달러(미화 220만 달러), 생산자훈련프로그램(PorkBiz) 임

- 해당 지원산업 기간은 3년(2002년 6월 30일 종료)이나 일부 프로그램은 단기 종료되었음
- 돼지고기산업개발프로그램(NPIDP)의 목적은 호주 돼지고기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을 개척하기 위함임
  - 호주 돼지고기 산업의 내수와 수출 진흥을 위해 공급체인의 모든 분야에 대해 포괄적 지원 및 품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음
  - 또한 NPIDP 예산에서 150만 호주달러(미화 100만 달러)의 생산자연맹 프로그램(National Networks Alliance Program)이 마련되었는데, 이는 호주 돼지고기 생산의 수직·수평적 협력 개발을 장려하기 위함임
- 돼지고기가공산업보조프로그램(PPGP)은 돼지고기 산업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돼지고기 가공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효율성 및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 돼지고기 생산업자퇴출프로그램(PPEP)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돼지고기 생산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의 퇴출을 촉진하기 위함임
- 생산자훈련프로그램(PorkBiz)은 재정, 인적, 자연자원의 관리 및 사업계획을 개선하기 위함임

## 나. 설탕산업 무역조정지원정책

- 호주 정부는 호주-미국 FTA에서 미국 설탕시장 개방에 실패한 직후 자국 설탕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2004년 4월 29일 설탕산업 개혁프로그램(The Sugar Industry Reform Program, SIRP)을 발표함
  - 호주-미국 FTA에서 설탕산업은 주요한 협상사안이었는데, 이는 미국내에서 TRQ와 특혜용자제도 등으로 미국 국내 설탕과 국제설탕가격의 차이가 1995~1998년 기간동안 약 2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호주측은 미국내 설탕시장 개방을 통해 수출 진작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음
  - 그러나 미국측은 호주산 설탕의 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며 시장접근을 차단하였음

## &lt; 호주의 설탕산업지원책 &gt;

호주 정부의 설탕 관련 산업/농가에 대한 지원은 가격지지, 농촌지역조정계획(Rural Adjustment Scheme(RAS), 설탕산업 경제기반시설 프로그램(Sugar Industry Infrastructure Program, 설탕산업지원패키지(Sugar Industry Assistance Package) 등을 통해 이미 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미-호주 FTA 체결로 인해 2004년의 설탕산업개혁프로그램은 지원규모나 지원의 범위에 있어 이전의 정부지원 프로그램과는 크게 차이가 남

- SIRP 2004는 크게 두 가지의 지원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첫째는 설탕산업의 복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설탕산업 종사자의 즉각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설탕산업을 안정화시키는 것임
  - 둘째는 설탕산업의 보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구조조정 및 개혁을 추구하는 것임
- 설탕산업의 복지를 위해 유지가능보조금, 소득지원, 위기상담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유지가능보조금(sustainability grants)은 설탕산업의 어려움으로 문제를 겪는 제분업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2년('04~05년)간 보조금을 지급하며, 소관부처는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임. 해당 보조금은 총 1억 4,600만 호주달러 중 1억 3,300만 호주달러가 지급됨으로써 총 예산의 91%가 집행되었음
  - 소득지원 프로그램(income support payments)의 지원대상은 호주 전지역 설탕산업 종사자로 수혜자는 지원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해야 함. 특히 퀸즈랜드(Queensland) 지역의 1,535명 재배업자가 516만 호주달러를 지원받았으며, 이는 개인당 3,361달러가 지급된 셈임
  - 위기상담(crisis counselling) 프로그램의 대상은 위기에 처해 있는 설탕산업의 재배업자 및 그들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기존의 재무 상담 및 가족지원서비스의 능력을 제고시켰음. 사업 기간은 5년이며 총 456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368만 달러가 소진됨으로써 약 80%가 소진되었음
- 설탕산업의 개혁 및 구조조정을 위해 사업계획보조금, 재건보조금, 재훈련보조금, 구조조정보조금, 세대간증여, 지역공동체프로그램 등 총 6가지

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음

- 사업계획보조금(business planning grants) 은 재배업자(growers)와 추수업자(harvesters)를 대상으로 사업 상황 분석을 지원하기 제공되는 소득보조로 개인당 최대 2,500달러가 지급됨. 3년간 총 1,390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710만 달러가 소진되었음. 특히 설탕산업 생산자가 밀집한 퀸즈랜드에서 2,494명의 재배업자 및 추수업자는 총 549만 달러를 보조받았는데, 이는 개인당 평균 2,201달러를 지급받은 셈임
- 재건보조금(Re-establishment Grants)은 사탕수수 경작을 포기 또는 다른 작물로 전작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3년간 총 9,520만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이 중 6,300만 달러(66%)가 소진되었음. 개인별 지원액은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탕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만달러 지원, 추수의 경우 최대 5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보조금 수혜자는 최소 5년간 설탕관련 산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업 또는 자신의 농지를 팔고 농업을 떠나야 함
- 재교육보조금(Restructuring Grants)은 호주 전 지역 설탕산업 이직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으로 4년간 총 570만 달러가 책정되었음. 그러나 총 예산의 1.6%만 소진됨
- 구조조정 보조금(Restructuring Grants)는 사업 운영상의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설탕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3년간 3,90만 호주달러가 지원되었음. 총 3,499명의 생산자에 대해 2,594만 호주달러가 지급되었는데, 이는 1인 평균 7,413달러를 지급받은 셈임
- 세대간 증여(Intergenerational Transfer Scheme)란 노후연금 신청 자격이 없는 사탕수수재배업자에게 자신의 농지를 증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5년간 총 2,020만 달러가 책정되었으나 약 70만 달러가 소진됨
- 지역공동체프로젝트(Regional and Community Project)는 설탕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주로 산업간 협력 및 전반적 시스템에 대한 솔루션 마련이 주요한 사항임. 3년간 총 7,505만 달러가 책정되었는데, 이중 5,640만 달러가 소요되었음

[표 4-25] SIRP 2004 주요 지원내역

구분	상세사업	지원규모	주요 내용
설탕 산업 복지	유지가능 보조금	1억 4,60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탕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제분업자와 농민에 대한 보조금 지급</li> <li>· 기간 : 2년('04~'05년)</li> <li>· 소관부처 : 농림수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li> </ul>
	소득지원	1,70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서호주지역 농민</li> <li>· 수혜자는 지원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착수</li> <li>· 기간 : 2년</li> </ul>
	위기상담기금	456만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설탕산업 생산업자 및 그들 가족에 대한 추가 지원</li> <li>· 기존 재무 상담 능력 및 가족지원서비스 개선</li> <li>· 기간 : 5년</li> <li>· 소관부처 : 가족가정공동체부(Departmen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 and Indigenous Affairs, FaHCSIA)</li> </ul>
설탕 산업 개혁	사업계획 보조금	1,39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재배업자(growers)와 추수업자(harvesters)</li> <li>· 방식 : 소득지원, 개인당 최대 2,500호주달러</li> <li>· 기간 : 3년(이 중 710만 호주달러가 지원됨)</li> <li>· 전반적 사업계획 개발 및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제공</li> </ul>
	재건 보조금	9,52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탕수수 경작 포기 또는 다른 작물로 전작하는 농가 (수혜자는 최소 5년간 설탕관련 산업을 포기하거나 다른 작물로 전업 또는 자신의 농지를 팔고 농업을 떠나야 함)</li> <li>· 지원액 :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탕수수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에 대해 최대 10만 호주달러 지원. 추수의 경우 최대 5만 호주달러 지원</li> <li>· 기간 : 3년</li> </ul>
	재교육 보조금	570만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직자에 대한 훈련프로그램제공</li> <li>· 기간 : 3년</li> <li>· 노동및인력관계교육과학훈련부(Department of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와 농림수산부(DAFF)가 협력하여 해당 사업에 관여</li> </ul>
	구조조정 보조금	3,91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운영의 구조조정을 고려하는 설탕산업업체</li> <li>· 기간 : 3년</li> </ul>
	세대간 증여	2,02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금 신청 자격이 없으며 자신의 농지를 증여할 수 있는 사탕수수재배업자</li> <li>· 기간 : 5년</li> </ul>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7,500만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 설탕산업의 중장기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에 지급</li> <li>· 내용 : 주로 산업간 협력 및 전반적 시스템의 솔루션 마련</li> <li>· 기간 : 3년</li> </ul>

자료 : A report on the impact of the Sugar Industry Reform Program(SIRP) 2004 to 2008,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 호주 정부는 SIRP 2004가 장기적 관점에서 설탕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산업의 구조개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특히 지역개발계획 과정에서 설탕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시킴으로써 설탕산업 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킨 점은 SIRP 2004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됨. 이는 호주 정부의 애초 목표, 즉, 사탕수수 생산의 지속가능한 지역적 접근 마련과도 일치함
- 한편 지원에 있어 설탕 관련 종사자들의 손실 예상치를 웃도는 대규모 지원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설탕산업의 철저한 구조조정 및 자원의 재분배를 수행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음

## 5. 시사점

- 이상 살펴본 세 국가의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 TAA의 첫 번째 특징은 피해 품목별 지원이라는 점임
  - 즉, 개별 농가 및 어가의 피해가 아닌 품목별로 피해가 해당 기준을 만족하면 해당 생산 농어민 또는 특정 지역내 농어민 전체를 지원함
-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두 번째 특징은 보조금 등 직접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자의 비용 절감 및 생산 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술지원을 통해 해당 품목의 생산자가 장래 수입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과 훈련 등의 교육을 통해 생산 경쟁력을 강화시킴
- 수산업의 경우 주로 미국내 수입이 많이 이뤄지는 메기 또는 새우 등 양식 품목에 대해 TAA가 활용되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사업 다양화 및 마케팅 등에 대한 기술지원이 이뤄졌음
- 그러나 미국 내 수산분야에 대한 TAA 지원 및 운영기간이 타 사업에 비해 짧기 때문에 공식적인 사업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술 지원이 생산품목을 다양화하고 기존 생산량의 판매 및 수익률을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미국 TAA는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자국내 지지기반을 얻고 이익집단간의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목적에 기여하였으며, 피해

- 당사자들 있어서도 이전 수준의 60~70%의 소득을 보전하는 한편 재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
-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임
  - TAA는 피해품목 생산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역별 격차나 부문별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두 번째 사례로 살펴본 EU의 유럽구조기금은 경제통합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여 취약산업이나 낙후된 지역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유럽공동체 전체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넓은 의미에서 자유무역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라고 볼 수 있음
- EU의 유럽구조기금의 하나인 유럽수산기금은 주로 어선 및 수산 관련 시설의 현대화에 지원되었음
- 그 외에도 위생, 안전, 작업 환경 개선 등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EU 경제통합에 따른 회원국간 수산분야의 발전 정도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나아가기 위함임
- EU의 구조기금은 낙후지역 개발과 경제·사회적 발전을 도모하여 역내 지역간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또한 효율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운영방식과 평가제도 등을 계속 정비하고 있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유럽구조기금은 해당지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해당 지역 경제주체가 발굴하여 추진하므로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부문에 자금이 투입될 수 있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나 기업 등에 발생하는 개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
- 수산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주로 어선 및 수산 관련 시설의 현대화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자유무역에 따른 특정 품목의 피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마지막으로 호주 사례에서 살펴본 돼지고기와 설탕산업에 대한 무역조정



지원정책은 두 가지 특징이 있음

- 첫째, 무역조정정책을 통해 해당 산업의 복지를 강화하고 둘째,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및 개혁을 추구함
- 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보조금, 소득지원, 위기상당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주로 보조금 지원, 세대간증여, 지역공동체프로그램 등이 운영되었음
- 호주 정부의 설탕산업에 대한 무역조정지원제도는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의 실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특히 지역개발계획 과정에서 설탕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통합시키고 설탕산업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킨 점은 SIRP 2004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됨
- 이상 세 국가의 자유무역에 따른 수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정책을 살펴본 결과, 각 산업의 특징에 따라 피해 보상의 방법, 범위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미국, 호주 등은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 등 직접 보조를 지양하고, 다양한 기술 지원을 통해 생산자의 생산 능력을 함양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장기적으로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임
- 특히 해당 산업의 구조조정 및 혁신을 위해 생산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조율한 점도 향후 국내 수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한편 EU 사례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국내 수산업이 자유무역으로 인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산 관련 환경 및 인프라 개선에도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음

Chapter

5

# FTA 체결에 따른 타산업 피해 지원 사례 분석

제1절 FTA 국내지원 대책 개요

제2절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제3절 여타 산업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제4절 시사점

# 제5장 FTA 체결에 따른 타산업 피해 지원사례 분석

## 제1절 FTA 국내지원 대책 개요

### 1. FTA 국내지원 대책 현황

- FTA에 대한 국내지원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2007년에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이라 할 수 있음
  - 국내보완대책의 기본 방향은 한미 FTA를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지원과 함께 산업별 경쟁력 강화, 농어촌 소득기반 확충 등을 병행하여 추진함
  - 정부가 발표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에 제시된 투융자 규모는 10년간(2008~2017년) 21.1조 원임
- 2010년에는 한·EU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화장품·의료기기산업에 총 2조 1,700억 원 규모의 추가대책을 마련함
- 2011년에는 변화된 경제여건을 반영하여 2007년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한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함
  -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은 FTA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정부는 1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을 발표함
- 또한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 국회 비준에 앞서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함
  - 추가 보완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85~90%), 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등임
  - 이를 위해 정부는 2조 원을 추가로 증액시킨 투융자 계획을 발표함

 	<p><b>한-미 FTA 보완 대책</b></p> <p>(‘07.11)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 (‘08~‘17) 21.1조원 투융자                  (‘11.08) FTA 환경하에서 농어업 등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 21.1 → 22.1                  (‘12.01) 한-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보완대책 : 22.1 → 24.1</p>
 	<p><b>한-EU FTA 보완 대책</b></p> <p>(‘10.11) 한-EU FTA 보완 대책 : (‘11~‘20) 2조원 투융자</p>

[그림 5-1] FTA 국내지원대책 현황

## 2. FTA 국내보완대책 기본 구조

- FTA 국내보완대책의 기본 구조는 크게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적 피해보전은 FTA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문에 대하여 일정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 농·수산업의 경우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 지원제도, 제조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제도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음
  - FTA에 대응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로 농·수산업의 경우 품질고급화 지원,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 R&D 투자 촉진, 수출활성화 지원, 우수인력 양성 등을 지원함
  - 소득기반 확충의 경우 농·수산업 부문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 농어촌 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짐

[표 5-1] FTA 국내보완대책 기본 구조

구 분	농·수산업	제조업·서비스업
직접적 피해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불제</li> <li>▪ 폐업지원제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조정지원제도</li> <li>▪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li> </ul>
산업별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품질고급화 지원</li> <li>▪ 생산시설 현대화</li> <li>▪ 인프라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amp;D 투자 촉진</li> <li>▪ 수출활성화 지원</li> <li>▪ 우수인력 양성</li> </ul>
소득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지역산업 육성</li> <li>▪ 농어촌 관광활성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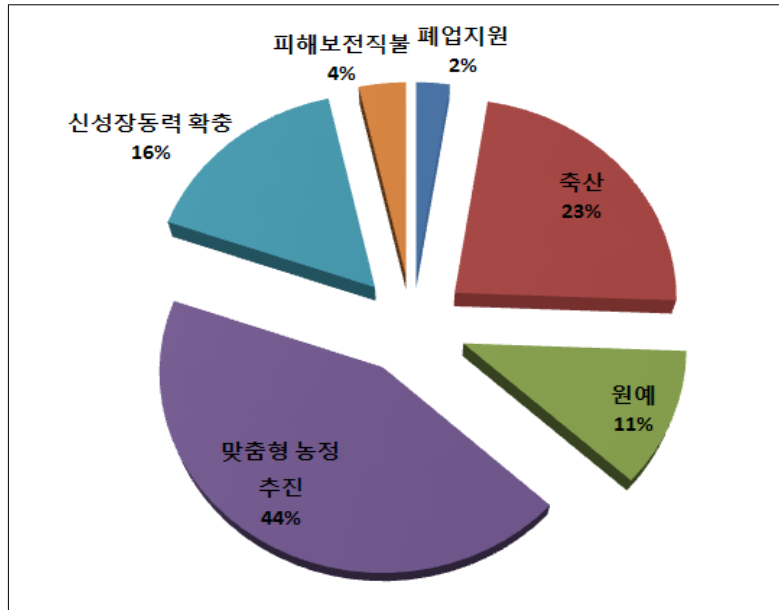
## 제2절 국내 농업분야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 1. 농업부문 지원대책 개요

- 농업부문의 경우 한·칠레 FTA 때부터 농업인의 피해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함
  - 200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한·칠레 FTA의 국내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 이 법에 기초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총 1조 2천억 원을 FTA 기금으로 조성하고,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융자 사업을 실시함
- 특히 2007년에 발표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에서는 농업인의 피해보전 및 농업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조 4천억 원의 투융자 계획이 마련됨
  - 이후 2011년에는 변화된 여건을 고려하여 1조 원의 추가적인 투융자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에 앞서 2조 원 규모의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였음
  - 따라서 농업분야 한·미 FTA 국내대책 투융자 규모는 총 23조 4천억 원 수준임
- 농업부문의 FTA 국내보완대책의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피해보전장치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농업체질 개선과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임

[표 5-2]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2007년 대책 기준)

단기 피해보전(12,20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69,968억 원)	농업의 체질 개선(121,459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불</li> <li>▪ 폐업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시설 현대화</li> <li>▪ 조사료생산기반 확충</li> <li>▪ 원예작물브랜드 육성</li> <li>▪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식품클러스터</li> <li>▪ 친환경물류센터</li> <li>▪ 농림기술개발</li> <li>▪ 재해보험 등</li> </ul>



자료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support.krei.re.kr)

[그림 5-2] 한미 FTA 대비 농업부문 투융자 사업(2007년 대책 기준)

[표 5-3] 농업부문 FTA 국내대책보완 내용

구분	재정지원	세제지원	제도개선
한-EU FTA 보완대책 (20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조 원 추가(축산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농상속공제액 상향(2억 원→5억 원)</li> <li>축산기자재부가세 환급 대상품목 확대(12→22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li> <li>이력관리체계 확대</li> <li>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li> </ul>
한·미 FTA 종합대책 (20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조 원 추가(시설현대화 중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축산소득 비과세, 수입 사료 무관세 범위 확대</li> <li>면세유 대상기종 추가</li> <li>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가 신용보증제도 개선 (한도 10억→30억)</li> <li>농업재해보험 품목 확대</li> <li>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li> </ul>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20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조 원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li> <li>수입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11개→22개)</li> <li>무관세 적용품목 확대 (5개→16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5%→90%)</li> <li>발농업직불제 도입 (19개 품목, 40만원/ha)</li> <li>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인상</li> </ul>

## 2. 농업부문 지원 대책

### 가. 직접적 피해보전

#### 1) 피해보전직접지불제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에 따른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받는 품목을 재배·사육·포획·채취·양식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접지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직접적인 소득감소를 일정부분 보전하고자 마련된 제도임
  - 즉, FTA로 인해 특정 품목의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그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임
- 피해보전직불제도는 2004년 한·칠레 FTA 보완대책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품목, 발동요건, 보전비율을 조정하여 농업인에 대한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함
  - 즉, 대상품목은 사전지정 방식(키위, 시설포도)에서 해당 농산물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후지정 방식으로 변경됨
  - 발동요건은 해당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과거 5년간의 평균가격)의 ‘80% 하락’에서 ‘90% 하락’으로 완화됨
  - 보전비율은 기준가격(조수입)과의 차액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됨
  - 시행기간은 기존의 한·칠레 FTA 발효 후 7년(2004.4~2010.3)에서 한·EU FTA 발효 후 10년(2011.7~2016.6)으로 연장되어 농가에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보장함

[표 5-4] 농업부문 피해보전 직불제도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발동기준	가격이 80% 이하로 하락	80% 이하	85% 이하
보전비율	차액의 80%	85%	90%
보전 기준	가격	조수입	가격
대상품목	사전지정(키위, 시설포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10.12.31일 종료	7년 (2017.12.31일까지)	10년 (2021.6.30일까지)

## 2) 폐업지원제도

- 폐업지원제도는 FTA 이행으로 과수·시설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임
  - 폐업지원제도는 농어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농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폐업 농가에게는 재취업 시기까지 안정된 생활기반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폐업지원제도 발동기준의 경우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4차례의 정부대책 발표 중 폐업지원금의 산정방식이 일부 변경됨
  - 기존 대책에서는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세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피해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폐업을 신청할 수 있는 폐업지원제도를 운용함
  - 이후 한·미 FTA 대책에서는 대상품목은 피해보전직불제와 동일하게 사전지정 방식에서 사후지정방식으로 변경되었나, 모든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전직불제와는 달리 과수, 축산 등 초기 투자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폐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시설투자가 존재하는 작목으로 한정함
  - 폐업지원금 지급기준의 경우 기존제도(2004년 대책)에서는 순수입(조수입 - 경영비 - 자가노력비) 기준이었으나, 이후의 대책에서는 순수익(순수입 - 토지·자본 용역비) 기준으로 변경함

[표 5-5] 농업부문 폐업지원제도

구 분	기존 제도('04년 도입)	'07년 대책	종합대책	추가 보완대책
지급액	3개년분 순수입	3개년분 순수익		
대상품목	사전지정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	사후지정(모든 품목)		
시행기간	2008.12.31일 종료	5년(2016.6.30일까지)		



## 나. 산업 경쟁력 강화

### 1) 핵심 인프라 구축

- 축사·과수·원예전문단지 시설 등 농업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함
  - 축사시설현대화의 경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정책수요에 맞춰 사업규모를 확대함
  -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의 경우 비용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한 비가림 시설 등 과수고품질 시설 지원규모를 확대함
  -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온실 등 원예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함
- 대규모 산지를 중심으로 산지거점유통센터를 균형적으로 배치하여 규모화에 따른 경영안정 및 수급기능을 강화함
  - 과수 주요 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 설립을 지원함
  - 감자 주산지에 광역단위 유통센터 설치를 지원하여 시장안정화 및 감자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 소규모 농공단지 등을 중심으로 우수 브랜드를 육성하여 고품질 생산 및 경영안정을 지원함
  - 과일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단일화하는 공동브랜드를 육성함
  - 시장 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 성장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밭작물·원예브랜드를 육성함
  - 축산물의 품질 향상 및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고 지원함

### 2) 농림기술 개발 지원

- 미래성장을 위한 가축 품종개량 및 종묘·종자산업을 육성함
  - 가축의 혈통,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를 거쳐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개발하는 등 가축개량 사업을 지원함

- 우수품종의 품질관리, 증식·가공에 필요한 시설·장비자금을 지원하여 신품종 개발능력 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통한 국내산 종자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킴
-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단지 조성을 통하여 농식품 수출을 확대함
  - 30대 수출상품(김치, 인삼, 파프리카 등)을 선정하여 수출시장 유형별 맞춤형 수출마케팅전략을 마련함

## 다.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 1)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주업농에 대해 당해연도 농업소득이 기준소득 보다 낮아질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보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를 마련함
  - 제도시행에 앞서 농가소득 파악을 위해 '08년부터 농가 등록제를 시행 중임
  - 현재 1단계 시범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시범사업이 실시 중으로 '13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농업분야 자연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고, 대상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
-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를 도입함
  - 19개 품목<sup>19)</sup>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 당 연간 40만원을 지급함
-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부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시킴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중(밭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이중 국비 70%, 지방비 30%)임

19)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 2) 지속가능한 생산체계 구축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자원순환형 농업을 활성화시킴
  - 이를 위해 집단화된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및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하고, 경종과 축산을 연계·운영하는 자원순환농업 조직체에 저리 용자금을 지원함
- 쌀·보리 대체작물로서 청보리 등 조사료의 생산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소득작물 다양화를 꾀함
-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배수로, 경작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지원함

## 라.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 1) 제도 개선

-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임차농 보호제도를 마련함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3년), 임대차계약 해지의 제한, 유희농지의 대리경작 신청 제도 등을 도입함
- 축산 허가제 도입 및 방역체계를 강화함
  -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 처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2012년부터 허가제를 도입하고, 허가제 도입과 연계하여 구제역 등 질병에 대비한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함
- 농업 재해보험 대상 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함
  - 농작물 : ('01) 2개 품목 → ('03) 6 → ('07) 10 → ('09) 20 → ('10) 25 → ('11) 30
  - 대상품목은 사과, 배, 복숭아, 감귤, 단감, 뽕은감,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시설딸기, 시설토마토, 시설참외, 시설오이, 대추 등임
  - 축산물 : ('97) 1개 품목 → ('02) 4 → ('07) 11 → ('10) 14 → ('11) 15
  - 대상품목은 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양, 벌, 토끼, 관상조임

## 2) 세제 지원

- 2012.6.30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2015년 까지 연장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함
- 영농기자재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14년 까지 연장함

## 3. 2012년 농업부문 대책 사업

- 2012년 농업부문 FTA 대책사업 예산은 총 81개 사업으로 예산은 30,133억 원 수준임
  - 이중 한·미 FTA 대책 사업이 69개 24,653억 원이며, 한·EU FTA 대책사업이 12개 5,477억 원임
  - 한·미 FTA 대책 사업의 경우 직접피해보전 대책이 900억 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가 10,499억 원, 근본적 체질 개선이 13,254억 원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 사업의 예산 비중이 높음
  - 한·EU FTA 대책사업의 경우 대부분 축산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됨

[표 5-6] 2012년 농업부문 FTA 대책 사업

단위 : 개, 억 원

구 분		사업수	예 산
합계		81	30,133
한·미 FTA	소계	69	24,653
	직접피해보전	2	900
	품목별 경쟁력 강화	30	10,499
	근본적 체질 개선 <sup>1)</sup>	37	13,254
한·EU FTA <sup>2)</sup>		12	5,477

주 : 1) 근본적 체질 개선 사업의 경우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 농업부문 중심 사업으로 농업부문에 포함시킴

2) 한·EU FTA 국내대책은 대부분 축산관련 대책이며, 한·미 FTA 지원대책과 중복되는 14개 사업(6,080억 원)은 제외함

### 제3절 여타 산업의 피해 지원대책 분석

####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 가. 직접적 피해보전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FTA로 인한 직접적 피해보전을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사업전환 촉진제도를 마련함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수입 증가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감소하는 기업에 대해 융자 및 컨설팅을 제공함
  - 융자의 경우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컨설팅의 경우 비용의 80%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경우 FTA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제도개선이 이루어짐

[표 5-7] 무역조정지원제도

구 분	기존 제도('07.4월 시행)	'07년 대책	종합대책	추가 보완대책
지급요건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		20% 이상 감소	5%~10%
대상업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주 : 다만, 공공-오락서비스, 비영리조직체(종교단체, 노동조합 등)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즉, 기존 제도에서는 6개월간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2011년 발표된 종합대책에서는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완화되었으며, 가장 최근에 발표된 추가 보완대책에서는 피해기준을 5~10% 완화시켜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한편 지원 대상업종에 있어서도 제조업뿐 만 아니라 서비스업 전체로 확대하여 피해구제 기능을 강화시킴
-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이익, 시장점유율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원요건을 업종별로 별도 규정함

- 사업전환지원제도는 FTA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된 업종, 품목의 사업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 품목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등을 지원함
  -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FTA 이행에 따라 당해 업종의 경영이 어려워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임
  - 지원내용은 크게 사업전환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과 신제품·신기술 개발(R&D) 사업 지원이 이루어짐

## 나. 산업별 경쟁력 강화

### 1) 제조업

- 제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지원강화, 기술개발 촉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특히 2007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에서는 토지·인력 등 핵심 생산요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기업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함
  -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FTA 수혜품목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국외에 우리기업 전용공단 설치 및 공동물류센터 개설 등을 추진함
  - 또한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기 관세철폐로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단기 R&D 지원을, 국산화 및 수출산업화 필요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 R&D를 지원함
  - 한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전략적 마케팅, 국가 IR(기업설명회) 개최, 투자 현실화 등의 해외 투자유치 활동은 물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KOTRA가 합동투자환경 개선팀을 구성하여 투자환경 개선사항 발굴 및 투자 애로사항 등을 해결함

## 2) 서비스업

- 서비스업의 경우 관광·레저 분야의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서비스 산업 경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골프 등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기 위한 레포츠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감세, 규제완화 등의 제도를 개선함
  - 또한 관광단지 개발 및 투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IT 기술의 경영활용도 제고, R&D 투자확대,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함
  - 업종간 융합 분야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u-City건설 등에 대한 규제정비 및 표준제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을 강화함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분야별 R&D 지원을 확대함
  - 업종별 단체 주관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디자인, 방송, 디지털 콘텐츠 등 업종별 전문인력을 양성함
- 서비스업 관련 불필요한 규제(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 등)를 지속적 개선함

## 2. 제약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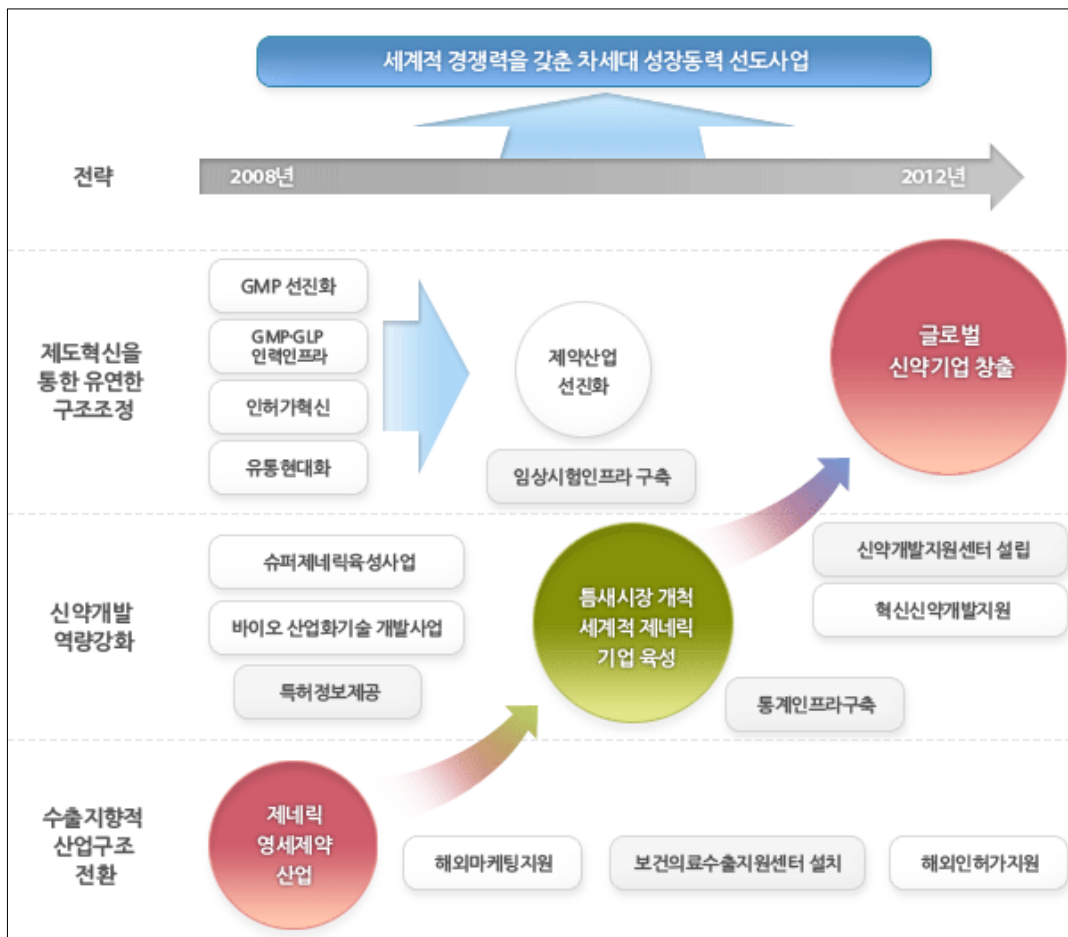
### 가. 기본방향

- 글로벌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FTA 체결 후 10년간 제도선진화와 연구개발지원을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지원함
  - 1단계에서는 국내제도 선진화 및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제약산업 체질 개선을 목표로 유연한 구조조정을 지원함
  - 2단계에서는 단기목표인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및 해외수출을 지원함

- 3단계에서는 바이오의약품 등 세계시장에서 통하는 신약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신약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표 5-8] 제약산업의 FTA 대응 기본 방향

구분	목표	중점 추진전략
1단계 (2008~2010년)	▪ 제약산업 체질 개선	▪ 제약산업 구조조정 지원 ▪ 제도 선진화 및 수출지원 인프라 구축
2단계 (2011~2012년)	▪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 기업 육성	▪ 슈퍼제네릭 육성사업 및 혁신신약개발지원사업 확대 ▪ 해외 인·허가, 마케팅 활동으로 수출지향 산업구조 전환
3단계 (2013~2017년)	▪ 글로벌 기업 육성	▪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개발 지원 강화 ▪ 글로벌 신약 기업 육성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

[그림 5-3] 제약산업 FTA 대응 단계별 중점 추진전략



## 나. 경쟁력 강화

### 1) 제약인프라 개선

- 제약산업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품질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제도혁신을 추진함
- 품질 선진화를 위해 우수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마련을 위한 지원과 제도선진화를 위한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함
  - 선진국 수준의 GMP 기준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시설 선자금 용자를 지원함(업체당 지원한도 30억 원(창업 20억 원))
  - GMP 관련기관 중심으로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연간 약 2천명의 실무교육을 실시함
  - 산업현장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해외훈련 지원을 통해 교육 전문 강사요원을 양성함
- 의약품 인허가 개선, 의약품 유통제도 효율화 및 현대화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혁신을 추진함
  -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약품 심사과정 표준화 및 심사자 교육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약품심사기준(GRP)을 정착시킴
  - 또한 국내 허가·심사 시 제출하는 자료의 종류·양식을 국제공통서식(Common Technical Document, CTD)으로 통일하여, 외국규정과 부조화에 따라 발생하는 의약품 해외진출 장애요인을 제거함
  - 첨단약품에 대하여 제품 개발 초기부터 상품화까지 전 과정에 걸친 기업 맞춤형 사전 상담제를 활성화시킴
  - 유통 중 의약품의 안전관리 등 의약품유통관리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의약품 생산·공급·구매·사용 정보를 수집하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함

## 2) 신약개발 역량 강화

- 혁신신약개발 지원사업, 수퍼제네릭 육성사업, 바이오산업화 기술개발 사업 등 신약개발 R&D 지원을 확대함
  - 해외시장 제품화 성공 또는 라이선싱 아웃을 목표로 글로벌신약 및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국내신약 개발을 지원함
  - 세계적 수퍼제네릭제품 개발을 목표로 개량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을 지원함
  - 세계 최첨단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사업을 확대 지원하여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함
- 의약품 특히 통합정보 지원시스템 구축, 임상시험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보건산업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신약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
  - 의약품 특히 통합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약품 인허가정보 및 특허정보 등 흩어져 있는 의약품 관련정보를 통합, 재가공하여 제공함
  - 임상시험센터를 확대하고 센터간 연계를 위한 임상시험사업단을 구축(지역임상시험센터를 연차적으로15개까지 확대)함. 임상시험 단계별·질병별로 각 센터의 특화를 유도하고 임상시험기술센터 및 임상인력양성센터를 설치함
  - 보건산업(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관련 모든 통계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보건산업 통계종합정보센터를 설치함

## 3)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의약품수출 전략지역(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 수출지원센터(KOTRA 해외무역관을 활용)를 설립하여 현지 인허가,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함
- 임상시험사업단 주도의 임상시험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를 활성화시킴
- 의약품 분야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및 시장개척단 파견 등 해외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 제4절 시사점

- FTA 국내 보완대책은 크게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으로 이루어짐
- 국내 보완대책은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농수산업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짐
  - 농수산업의 경우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소득기반 확충 등 3가지 측면에서 지원되고 있음
  -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직접적 피해보전, 산업별 경쟁력 강화 2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이루어짐
- 그러나 FTA 지원대책을 살펴보면 농업부문에 비해 수산부분의 지원이 미흡함
  - 2008년~2017년간 총 24.1조 원이 지원되는데 농업부문이 22.4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수산부분은 0.7조 원에 불과함
  - 2012년 FTA 대책 사업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의 경우 81개 사업에 총 30,133억 원이 투입되는데 반해 수산부분의 경우 16개 사업에 1,236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수산부분의 예산이 농업예산의 5%에 불과함

[표 5-9] 2012년 FTA 대책 사업 비교

단위 : 개, 억 원

구분	구분	전체		농업부문		수산부문	
		사업	예산	사업	예산	사업	예산
합계	합계	97	31,366	81	30,133	16	1,236
한·미 FTA	소계	85	25,889	69	24,653	16	1,236
	직접피해보전	4	980	2	900	2	80
	품목별 경쟁력 강화	44	11,655	30	10,499	14	1,156
	근본적 체질 개선 <sup>1)</sup>	37	13,254	37	13,254	-	-
한·EU FTA <sup>2)</sup>	소계	12	5,477	12	5,477	-	-

주 : 1) 근본적 체질 개선 사업의 경우 농업부문과 수산부문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대부분 농업부문 중심 사업으로 농업부문에 포함시킴  
 2) 한·EU FTA 국내대책은 대부분 축산관련 대책이며, 한·미 FTA 지원대책과 중복되는 14개 사업 (6,080억 원)은 제외함

Chapter

6

#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

제1절 수산정책 현황

제2절 FTA 관련 수산업 종사자 의견 조사

제3절 한·중 FTA 대비 수산분야 정책  
대응 기본 방향

제4절 한·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 제6장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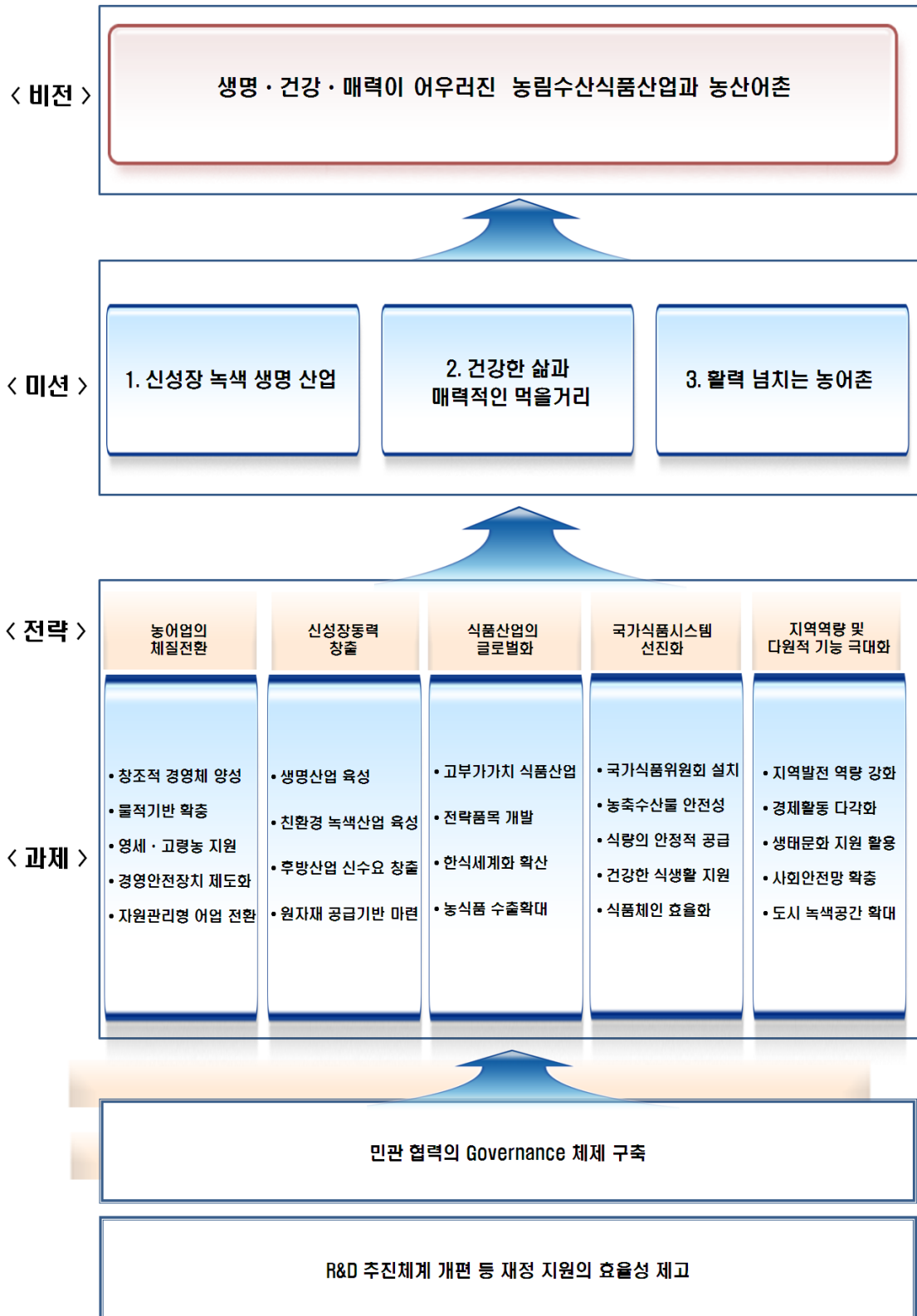
### 제1절 수산정책 현황

- 한·중 FTA에 따른 국내 수산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향 설정에 앞서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농림수산식품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농산어촌 비전 2020’과 수산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 등이 대표적임

### 1. 농림수산식품/농산어촌 비전 2020

#### 가. 비전 및 미션

- 농림수산식품 전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0년 발표된 「농산어촌 비전 2020」을 들 수 있음
- 「농산어촌 비전 2020」은 생명·건강·매력이 어우러진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설정함
  - 미션으로는 新성장 녹색 ‘생명’산업, ‘건강’한 삶과 ‘매력’적인 먹을거리,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산어촌’을 제시함
  - 비전과 정책미션 달성을 위해 농어업의 체질전환, 신성장동력 창출,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극대화의 5대 전략과 추진 과제를 도출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어촌비전 2020, 2010.

[그림 6-1] 농산어촌 비전 2020 체계도

## 나. 5대 전략 및 과제<sup>20)</sup>

### 1) 농어업의 체질 전환

- 농어업의 체질 전환을 위해 창조적 경영체 양성, 혁신적인 농기업 활성화 및 투자재원 다양화, 영세·노령농 지원, 경영안정장치 제도화, 자원관리형 어업 등 5개 과제를 제시함
-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첫째, 창조적 경영체 양성과 관련해 농어업의 미래를 선도할 창조적이고 강한 경영주체를 육성함
  - 품목특성에 맞는 전문농의 규모화와 농기업화를 추진하고, 경영역량을 갖춘 30~50대를 2020년 영농·영어 주력세대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의 적극적인 귀농·귀촌을 유도함
  - ‘비용절감운동본부’ 설립, 지역단위 ‘경영혁신단’ 구성·운영 등 민간주도의 상시적인 비용절감운동 전개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농어업인 교육·컨설팅 체계를 개선함
- 둘째, 농기업 집적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정부재정 중심에서 민간자본 유입 등 투자재원을 다양화함
  - 첨단·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의 새로운 모델정립 및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
  - 모태펀드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규모 경영체도 투자대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셋째, 영세·고령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은퇴이후의 생활안정을 지원함
  - 마을단위 농어업 법인,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조직화를 통해 영농 희망 고령농에 대한 편의를 제공함
  - 영세농에 대한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창출하는 한편, 영세·고령농 복지대책을 강화함
  - 시장원리에 의한 진입·탈퇴 시스템을 마련하고 은퇴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택권을 부여함. 수산업의 경우 “수산기업 거래소”를 통한 구조조정·규모화를 추진함
- 넷째, 직불금 제도 개편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환경보전 등 지속

20) 농산어촌 비전 2020의 5대 전략 및 과제와 관련하여 수산업과 관련된 정책 위주로 검토함

가능한 농어업 기반을 조성함

- 다섯째, 수산분야와 관련해 자율관리 어업을 수산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산시킴
  -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 자원량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트롤 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 감척하고, 업계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함
  -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자원관리 시스템을 마련함

## 2) 신성장동력 창출

-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생명산업 육성,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농자재 산업 신수요 창출, 원자재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4개 과제를 제시함
- 곤충, 애완용 동·식물자원 등을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킴
  - 생명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수출업종으로 육성함
  - 해외 생명자원 확보 및 기술격차해소를 위한 전략적 제후를 지원함
- 산업구조를 저투입·고효율 체제로 전환시켜 농식품 산업의 녹색성장을 견인함
  - 농식품산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 시스템을 구축함
  -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 농림수산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시킴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연구 개발 및 보급률을 확대하고, 어린고기 탈출망, 생분해성 어구 등 친환경 어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친환경 어업을 활성화시킴
- 해외자원 등의 신규개발과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로 원자재 가격상승 등에 대응함
  - 해외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에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을 구축함
  - 국제적 공조체계 구축 및 개도국 지원을 확대함(수산 : 참치자원 보유국(태평양 도서 8개국)과 협의체(KOPNA) 구성)



### 3) 식품산업의 글로벌화

- 식품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기반 구축, 전략품목 개발을 통한 신시장 창출, 한식세계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 2020년 농식품 수출 300억불 달성 4개 과제를 제시함
- 미래 유망분야 식품·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식품시장을 선도함
- 세계 10위권 농식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중국과 일본을 겨냥한 동북아 수산물 Hub를 육성함
  - 서·남해안 갯벌을 친환경 양식어장으로 개발(수출 5억불 달성)하고 2020년까지 35개소 외해양식장을 조성함(연간 1조 원 규모의 수출산업으로 육성)
  - 2020년까지 총 252개소의 수산물 유통 인프라를 개선·확충함(지원규모 : '20년까지 총 4,090억 원(국비 2,399, 지방비 1,691))

### 4)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

- 국가식품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가칭)국가식품위원회 설치·운영, 농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식량의 안정적 공급, 건강한 식생활 지원, 지속가능한 식품체인 구축 및 유통 효율화 5개 과제를 제시함
- 범부처 차원의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설립하여 정부와 소비자, 기업, 사회단체 등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
- 농어장에서 식탁까지 농축수산물 안전체계를 구축함
  - 생산단계의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GAP), 축산·수산물 위험중점 관리제도(HACCP) 실행율을 대폭 확대시킴
  - 유통·판매 단계의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안전성 검사, 이력관리제를 확대하고, 생산단계와 유기적으로 관리함
  - 안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대응시스템 도상연습을 실시함
  - 수입 농축수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함
- 저탄소형 식품공급 체인 강화와 유통·물류 시스템 개선을 통해 탄소배출 및 유통비용을 절감함
  - 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푸드 마일리지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저탄소형

식품 소비를 활성화시킴

- 유통·물류 시스템을 개편하여 환경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시킴

## 5)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

- 지역역량 및 다원적 기능 극대화를 위해 지역발전 역량 강화, 향토산업 및 웰빙산업 등 경제활동 다각화, 농어촌다움, 생태문화 자원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 기초생활 인프라 및 사회안전망 확충, 도시의 녹색공간 확대 5대 과제를 제시함
-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주도할 지역 리더와 조직을 육성함
  - 농어촌 개발 리더 육성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체계화함
  - 농어촌 개발사업 현장의 학습조직, 포럼 활동 등을 지원하여 주민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참여를 촉진함
- 지역 핵심자원의 산업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에 적합한 새로운 경제활동 모델 개발을 통해 농어촌 활력을 증진시킴
- 도시 따라 잡기형 정책을 지양하고, 농어촌다움의 보전, 농산어촌 자원 발굴 및 가치창출에 역점을 둠
- 농어촌 어디에 거주하든지 기초생활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종합정비 및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함

## 2.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 가. 비전 및 미션

- 수산부문에 특화된 중장기 계획으로는 2010년 발표한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을 들 수 있음
-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은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을 비전으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의 목표를 설정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함

비 전	경쟁력 있는 수산업, 풍요로운 어촌
목 표	수산물 생산 세계 10위, 수출 20위 ('07. 생산 13위 수출 26위)
주 요 지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 산 량 : (08) 336만 톤 → (14) 370만 톤</li> <li>▪ 어가소득 : (08) 3,118만원 → (14) 3,800만원</li> <li>▪ 수 출 액 : (08) 14.5억불 → (14) 25억불</li> </ul>
중 점 추 진 과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li> <li>▪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li> <li>▪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li> <li>▪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li> <li>▪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li> <li>▪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li> </ul>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

[그림 6-2]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비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 나. 중점 추진계획

### 1) 저탄소 녹색 수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 연근해어업 탄소 배출량 감축과 양식산업 에너지 절감을 추진함
  - 수산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감축을 추진함
  -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여 어류 산란서식장, 탄소 흡수, 해조류 바이오매스 등 다용도로 활용함
  - 양식장 배출수 폐열회수장치(히터펌프) 보급, 지하해수 개발 등 에너지 절감방안을 강구하여 가온비를 절감함

### 2) 자원관리 기반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

- 연근해어업의 구조조정과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고도화함
  - “어업구조조정특별법”을 제정하여 유류소비가 많거나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중점 감축하고, 업계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함
  - 5만7천 척의 연근해 어선을 5만 척 수준으로 감축함
  - 2014년 수산자원 900만 톤을 목표로(현 835만 톤) 수산자원조성 전문법인 설립 등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TAC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ITQ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함
  - 오염이 심한 어장은 어장관리특별해역으로 지정하여 어장청소 및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양식어장 휴식년제 도입을 추진함
- 동북아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체계를 구축함
  - 현행 2개 어업지도사무소를 동·서·남해 3개 해역별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맞춤형 어업관리를 지원하고 대어민 서비스를 확대함
  - 한·일, 한·중 어업협정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3국간 어업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수산협력사업도 강화함

### 3)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산업 육성

- 어장오염 및 공급과잉 등을 유발하는 불법양식어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친환경 인증 수산물 품목 확대를 통해 친환경 양식산업을 육성함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율을 상향하고, 배합사료 구매자금 특별융자로 친환경 배합사료 보급을 확대함
- 외해양식,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 등 신성장동력을 발굴함
  - 외해양식 촉진으로 국토의 2.9배인 EEZ를 바다목장으로 개발하고, 내만 가두리의 30%(352ha)를 외해로 이설함
  - 고부가가치 지역특산 품종 개발 및 특화 브랜드화(동해 참가리비, 서해 황복, 남해 고등어 등)를 추진함

### 4) 우리 수산업의 세계 진출 확대

-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
  - 2016년까지 총 38척의 원양어선을 신규 건조하여 어선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방지함(평균 선령 26년 → 20년으로 개선)
  - 국제기구 관할수역에 대한 신규허가와 제3국적선의 국적선 전환으로 원양어업세력을 확장함
  - FTA 등 시장개방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업종은 구조조정을 실시함
- 안정적 해외 수산자원 확보기반 마련 및 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함
  - 태평양 도서국가(PNA 8개국)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참치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어업교류 촉진을 위한 “국제어업 교류센터” 설립 등을 추진함
  -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 확충(2014년까지 수출용 패류(전복) 및 넙치 물류센터 2개소 건립)과 해외시장 수출수요의 지속적 파악 및 해외마케팅을 다변화함

### 5)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수산 가공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함

- 지역별 특성을 살린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조성하여 생산·가공·유통 산업간 시너지를 제고하고 물류비 등 비용을 절감함
- 감천항 국제수산물 도매시장, 국제 수산물거래소, one-stop 수산물 수출단지 등을 연계하여 동북아 수산물 물류가공 허브로 육성함
- 수산물 시장유통 인프라를 강화시킴
  - 노량진, 가락 등 전국 18개 수산물 도매시장을 리모델링, 현대화형, 기능전환형으로 분류하여 시설 개보수를 지원함
  - 씨푸드 타운 및 유통물류센터를 조성하고 저온유통 시스템을 갖춘 위판장을 구축함
  - 문화, 관광 시설과 연계한 Korea Seafood Landmark를 조성함
- 국내외 수산물 생산·유통·가격·수출입 등 수급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수산물 수급정책 총괄시스템”을 구축(2014년)하여 수산물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함
- 어장에서 식탁까지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국산수산물 생산단계 종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

## 6) 어업인·어촌 활력 증진

- 창조적 수산경영주체 육성 및 어가 경영안정망을 구축함
  -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한국 농수산대학을 수산정예인력의 요람으로 육성함
  - 매년 어업인후계자,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400여명을 선발하여 2015년까지 후계 수산업경영인 20,000명을 달성함
  - 2013년까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을 목표로 도입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을 실시함
- 어촌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업활동 관련 “어부증” 범위 구체화 및 의료비 지원방안을 추진함

## 제2절 FTA 관련 수산업 종사자 의견 조사<sup>21)</sup>

### 1. 업종별 의견

- 연근해어업 생산자의 경우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수산부문에 피해가 확실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한·중 FTA 대응 수산분야에 대한 사전적 지원방안 마련을 강조하였음
  - 또한 면세유 지원, TRQ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음
  - 해삼 등의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대중국 수출 전략 마련과 함께, 유통업자의 경우 중소수출업체의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도 하였음
  - 한편 한·중 FTA 협상에 있어 현재 가장 문제되고 있는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 내수면어업 생산자의 경우 내수면 어업 구조조정과 함께, 배합사료직불제, 양식시설 지원, 공동 공판장 설립 등의 의견이 조사되었음
  - 내수면 수산물 생산을 고려한 HSK 정비<sup>22)</sup>와 함께 한·중 FTA에 대비한 내수면 어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제안하였음
- 천해양식어업 생산자의 경우 양식업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정한 보상을 통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또한 현재 중국내 지역 및 담당기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상이한 만큼 중국의 관세제도 일원화와 검역기준 정비 등을 주장함
  - 유통업자의 경우 한자의 해석상 협상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협상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또한 지역 원산지 표시 및 위생검역제도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원양어업 생산자의 경우 한·중 FTA 대응, 참치통조림 등 경쟁력을 보유한

21) FTA 대책 마련과 관련해 어업인 및 관련 종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이하에서는 한국수산회 주최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회의 결과를 종합·정리하였음

22) 주요 내수면 어종의 HSK 코드 신설

가공수산물 수출 확대 및 중국의 관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고 주장함

[표 6-1] 업종별 의견수렴 결과

구분	생산자	유통업자
연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법어업문제 해결 필요</li> <li>▪ 면세유 등 정부지원</li> <li>▪ TRQ로 인한 어업피해 최소화</li> <li>▪ 한중 FTA 대비 정부 수산업 지원방안 사전준비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UU 어업행위 제재 방안 마련 필요</li> <li>▪ 중소수출업체 규제완화</li> <li>▪ 경쟁력 있는 상품개발 필요(해삼 등)</li> <li>▪ 중국 수출 전략 마련 필요</li> </ul>
내수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면 어업 구조조정 필요</li> <li>▪ 배합사료 직불제 실시 필요</li> <li>▪ 양식시설 지원 필요</li> <li>▪ 공동 공판장 설립 필요</li> <li>▪ HSK 정비</li> <li>▪ 내수면 어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li> </ul>	
천해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식업 구조조정</li> <li>▪ 중국 관세제도 일원화</li> <li>▪ 일부 가공품목 경쟁력 확보(굴 가공품 등)</li> <li>▪ 검역기준 정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내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li> <li>▪ 지역 원산지 표시 및 위생검역제도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li> </ul>
원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인 FTA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li> <li>▪ 가공수산물 수출 확대 필요</li> <li>▪ 중국 관세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필요</li> </ul>	

## 2. 품목별 의견

- 꽃게의 경우 중국의 불법어업 문제 해결과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 어선들에 대한 어획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꽃게 자원 관리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금어기에 대해 지역별로 동일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유통업자의 경우 고품질 국내 꽃게의 경우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암계를 포함한 불법 조업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뱀장어 생산 관계자는 폐업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과 함께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만 양식장에 대한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뱀장어 양식 관련, 종묘 수급에 애로가 많은 실정으로 종묘생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하였음
- 새우의 경우 종묘생산 기술과 질병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주꾸미의 경우 생산 성수기(3~4월) 국내단가 인하 방지를 위해 계절적 수입 제한 조치 마련 등의 방안을 촉구하였음
- 한편 주꾸미 유통업자의 경우 종패 수수료 인하 등 주꾸미 유통질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표 6-2] 품목별 의견수렴 결과

구분	생산자	유통업자
꽃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불법어업 해결 필요</li> <li>▪ 외부 어선들의 어획 문제 해결 필요</li> <li>▪ 지역별 금어기 동일 적용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품질 국내 꽃게 중국 역수출 가능</li> <li>▪ 암게(알게)를 포함한 불법 조업활동 제한 필요</li> </ul>
뱀장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업에 따른 보상대책 마련 필요</li> <li>▪ 양만 양식장 시설 현대화</li> <li>▪ 종묘생산 기술 개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묘생산 기술 개발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li> </ul>
새우·주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우 종묘생산 기술 및 질병관련 기술 개발 필요</li> <li>▪ 주꾸미 성수기 수입 제한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꾸미 유통질서 개편</li> </ul>
바지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세유 지원 확대</li> <li>▪ 중국산 종패 수입절차 간소화</li> <li>▪ 종패생산 기술 개발 필요</li> </ul>	
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상대상 제외</li> <li>▪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을 통한 지역 특산품으로서의 가치 제고</li> <li>▪ 낙지 어획 통계 개선</li> </ul>	

- 바지락의 경우 면세유 지원 확대, 종패 수입절차 간소화, 종패생산기술 개발 등을 주장하였음
- 현재 바지락의 경우 어장 황폐화로 인해 경운작업이 필수적으로 현재 경운작업에 이용되는 기름에 대해서는 면세유로 인정을 못받고 있는 실정으로 면세유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음
- 또한 최근 바지락 종묘 수급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중국산 종패 수입절차 간소화와 함께 국내 종패생산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낙지의 경우 한·중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재도 수입이 절대적으로 많은

품목인 만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이력추적제 등을 통해 지역 특산품으로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맨손, 햇불 등으로 낙지를 어획하는 어민의 경우 통계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낙지 어획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3. 기타

- 한편 수협중앙회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일반적 의견과 국내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일반적 의견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제기됨
  - 한중 FTA에 대한 업계와 정부간의 긴밀한 논의함께 한·중 수산협정 등 양국간 공조·협력 가능 분야의 발굴(예 : 수산자원 보호, 불법어업 근절 등)이 필요함
  -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어업인 피해 지원 대책과 같은 선제적 대책이 마련된 이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우려의 의견도 제기됨
  - 이외에도 중국측의 불법조업 방지와 관련해 정부의 역할(예 :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기타 한·중 FTA 협상시 수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의 도입 등에 대한 요구도 조사됨
- 한·중 FTA의 국내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조사됨
  - 한·중 FTA 체결로 유발되는 어업인 피해에 대한 보전이 필요한데, 이때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는 산업(수산업)에 환원하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청됨
  - 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어촌 어메니티의 성장이 필요함
  - FTA 피해와 관련해 수산부문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자원 회복과 수산인재 육성 등 수산업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의

#### 선행 필요함

- 어선감척사업의 확대, 불법어업 단속, 영어자금 확대, 신규어선시설자금 등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
- 수산업을 식량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 수산업의 체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 4. 소결

- 앞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크게 협상대책, FTA 피해 대책, 경쟁력 제고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음
- 협상대책의 경우 한·중 FTA 협상에 있어 민감 품목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최근 이슈화된 중국측 불법어업에 대한 양국간 공조·협력체계 구축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한·중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대책으로 우선 충분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폐업 보상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피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 등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정비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안되었음
- 한·중 FTA 체결 대비,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음
  - 운영자금 등 보조금 및 자금의 지원 확대와 수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시설 현대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수산자원관리, 자원회복계획 등 수산업 생산기반의 지속성 유지가 요구되는 한편, 안전성 강화에 대응한 원산지, 위생검역제도 등의 기반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외에도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대중국 시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검역기준 정비, 수입제도 분석, 관세제도 평가·보완, 수출규제 완화 등 제 방안의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제3절 한·중 FTA 대비 수산분야 정책대응 기본 방향

#### 1. 한·중 FTA와 수산업

-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부문의 영향은 크게 ‘위기’와 ‘기회’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음
  - 위기요인으로는 ①시장 접근성 개선으로 인한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가 ②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업경영체의 수익 감소와 어가 및 어업경영체 안정성 저하로 인한 어촌지역사회 공동화 ③국내 생산기반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수급체계의 안정성 저하 ④연근해 어장에 대한 어획물 선점 경쟁의 심화 등을 들 수 있음
  - 기회요인으로는 중국의 수산물 수요 확대에 대응한 수산물 수출 가능성 확대를 들 수 있음

#### 가. 위기요인

- 기존의 연구 결과에 보았듯이 한·중 FTA 체결될 경우 FTA 본연의 특징대로 한·중 간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산 수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수협 등의 연구에서는 역대 FTA 대상 국가 중 한·중 FTA로 인해 가장 큰 규모로 국내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소비선호가 큰 갈치, 고등어, 조기, 꽃게, 굴 등을 중심으로 생산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품목의 국내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 현재도 한·중 양국간의 교역은 미국, EU 등과는 달리 활어, 신선냉장, 냉동, 건조, 염신 등 원어부터 가공품까지 거의 대부분의 수산물이 거래되고 있으며, 완제품과 원료, 비식용 등 다양한 용도의 품목이 거래되는 상황으로 한·중 FTA 체결 이후 품목에 따라서는 해당품목이나 대체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및 관련 산업이나 지역사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한·중 FTA 체결은 관세 인하·

철폐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국내 공급량 증대로 이어져 국내 가격 하락 및 국내산 생산물의 대체가 이루어져 해당 품목의 경영체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유가, 인건비 등 제비용의 상승 기초 하, 공급량 증대 및 수입산의 국내산 대체 확대는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이는 어가 및 경영체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실제 수협 등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국내 어업경영과 관련된 재무지표의 대부분이 악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이처럼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는 결국 경영체의 안정성 저하 및 어촌지역사회 공동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 지역사회 기반인 어가(경영체)의 위기로 인한 지역사회 이탈과 공동화가 우려됨
- 또 한가지 위기상황으로 평가되는 점은 이미 중국 수산물이 국내 수입수산물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가운데, FTA 체결 이후 중국산의 국내 수산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며, 이는 일부 품목의 국내 생산기반 위축에 따른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까지도 위축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산물 수급 불안정성 역시 확대될 우려가 있음
- 더불어 FTA로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수출 매력도가 커지면서 대한민국시장 수출을 위한 연근해 어장 어획물 선점 경쟁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음
  - 현재도 양국 인접어장에 대한 불법조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이용어장에 대한 수산자원 감소 압박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나. 기회요인

- 반면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중국이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에 더해 고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고급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 확대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국내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확대

시키고 있음

-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도심부 고소득층의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해산어류, 해삼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급 수입수산물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가 더해지면서 향후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2. 한·중 FTA 대비, 수산부문 국내대책 추진방향

- 수산분야에 있어 기존의 FTA 대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수산부문의 FTA 대책이 본격적으로 마련된 것은 한미 FTA로, 이후 EU 대책이 추가되었음
  - 즉, 한·미 FTA 이전,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 FTA의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음
  -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이 낮은 가운데 관련 대책(피해보전, 경쟁력 강화)도 포괄적으로 도입되면서, 대부분 기존 정책사업의 대상이나 예산 등을 기반으로 확대한 형태로 이루어짐
  - 그 결과 FTA와 직접적 관련이 부족한 사업도 포함되면서 FTA에 대한 실효적 대응책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중의 경우 수산분야에 포괄적이면서도 특정 품목/업종에 대해 큰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포괄적이면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따라서 한·중 FTA 수산부문 국내대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 하에 도입·추진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성 유지, 둘째, 어업경영체의 건전성 강화와 어촌사회의 활력 유지, 셋째, 수산물의 수급 안정화, 넷째, 대중국 수산물 수출 증대를 목표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주요 정책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종합해 볼 수 있음

- 즉,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농어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추진과제를 3가지로 종합하였음
- 첫째, 직접적 피해보전제도나 폐업지원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접적 피해보전 체제를 강화’하고
- 둘째, 핵심 인프라 구축을 포함해 수산분야의 금융이나 세제지원 대책을 정비, 어가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대중국 수출 확대 등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개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성장동력을 확충’하며
- 셋째, 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지역사회 기반 안정화와 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 구현’을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해 볼 수 있음
- 이를 위한 주요 추진 전략으로 첫째, 한·중 FTA가 타결된 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이나 어종 혹은 경영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한·중 FTA가 타결된 이후 개별 경영체의 체질 강화 대책을 도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추진함
  - 셋째, 추진 효과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세부사업의 도입·운영으로, 앞서 살핀 지원 대책과 체질 강화 대책은 효과 및 영향과 관련해 상충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상에서 추진이 요구됨
  - 넷째, 주체의 유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의 도입이 필요한데, 일례로 영세, 고령어가에 대해서는 복지대책에 중심을 두는 반면 중대형 경영체의 경우 경쟁력 제고에 중심을 두는 경영체/업종의 성격 구분에 따른 맞춤형 대책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중점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중점추진사업은 제시한 방안 이외에도 수산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다양하게 도입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음
- 표에서는 한·중 FTA의 수산부문 국내대책 중점추진사업을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결과임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책도 한·중 FTA에 대응해 정비·개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6-3] 한중 FTA의 수산부문 국내대책 추진방향

추진 과제	중점 추진 사업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보전직불(기대책)</li> <li>▪ 폐업지원(기대책)</li> </ul>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인프라 구축(기대책)</li> <li>▪ 수산분야 자금·금융·세제지원대책 정비</li> <li>▪ 어가경영체의 위기대응능력 강화</li> <li>▪ 경쟁력 있는 경영체·업종·품목 육성</li> <li>▪ 선진형 위생·관리제도 구축</li> <li>▪ 대중국 수출 진흥</li> </ul>
지속가능한 수산업 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족자원 보호 및 친환경 어업생태계 조성(기대책)</li> <li>▪ 수산분야 인력 육성</li> <li>▪ 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li> <li>▪ 지역사회 기반 안정화와 복지서비스 강화</li> </ul>

[표 6-4] 한중 FTA의 수산부문 국내대책 중점추진사업(신규사업 중심)

중점추진사업	내용
수산분야 자금·금융·세제지원대책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시장 개방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응, 정책자금·금융·세제지원 대책의 실효적 정비</li> <li>▪ 경쟁력 있는 신규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제도 설립</li> </ul>
어가경영체의 위기대응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로 야기되는 위기환경에 대한 자구 대응능력 강화</li> <li>▪ 소득 감소, 비용 증가에 대응한 경영·소득 안정화 제도(정책금융 등) 도입</li> </ul>
경쟁력 있는 경영체·업종·품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경영체 육성 또는 어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 유도</li> <li>▪ 전략 품목업종의 발굴·지원</li> <li>▪ 비즈니스 모델 사업 발굴·지원</li> <li>▪ 국내 수산업 구조조정·개선</li> </ul>
선진형 위생·관리제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글로벌 스탠다드형 위생·안전 제도 구축</li> <li>▪ 수산물 유통·물류 인프라 정비</li> </ul>
대중국 수출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국 비교우위 품목업종의 수출 종합대책 수립</li> </ul>
수산분야 인력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중 FTA 영향 대응, 수산업 인력수급 계획 수립</li> <li>▪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 및 신규인력 유인제도 도입</li> </ul>
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세·고령어가에 대한 안전망 도입</li> </ul>
지역사회 기반 안정화와 복지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기반 유지 사업 강화</li> <li>▪ 어촌 정주환경 정비</li> </ul>



## 제4절 한·중 FTA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

- 중국과의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은 국내 수산업에 있어 기회와 위협의 2가지 측면을 보유하고 있음
  - 앞서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철폐로 인한 수입 증가 및 국내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어업수익 감소, 어촌사회 공동화, 수산물 수급체계의 안정성 저하, 조업경쟁 격화 등의 측면에서 위기로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물론 중국 시장에 대한 국내 수산물 및 산업의 진출 기회 선점이라는 측면에서 기회 요인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긍정적 요인보다는 부정적 요인에 대한 기대가 월등한 한·중 FTA는 협상 시작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한·중 FTA와 관련해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의 계기가 되도록 국내 수산분야의 근본적이고 종합적 대응책 수립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음
  - 즉,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구조개선은 물론 수출 진흥 등 한중 FTA를 통해 국내 수산업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합전략의 모색이 절실함
- 이러한 가운데 이하에서는 한·중 FTA에 대응한 국내 수산분야의 종합 대책 수립과 관련해 요청되는 세부 연구를 도출·제시하였음

### 1. 중국 수산업의 심층 조사분석

- 중국은 광대한 면적과 EEZ를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수산물 생산하고 있으며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참고로 최근 3년(HSK 282개, TSI 지수) 분석 결과, 대중 수출특화 품목은 50개로 그 중 수출우위는 9개인 반면, 수입특화품목은 185개, 수입우위는 21개 품목으로 분석되었음<sup>23)</sup>

23) 2004~2006년 기준 분석결과(수산경제연구원,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2008.5.)

- 중국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와 전망이 이루어져야 향후 한·중 FTA 체결 이후 국내에 미치는 영향 및 대 중국 수출 확대 방안 수립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중국의 수산업은 지리적 조건에 의해 지역별·업종별·품종별로 다양한 구조를 구축하고 있음
  - 또한 앞서 통계자료를 통한 중국 수산업 동향 분석에서도 세계 통계와 중국 통계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통계 등 문헌자료 중심의 검토는 지역별 혹은 성별 특성이나 계획의 실질적 파악에 한계가 있음
  - 특히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사회·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중국 수산업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국 수산업의 효율적 파악을 위해서는 중국 수산현장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중국의 주요 지역·업종·품종에 대한 세부 실태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국 수산업의 생산, 경영실태, 가격구조, 경쟁력 비교 등 심층 분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현실에 기반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수산업을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국내 수산업에 대한 영향 평가는 물론 중국에 대한 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 검토 등 국내 대응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2. 국내 수산부문의 실태 조사 및 사전 영향 평가

- 주요 선행연구 검토 결과 이전의 FTA와는 달리 한·중 FTA 체결은 수산부문에 있어 특정 품목이나 업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수산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었음
  -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해온 국내 수산업의 기반을 유지하고 나아가 수산업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주요 업종별 또는 품목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임
- 그런데 대응 방안 마련과 관련해 국내 수산부문에 있어서도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국내 수산부문에 대한 통계도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세부 정보가 집계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으로, 기존의 통계자료만으로는 일부 업종이나 어종에 대한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음
- 더 나아가 이들 업종이나 어종을 중심으로 중국 및 세계 수산물과의 비교우위 평가, 경쟁력 분석 등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실효성 있는 국내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만큼 국내 수산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중 FTA 대비 경쟁력의 비교우위(또는 열위) 업종·어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내 수산분야 구조조정(개선)의 적정 수준 설정 및 관련 정책의 효과적 수립은 물론, 경쟁력 제고의 방안으로 제안한 전문경영체 도입 등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임

### 3. 한·중 FTA 대응, 주요 업종별/품종별 대책 수립

- 한·중 FTA로 인한 국내 수산부문의 영향이 큰 것은 사실이나 연안어업, 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가공 및 유통 등 각 부분에서 발생할 피해의 정도나 각 부분에서 느끼는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
- 또한 각각의 업종 내에서도 품목이나 경영상태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임
- 따라서 한·중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어업별 품목별 피해 대책을 포함,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원양어업, 내수면어업 등 업종별·품목별로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개선 대책과 비교우위를 고려한 경쟁력 강화 대책의 수립이 요구됨
- 특히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산업을 선도하는 경영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실현 가능한 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중 FTA에 대한 수산부문의 대책이 효과적으로 마련되기 위해서는 한·중 FTA 협상부터 대책 시행에 이르기 까지 수

산분야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실태조사는 물론 대책 마련 과정에 있어 지역별·업종별·품종별 공청회 등을 통해 생산현장의 의견과 수요 파악과 함께 수산분야의 공감대 구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

#### 4. 대중국 수출 확대 전략

-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의 GDP는 2020년에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될 정도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소득 증대가 꾸준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소득 증대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즉,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1990년 이후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급증세를 보여 FAO( Food balance Sheet)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물 공급규모는 1990년 15백만 톤에서 2000년에는 38백만 톤, 2007년에는 45백만 톤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인구 증가세와 소득 증가세를 고려할 때 수산물 거대 소비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의 수산물 소비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고급수산물,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의 규모가 급성장하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
  - 이에 일본, EU 등 주요 수산 선진국들이 중국의 내수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가운데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이익 균형의 실현과 시장 접근성 개선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대중국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 최근 경제 성장에 따른 전반적인 수산물 소비 증가에 더해 고소득 계층의 소비패턴을 고려할 때 고급수산물에 대한 소비 선호 확대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국내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도심부 고소득층의 수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해산어류, 해삼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고급

수입수산물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높은 신뢰도가 더해지면서 향후 국내산 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내륙지역과 연안지역, 대도시와 중소도시, 고소득층과 중간소득층 등 수산물 소비에 대한 다양한 선호조사를 바탕으로 대중국 수출관련 국내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과 비교우위 품목 선정, 구체적인 품목별·지역별 수출 전략 및 현지 소비 확대 전략 등 한·중 FTA를 통한 수출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KIEP, “중-아세안 FTA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KIEP 세계경제 Focus」, 2004.
- LG경제연구원, “중국의 FTA 추진 배경과 전략 해부”, 「LG 주간경제」, 2007.5.16.
- 김현용·송경은, 「한·중 FTA 체결이 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II)」, 수산경제연구원, 2008.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어촌비전 2020」, 2010.
- 농림수산식품부, 「제3차 수산진흥종합대책」, 2010.
- 산업연구원, 「무역조정지원제도 활성화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2010.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18개 경제권(64개국)을 중심으로-」, 2011.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2 수산전망대회 결과보고", 2012.2.

## 〈국외문헌〉

- A report on the impact of the Sugar Industry Reform Program(SIRP) 2004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and Sciences, 2008.
- European Commission, Fisheries, Financial instrument for fisheries guidance, 2003
- NMFS, Fisheries of the United States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rengthen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January, 2008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Strengthening trade adjustment assistance,  
Policy Brief number PB08-2
- US Department of Commerce, Fisheries Economics of the United States 2009, 2011
- USDA,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FY 2012.
- ECFA 협정문 및 부속서
- 미 상무부, Imports and exports of fishery products annual summary, 2010
- 미국 농무성, Budget summary and annual performance plan, 각 년도.

중국농업부, 중국어업통계연감, 각 년도.

중국-페루 FTA 협정문 및 부속서

### 〈홈페이지 등〉

FAO 홈페이지

FAO, Fishstat Plus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support.krei.re.kr](http://support.krei.re.kr))

FTA 종합지원포털([www.ftahub.go.kr](http://www.ftahub.go.kr))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http://www.fips.go.kr))

농어업 무역조정지원제도 홈페이지([www.taaforfarmers.org](http://www.taaforfarmers.org))

뉴질랜드-중국 FTA 홈페이지([www.chinafta.govt.nz](http://www.chinafta.govt.nz))

미국 농무부 해외농업국 홈페이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www.fta.go.kr](http://www.fta.go.kr))